중국 최고인민법원
인공지능 사법지침 해설서

인공지능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의견 24개 조항 전문 해설

저자 : 김경진 변호사

목차

제1부 조문 해설: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1장 **총론: AI 사법 재판의 지도사상과 3대 원칙 [제1조 ~ 제2조]**
지도사상과 이인위본(以人为本), 지지창신발전(支持创新发展), 축뢰안전저선(筑牢安全底线)의 세 원칙

1. 장 개요
2. 제1조 (一) 지도사상: 발전과 안전을 함께 두는 재판
3. 제2조 (二) 기본원칙: 사람이 먼저, 혁신은 지원, 안전은 바닥선
4. 장 정리

2장 **인공지능 민사 침해 책임과 성격별 재판 기준 [제3조 ~ 제11조]**
귀책원칙, AI换脸拟声, 网络开盒, 훈련 데이터, 피풍항(避风港) 규칙, 금지령, 제품책임, 소비자 권익, 자율주행

1. 장 개요
2. 제3조 (三) 인공지능 침해 책임의 귀책원칙
3. 제4조 (四) 「AI换脸拟声」과 「AI复活逝者」의 인격권 침해 규제
4. 제5조 (五) 「网络开盒」과 「人肉搜索」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규제
5. 제6조 (六) 인공지능 훈련 과정의 개인정보 권익
6. 제7조 (七)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의 침해 책임
7. 제8조 (八) 인격권 침해 금지령(人格权侵害禁令)의 적용
8. 제9조 (九) 인공지능 제품책임(产品责任)의 범위
9. 제10조 (十) 소비자 권익 침해의 규제
10. 제11조 (十一) 자율주행(自动驾驶)과 보조주행(辅助驾驶) 사고의 배상책임
11. 장 정리

3장 **인공지능 지식재산권 분쟁과 데이터 자산 규범 [제12조 ~ 제16조]**
인공지능 생성 내용의 저작권 침해, 오픈소스 책임, 특허 발명자, 기술계약, 데이터 사용 규범

1. 장 개요
2. 제12조 (十二)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의 규제
3. 제13조 (十三) 오픈소스(开源) 소프트웨어 관계자의 법적 책임
4. 제14조 (十四) 인공지능 관련 발명창조의 특허 수권(授权)과 확권(确权)
5. 제15조 (十五) 인공지능 기술계약 이행의 위약 책임
6. 제16조 (十六)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사용 행위의 규범
7. 장 정리

4장 **소송 절차 정비와 소송 내 AI 악용 통제 [제17조 ~ 제20조]**
기술 사실 조사, 증거 심사, 허위소송(虚假诉讼)과 AI 환각(AI幻觉) 제재, 형사 처벌

1. 장 개요
2. 제17조 (十七) 기술 사실 조사와 전문 인력의 참여
3. 제18조 (十八) 증거 심사 규칙

4. 제19조 (十九) 허위소송(虚假诉讼), AI 환각(AI幻觉), AI 위조 증거의 제재
5. 제20조 (二十) 인공지능을 이용한 범죄의 처벌
6. 장 정리

5장 **사법 행정 메커니즘과 다자 거버넌스 공조 [제21조 ~ 제24조]**
소원치리(诉源治理), 제급관할(提级管辖)과 안례고(案例库), 사법건의(司法建议), 국제 사법 교류

1. 장 개요
2. 제21조 (二十一) 다원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과 소원치리(诉源治理)
3. 제22조 (二十二) 재판 감독 지도와 제급관할(提级管辖), 인민법원 안례고(人民法院案例库)
4. 제23조 (二十三) 부처 협작과 사법건의(司法建议)
5. 제24조 (二十四) 국제 사법 교류 협력
6. 장 정리

부록 1 **최고인민법원 사법지침의 '여백(留白)' 전략과 규제 입법 전망**
합의가 어려운 쟁점을 비워 둔 여백(留白) 처리의 뜻과 앞으로의 입법 전망

1. 여백(留白)이란 무엇인가
2. 무엇을 비워 두었나
3. 왜 비워 두었나
4. 중국 인공지능 규제 체계에서 이 의견이 놓인 자리
5. 다른 나라와의 구조 비교
6. 입법 전망
7. 한국 실무에 주는 시사점

부록 2 **중·한 인공지능 사법 및 증거 법칙의 입체적 비교**
증거능력, AI 환각 대처, 딥페이크 구제를 중국, 한국, 인도, 영어권과 견주어 본다

1. 비교의 틀: 왜 네 나라를 나란히 놓는가
2. 위법하게 모은 데이터와 AI 채록물의 증거능력
3. 소송 안의 AI 환각(AI幻觉)을 다루는 세 가지 모델
4. 영어권 세 나라의 대응
5. 항목별 비교표
6. 딥페이크와 인격권 구제 비교
7. 시사점

부록 3 **《关于依法审理涉人工智能纠纷案件的意见》 중한 대역 및 최고인민법원 답기자문(答记者问) 완역, 중국어 원문 전문**
24개 조 한국어 완역, 답기자문(答记者问) 완역, 중국어 원문 전문

1. 의견 24개 조 한국어 완역
2. 최고인민법원 관련 부서 책임자 답기자문(答记者问) 한국어 완역
3. 중국어 원문 전문 (最高人民法院关于依法审理涉人工智能纠纷案件的意见, 法发〔2026〕10号)
4. 답기자문 중국어 원문 (最高法相关部门负责人就《关于依法审理涉人工智能纠纷案件的意见》答记者问)

제 1 부

조문 해설: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01 CHAPTER

제1장. 총론: AI 사법 재판의 지도사상과 3대 원칙 [제1조 ~ 제2조]

지도사상과 이인위본(以人为本), 지지창신발전(支持创新发展), 축뢰안전저선(筑牢安全底线)의 세 원칙

1. 장 개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2026년 9월 7일 새 문건을 공개했다. 이름은 《인공지능 관련 분쟁 사건의 법에 따른 심리에 관한 의견(关于依法审理涉人工智能纠纷案件的意见)》이다. 문건 번호는 법발(法发)〔2026〕10호(法发〔2026〕10号)다. 같은 날 최고인민법원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원장 도개원(陶凯元)이 발표를 맡았다. 연구실 주임 주가해(周加海)와 민사 제3재판정 정장 이검(李剑)이 함께 나왔다. 연구실 부주임 사염려(司艳丽)도 자리해 기자 질문에 답했다. 전형사례집(典型案例)은 함께 발표하지 않았다.

이 문건의 이름은 사법해석(司法解释)이 아니라 의견(意见)이다. 두 형식은 문건 번호부터 다르다. 사법해석(司法解释)은 법석(法释) 번호를 받는다. 2021년의 안면인식 사법해석(司法解释)은 법석(法释)〔2021〕15호였다. 이 의견은 법발(法发) 번호를 받았다. 법발(法发) 문건은 최고인민법원이 전국 각급 법원에 내리는 지도성 문건이다. 하급 법원은 이 문건을 재판의 방향으로 삼는다. 그러나 판결 이유에서 법조문처럼 직접 근거로 삼지는 않는다. 근거는 어디까지나 민법전(民法典) 같은 실정법이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갖는 뜻은 분명하다. 중국에는 아직 단일 인공지능법이 없다. 발표문도 「目前我国尚未出台专门的人工智能法」이라고 밝힌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공지능만 다루는 별도 법률을 내놓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 의견은 새 권리나 새 의무를 만들지 않는다. 기존 법률을 인공지능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 정리한다. 발표문의 표현으로는 「用足用好现行法律规定」, 곧 현행 법률 규정을 남김없이 잘 쓰자는 태도다. 법률이 없어서 재판을 미루는 일을 막는 장치다.

최고인민법원이 인공지능을 다룬 문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의 법발(法发)〔2022〕33호는 법원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쓸지 정한 문건이었다. 재판 보조와 스마

트 법원 구축이 대상이었다. 이번 의견은 방향이 반대다. 사회에서 생긴 인공지능 분쟁을 법원이 어떻게 재판할지 정한다. 발표문은 이 문건을 「首部由国家最高审判机构发布的涉人工智能司法裁判规则文件」이라고 부른다. 국가 최고 재판기관이 낸 첫 인공지능 사법 재판규칙 문건이라는 뜻이다.

문건은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발표문은 제정 과정을 「经广泛征求意见、深入调研论证」이라고 적는다. 널리 의견을 구하고 깊이 조사해 논증했다는 말이다. 중앙 관련 기관과 인공지능 산업 대표, 전문가와 학자가 참여했다고 밝힌다.

합의가 안 된 문제는 비워 두었다. 발표문은 이를 「留白处理」라고 부른다. 여백(留白)으로 남기는 처리다. 경험이 쌓이고 조건이 무르익으면 적절한 방식으로 정하겠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이 여백(留白)은 실무의 빈틈이자 판사의 재량이다. 해설서를 읽을 때는 무엇이 규정되었는지와 함께 무엇이 비었는지를 같이 보아야 한다.

의견은 5개 부분 24개 조로 짜였다. 제1부분은 총체적 요건(总体要求)으로 제1조와 제2조를 담는다. 제2부분은 침해 책임으로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다. 제3부분은 지식재산권으로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다. 제4부분은 소송 절차와 형사 처벌로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다. 제5부분은 재판 지도와 협력 기제로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다. 이 장은 그 첫 두 조를 다룬다.

2. 제1조 (一) 지도사상: 발전과 안전을 함께 두는 재판

조문 요지

제1조는 인공지능 사건 재판이 따라야 할 방향을 한 문단으로 적는다. 앞부분은 정치 지도이념을 열거한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시진핑 법치사상, 네트워크 강국(网络强国)에 관한 사상이 그것이다. 뒷부분에 재판 실무의 기준이 나온다. 핵심 구절은 「坚持发展和安全并重、促进创新和依法治理相结合」이다. 발전과 안전을 함께 무겁게 두고, 혁신 촉진과 법에 따른 거버넌스를 결합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재판이 이루어야 할 목표를 네 낱말로 못박는다. 「安全性、可靠性、可控性、公平性」, 곧 안전성과 신뢰성과 통제가능성과 공평성이다.

조문은 인공지능을 「新一轮科技革命和产业变革的重要驱动力量」으로 규정한다.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힘이라는 규정이다. 그리고 서두

에서 재판의 목적을 「服务保障新质生产力加快发展」이라고 적는다. 신질생산력(新质生产力)의 빠른 발전을 재판이 뒷받침한다는 말이다. 신질생산력(新质生产力)은 중국이 인공지능과 첨단 제조를 묶어 부르는 정책 용어다.

배경과 문제 상황

기술은 빠르고 법률은 느리다. 이 격차가 재판정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얼굴을 바꿔 넣은 영상이 하루 만에 수백만 번 퍼진다. 목소리를 흉내 낸 음성이 몇 초 만에 만들어진다. 판사는 어느 법조문을 들어야 할지 먼저 정해야 한다. 조문이 없다고 판단을 미루면 피해자는 구제를 받지 못한다. 반대로 새 기술을 무조건 위험으로 보면 개발은 멈춘다.

발표문은 제정 배경으로 최고 지도부의 요구를 든다. 2025년 4월 중앙정치국 집단학습에서 나온 발언이 근거다. 인공지능의 발전 추세와 규율을 잡으라는 요구다. 법률법규와 정책제도와 응용규범과 윤리준칙을 서둘러 완비하라는 요구가 뒤따른다. 기술 감시와 위험 경보와 긴급 대응 체계도 세우라고 한다. 목표는 인공지능의 안전과 신뢰와 통제 확보다. 제1조의 네 목표 가운데 셋이 여기서 왔다.

정책 문건도 근거로 붙는다. 발표문은 십오오 규획(十五五规划) 강요(十五五规划纲要)를 든다. 그 문건은 인공지능 생성물의 권리 귀속 규칙을 세우자고 정한다. 개발자와 경영자와 사용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르는 규칙도 함께 든다. 국무원이 낸 《지식재산권 보호와 운용 십오오 규획(十五五规划)》도 같은 방향이다.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생성물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을 완비하자고 적는다. 제1조는 이 정책 흐름을 재판의 언어로 옮긴 조문이다.

발표문은 이 딜레마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인공지능이라는 천리마가 빨리 달리면서도 안정되게 달리도록 한다는 표현이다. 제1조는 그 두 요구를 판사 한 사람의 머릿속에 함께 놓으라고 지시한다. 어느 한쪽만 든 판결은 이 문건의 기준으로는 완성되지 않은 판결이다.

요건과 효과

제1조는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 조문이 아니다. 재판 기관을 향한 방향 지시다. 그래서 요건과 효과는 재판 활동을 기준으로 읽는다.

첫째, 수범자는 각급 인민법원이다. 조문은 「指导各级人民法院依法审理」라고 적는다. 최고인민법원부터 기층 법원까지 모두 대상이다.

둘째, 근거 법률은 문건 첫머리에 열거된다. 민법전, 네트워크안전법(网络安全法), 데이터안전법(数据安全法), 저작권법(著作权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소비자권익보호법(消费者权益保护法),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 민사소송법(民事诉讼法)이다. 인공지능 사건이라도 판단의 뿌리는 이 법률들에 있다.

셋째, 재판이 지향할 상태는 네 가지 목표다. 안전성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이 다치지 않는 상태다. 신뢰성은 시스템이 예상대로 움직이는 상태다. 통제가능성은 사람이 언제든 멈추고 되돌릴 수 있는 상태다. 공평성은 같은 조건의 사람을 알고리즘이 다르게 대하지 않는 상태다. 이 네 목표는 뒤에 오는 조문의 판단 기준으로 되돌아온다. 통제가능성은 제3조의 과실 판단 요소로, 공평성은 제10조의 빅데이터 바가지(大数据杀熟) 심사로 이어진다.

넷째, 효과는 재판 규범의 통일이다. 조문 자체가 당사자에게 권리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각급 법원이 같은 잣대를 쓰면 결과의 예측 가능성이 올라간다. 기업은 어느 선을 넘으면 책임을 지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다.

실무 포인트

기업은 이 조문을 선언문으로 넘기지 말아야 한다. 소송에서 방어 논리를 세울 때 네 낱말이 뼈대가 된다. 네 가지를 문서로 남긴다. 어떤 안전 조치를 두었는지, 시스템이 설계대로 작동했는지가 앞의 둘이다. 사람이 개입해 멈출 수 있었는지,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았는지가 뒤의 둘이다. 이 네 축의 기록이 곧 무과실 주장의 재료다.

개인은 피해를 주장할 때 같은 축을 뒤집어 쓴다. 어느 지점에서 통제가 끊겼는지, 어느 지점에서 다르게 대우받았는지를 짚으면 주장이 선명해진다.

법원은 판결문 구조에서 이 조문을 쓴다. 권익 보호만 적은 판결도, 산업 보호만 적은 판결도 이 문건의 기준에는 절반이다. 두 이익을 어떻게 저울에 올렸는지 이유에 적어야 한다.

법원은 사실 조사의 폭도 넓게 잡는다. 인공지능 사건은 기술 자료 없이 판단하기 어렵다. 제1조가 든 통제가능성은 자료를 보아야 확인된다. 이 요구는 제17조의 기술조사

관(技术调查官)과 전문가 보조인(专家辅助人) 활용으로 이어진다.

한국과의 비교

한국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다. 두 나라의 출발점이 다르다. 한국은 법률을 먼저 만들고 행정기관이 집행한다. 중국은 단일 법률 없이 법원이 기존 법률의 해석으로 먼저 나섰다. 한국의 기본법도 발전과 신뢰를 함께 놓는다는 점에서 방향은 비슷하다. 그러나 한국의 기본법은 국가 계획과 사업자 의무를 정하는 행정 규범이다. 중국의 이 의견은 재판 규범이다. 수범자가 행정기관인지 법원인지가 갈린다.

남은 쟁점

제1조는 네 목표를 열거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다. 안전성과 발전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을 먼저 볼지는 조문에 없다. 그 판단은 개별 사건의 재판부에 남는다.

네 목표를 재판에서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도 조문에 없다. 통제가능성을 회사의 설계 문서로 볼지, 실제 정지 시험으로 볼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증거의 종류와 수준은 제17조와 제18조의 규정을 함께 읽어야 한다.

지도이념을 어느 정도까지 판결 이유에 쓰는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조문은 이념을 따르라고만 적는다. 판결문에서 이를 인용할 것인지, 법률 해석의 배경으로만 둘 것인지는 실무의 축적을 기다려야 한다.

3. 제2조 (二) 기본원칙: 사람이 먼저, 혁신은 지원, 안전은 바닥선

조문 요지

제2조는 세 원칙을 각각 한 문단씩 적는다. 이인위본(以人为本), 지지창신발전(支持创新发展), 축뢰안전저선(筑牢安全底线)이다. 우리말로는 사람을 근본으로 삼기, 혁신 발전을 지원하기, 안전의 바닥선을 튼튼히 쌓기다. 발표문은 이를 「三个基本原则」이라고 부른다. 세 원칙은 나란한 관계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누르지 않는다.

배경과 문제 상황

원칙 조문은 뒤 조문이 답하지 못하는 사건을 만났을 때 쓰인다. 의견은 24개 조로 모든 사건을 담지 못한다. 발표문도 「《意见》不可能涵盖所有人工智能案件类型」이라고 적는다. 이 의견이 모든 인공지능 사건 유형을 담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 오면 판사는 제2조로 돌아온다.

이인위본(以人为本)

첫 원칙은 사람의 이익을 재판의 중심에 놓는다. 조문은 「注重防范和消除算法歧视」라고 적는다. 알고리즘 차별을 막고 없애는 데 힘쓴다는 말이다. 알고리즘 차별은 같은 조건의 사람을 시스템이 다르게 대하는 현상이다. 채용 심사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자동으로 낮게 매기는 경우가 여기에 든다.

이어서 조문은 「依法保障个人在自动化决策中的知情权和选择权」이라고 정한다. 자동화 결정에서 개인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법에 따라 보장한다는 뜻이다. 자동화 결정은 사람의 판단 없이 시스템이 곧바로 결론을 내리는 처리 방식이다. 이 문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와 이어진다. 그 조문은 자동화 결정의 투명성과 결과의 공정성을 요구한다. 개인에게는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준다. 개인 특성만을 겨냥한 방식을 거부할 권리도 준다. 제2조는 그 권리를 민사 재판에서 실제로 살리라고 지시한다.

이 원칙은 법원의 자리도 정한다. 조문은 「发挥司法裁判引领作用」이라고 적는다. 사법 재판이 앞에서 이끄는 구실을 하라는 뜻이다. 이어서 알고리즘 윤리와 알고리즘 규칙에 관한 재판 규칙과 기제를 「积极稳妥探索」하라고 정한다. 적극적이면서도 안정되게 탐색하라는 말이다. 규칙이 없는 자리에서 법원이 먼저 선을 그으라는 요구다.

기업 쪽으로도 요구가 간다. 조문은 「促进完善人工智能企业社会责任体系」라고 적는다. 인공지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체계를 완비하도록 밀어준다는 뜻이다. 판결이 개별 분쟁의 해결에서 끝나지 않고 업계의 내부 규범을 바꾸도록 하라는 주문이다.

원칙의 끝은 「促推人工智能为民、向善」이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위하고 선한 쪽으로 가도록 밀어준다는 뜻이다.

지지창신발전(支持创新发展)

둘째 원칙은 기술과 산업의 편에 선다. 열쇠말은 포용심신(包容审慎)이다. 조문은 「以包容审慎的态度平衡权益保护与技术产业发展」이라고 적는다. 포용하고 신중

한 태도로 권익 보호와 기술 산업 발전의 균형을 잡는다는 말이다. 이어 「营造鼓励探索、宽容失败的良好环境」을 든다. 시도를 북돋우고 실패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환경을 만든다는 뜻이다.

보호의 대상도 넓게 잡는다. 조문은 「加大对人工智能创新成果、创新主体、创新行为、创新环境的保护力度」라고 적는다. 혁신의 성과와 주체와 행위와 환경을 모두 보호 대상으로 든다. 결과물만이 아니라 시도하는 사람과 시도 자체를 지킨다는 뜻이다. 이어 「探索新型权益司法保护路径」을 든다. 기존 권리 목록에 없는 새 이익도 보호할 길을 찾으라는 지시다. 데이터 권익을 다루는 제16조가 그 예다.

원칙은 경제 정책과도 이어진다. 조문은 인터넷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실물 경제와 깊이 결합하도록 이끈다고 적는다. 재판이 산업 육성의 한 축이라는 인식이다.

답기자문(答记者问)은 이 태도의 한계도 밝힌다. 포용이 방임과 같지 않고 신중이 내버려 둠과 같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패를 용인한다는 말은 위법을 눈감는다는 말이 아니다.

원칙은 경쟁 질서도 함께 든다. 조문은 인공지능을 쓴 독점과 부정경쟁을 법에 따라 규제한다고 적는다. 그리고 「权利平等、机会平等、规则平等」을 보장하고 「加强对中小企业等经营主体权益的平等保护」라고 정한다. 권리와 기회와 규칙에서 평등을 보장하고, 중소기업 같은 경영 주체의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한다는 뜻이다. 큰 플랫폼이 데이터와 연산 자원을 쥔 상황에서 작은 기업의 자리를 지키려는 조항이다.

축뢰안전저선(筑牢安全底线)

셋째 원칙은 책임의 배분 방법을 정한다. 조문은 먼저 위험의 크기에 따라 책임을 정하라고 적는다. 응용 상황마다 생길 수 있는 손해와 위험의 성질과 크기를 보고 법적 책임을 판단하라는 지시다.

핵심은 다음 구절이다. 「区分通用与专用、开源与闭源等不同类型大模型在技术原理、风险外溢与控制能力上的差异」다. 범용 모델과 전용 모델, 오픈소스 모델과 폐쇄형 모델을 나누라는 말이다. 나누는 잣대는 세 가지다. 기술 원리, 위험이 밖으로 새어 나가는 정도, 통제 능력이다. 이 세 잣대에서 차이가 있으면 책임도 달라진다. 조문은 이 구분에 따라 개발자와 제공자와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나누라고 정

한다.

구분의 실익은 분명하다. 범용 모델은 쓰임새를 미리 좁히지 못한다. 개발자는 이용자가 무엇을 입력할지 알기 어렵다. 전용 모델은 반대다. 의료 판독용 모델처럼 목적이 정해진 모델은 예견 범위가 좁고 뚜렷하다. 오픈소스 모델은 코드를 공개하는 대신 뒤에 이어지는 사용을 통제하지 못한다. 폐쇄형 모델은 제공자가 접근과 출력을 직접 관리한다. 통제가 가능한 쪽이 더 무거운 주의 의무를 지는 구조다.

이 원칙은 형사 정책으로 이어진다. 조문은 관엄상제(宽严相济) 형사정책을 온전히 관철하라고 적는다. 너그러움과 엄격함을 사건에 맞게 나누어 쓰는 정책이다. 국가안전을 해치고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고의 범죄는 엄히 벌한다. 반대로 연구개발과 응용 과정의 창신적 행위는 신중하게 다룬다. 그 신중함의 기준으로 조문은 죄형법정과 죄책형 상응 원칙을 든다. 법에 없으면 벌하지 않고, 형벌은 죄와 책임의 무게에 맞춘다는 원칙이다.

요건과 효과

세 원칙은 다음처럼 나뉜다.

첫째, 이인위본(以人为本)은 개인의 권익이 걸린 사건에서 해석의 방향을 정한다. 근거 규범은 민법전의 인격권 편과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자동화 결정 사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가 축이다.

둘째, 지지창신발전(支持创新发展)은 기술 개발자와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좁히는 쪽으로 작동한다. 근거 규범은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과 반독점 관련 규정이다. 중소기업 보호는 시장 진입 단계의 평등으로 나타난다.

셋째, 축뢰안전저선(筑牢安全底线)은 책임 주체를 가르는 기준을 준다. 모델의 유형과 통제 능력이 갈림길이다. 통제 능력이 큰 쪽이 더 무거운 주의 의무를 진다. 형사 영역에서는 고의 악용과 연구개발 과정의 시행착오를 갈라 다룬다.

실무 포인트

기업은 자기 모델이 어느 칸에 놓이는지 먼저 정리한다. 범용인지 전용인지, 오픈소스인지 폐쇄형인지, 출력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지를 문서로 남긴다. 이 문서가 뒷날 책임 범위를 다투는 자료가 된다. 자동화 결정을 쓰는 서비스라면 이용자에게 무엇을

알렸는지, 거부할 길을 두었는지 기록한다.

개인은 자동화 결정의 결과를 받았을 때 설명을 요구한 기록을 남긴다. 설명 요구와 거부 의사가 뒤에 알권리 침해 주장의 근거가 된다.

법원은 원칙 사이의 저울질을 이유에 적는다. 세 원칙 가운데 어느 것을 왜 앞세웠는지 밝히면 상급심의 판단도 쉬워진다.

한국과의 비교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도 사람 중심의 발전과 신뢰 확보를 기본 이념으로 든다. 두 규범이 겹치는 자리다. 차이는 실행 방식에 있다. 한국은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범주를 두고 사업자에게 사전 의무를 지운다. 2026년 7월 국무회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제도와 안전성 사전 검증 제도를 담았다. 중국의 이 의견은 사전 의무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사후 재판에서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에 집중한다.

모델 유형에 따라 책임을 나누는 방식도 다르다. 중국은 범용과 전용, 오픈소스와 폐쇄형을 갈라 통제 능력을 본다. 한국은 영향의 크기를 기준으로 고영향 여부를 가른다. 한쪽은 기술 구조에서, 다른 쪽은 쓰이는 분야에서 출발한다.

남은 쟁점

원칙끼리 부딪칠 때의 순서가 조문에 없다. 개인의 권익과 산업의 발전이 정면으로 맞설 때 어느 쪽이 앞서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진다.

모델 유형의 경계도 조문이 그려 주지 않는다. 범용과 전용을 나누는 선이 어디인지, 부분 공개 모델을 오픈소스로 볼지 여부가 남는다. 제13조가 오픈소스 개발자의 면책을 다루지만, 유형 구분의 기준 자체는 판례를 기다려야 한다.

의견이 정하지 않고 비워 둔 문제도 있다. 답기자문(答记者问)은 두 문제를 들었다.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물성과 허락 없는 학습의 성격이다. 의견 차이가 커서 이번에는 규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2조의 세 원칙은 그 빈자리를 메울 때 판사가 쥐는 유일한 잣대가 된다.

4. 장 정리

제1조와 제2조는 나머지 22개 조를 읽는 문법이다. 제1조는 재판이 향할 곳을 정한다. 발전과 안전을 함께 두고, 안전성과 신뢰성과 통제가능성과 공평성을 목표로 삼는다. 제2조는 그 방향을 세 유형로 풀어 쓴다. 이인위본(以人为本)은 사람의 권익을, 지지창신발전(支持创新发展)은 기술과 산업을, 축뢰안전저선(筑牢安全底线)은 책임의 경계를 맡는다.

세 원칙은 뒤 조문에서 구체적 규칙으로 나타난다. 이인위본(以人为本)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규정으로 이어진다. 지지창신발전(支持创新发展)은 제13조의 오픈소스 면책과 제15조의 기술계약 규정으로 간다. 축뢰안전저선(筑牢安全底线)은 제3조의 과실 판단과 제20조의 형사 처벌 규정으로 이어진다.

이 문건은 새 법률이 아니다. 기존 법률을 인공지능 사건에 대는 방법을 정리한 지도 문건이다. 그래서 조문마다 근거 법률이 따라붙는다. 다음 장부터는 그 근거 법률을 하나씩 따라가며 사건 유형별 판단 기준을 살핀다.

02 CHAPTER

제2장. 인공지능 민사 침해 책임과 성격별 재판 기준 [제3조 ~ 제11조]

귀책원칙, AI换脸拟声, 网络开盒, 훈련 데이터, 피풍항(避风港) 규칙, 금지령, 제품책임, 소비자 권익, 자율주행

1. 장 개요

의견(意见)의 두 번째 부분은 제목을 「依法妥善审理涉人工智能侵权案件，切实维护民事主体合法权益」라고 달았다. 우리말로 옮기면 법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침해 사건을 온당하게 재판하고,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실제로 지킨다는 뜻이다. 妥善은 일을 알맞게 처리한다는 말이다. 切实은 말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룬다는 말이다. 제목 한 줄에 이 부분의 목표가 담겨 있다. 기술을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기술이 사람의 권리를 해칠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부분은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아홉 개 조로 이루어진다. 배열에 규칙이 있다. 제3조는 책임의 출발점인 귀책원칙(归责原则)을 정한다. 어떤 원칙으로 책임을 물을지부터 못 박는 방식이다. 그다음은 침해되는 권리의 종류를 따라 내려간다. 제4조는 성명권과 초상권, 목소리 권익, 명예권을 다룬다. 제5조는 프라이버시권을 다룬다. 제6조는 모델 학습 과정의 개인정보 권익을 다룬다. 제7조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의 침해 책임을 다룬다. 제8조는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침해를 멈추게 하는 인격권 침해 금지령(人格权侵害禁令)을 다룬다.

제9조부터는 무대가 바뀐다. 제9조는 실물을 매개로 하는 인공지능 제품의 제품책임(产品责任)을 정한다. 제10조는 빅데이터 바가지(大数据杀熟)와 유명인 사칭 판매를 소비자 보호의 문제로 다룬다. 제11조는 자율주행(自动驾驶)차와 보조주행(辅助驾驶) 기능 차량의 교통사고 배상 책임을 정한다.

아홉 개 조를 관통하는 생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장면을 나누어 보는 태도다. 제2조의 기본 원칙은 「根据人工智能在不同应用场景下对民事主体合法权益可能造成的具体损害以及风险的性质和大小，依法准确认定法律责任」라고 적었다. 인공지

능이 서로 다른 장면에서 만들 수 있는 구체적 손해와 위험의 성질, 크기에 따라 책임을 정확히 정하라는 뜻이다. 얼굴 합성과 자율주행(自动驾驶) 사고를 같은 잣대로 재지 않겠다는 말이다. 다른 하나는 주체를 나누어 보는 태도다. 개발자, 제공자, 사용자가 각자 무엇을 통제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의 몫이 달라진다.

권리에서 시작해 구제 수단으로 가고, 다시 제품과 거래로 옮겨 가는 구성이다. 발표문은 이 부분을 두고 「首先明确了涉人工智能侵权责任的归责原则」라고 설명한다. 먼저 귀책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뜻이다. 원칙을 하나 세우고 장면별로 적용 기준을 붙이는 방식이다. 중국에는 아직 단일한 인공지능법이 없다. 그래서 의견은 새 권리를 만들지 않는다. 민법전(民法典),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 제품품질법(产品质量法), 도로교통안전법(道路交通安全法) 같은 현행 법률을 인공지능 사건에 어떻게 대입할지를 알려 준다. 답기자문(答记者问)이 말한 用足用好现有法律规定, 곧 현행 법률 규정을 남김없이 잘 쓰자는 태도가 이 부분 전체를 지배한다.

2. 제3조 (三) 인공지능 침해 책임의 귀책원칙

조문 요지

제3조는 인공지능으로 남의 권익을 해쳤을 때 어떤 원칙으로 책임을 묻는지 정한다. 조문은 「法律没有明确规定适用无过错责任或者过错推定责任的，应当依照民法典第一千一百六十五条第一款规定的过错责任原则认定行为人是否承担侵权责任」라고 쓴다. 법률이 무과실책임이나 과실추정책임을 명문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전 제1165조 제1관의 과실책임 원칙으로 판단하라는 뜻이다. 무과실책임(无过错责任)은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과실추정책임(过错推定责任)은 잘못이 있었다고 일단 보고 가해자가 스스로 잘못 없음을 증명하게 하는 제도다. 두 제도는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쓴다.

민법전 제1165조 제1관은 과실로 남의 민사 권익을 해친 사람이 침해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중국 불법행위법의 출발점이 되는 조문이다. 제3조는 인공지능 사건에도 이 출발점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선언한다. 인공지능이라는 이유로 다른 원칙을 세우지 않는다.

조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법관이 과실(过错)이 있는지, 얼마나 무거운지 볼 때 함께 살필 요소를 여섯 유형로 든다. 인공지능이 쓰인 구체적 장면, 자주화 정도(自主化程度), 기술과 정보의 투명도, 잠재된 위험과 영향 범위가 앞의 네 유형다. 여기에 개발자와 제공자가 침해를 막으려고 취한 조치와 기술상의 가능성이 더해진다. 마지막은 사용자가 손해를 미리 내다보고 막을 수 있었는지를 보는 예견 능력과 통제 능력이다.

배경과 문제 상황

인공지능 사건에서 맨 먼저 부딪히는 물음은 알고리즘이 스스로 낸 결과에도 사람의 잘못을 물을 수 있느냐다. 모델이 왜 그 답을 냈는지는 만든 사람도 다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위험한 기술이니 무과실책임을 지우자고 말한다. 다른 쪽에서는 산업이 자라기도 전에 책임이 무거워지면 아무도 만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답기자문(答记者问)은 이 대목을 직접 다룬다. 「避免在人工智能技术与产业尚处发展初期就承担过重责任而影响创新的积极性」라고 적었다. 기술과 산업이 아직 발전 초기인데 무거운 책임을 지워 창의를 꺾는 일을 피한다는 뜻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이 물음에 과실책임으로 답했다.

생활 속 장면을 하나 든다. 작은 회사가 무료로 공개된 모델을 가져다 상담 챗봇을 만들었다. 그 챗봇이 어느 이용자에게 잘못된 답을 주어 손해가 생겼다. 이때 회사가 곧바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회사가 어떤 안전장치를 두었는지, 위험을 미리 알렸는지, 기술로 막을 수 있었는지를 따진다. 여섯 유형 요소가 이 판단의 눈금이 된다.

요건과 효과

책임을 지는 사람은 개발자(开发者), 제공자(提供者), 사용자(使用者)로 나뉜다. 제2조의 기본 원칙 부분은 통용 모델과 전용 모델, 오픈소스와 클로즈드소스를 구분해 책임을 나누라고 미리 말해 두었다. 제3조는 그 구분을 과실 판단의 잣대로 옮긴다.

원칙은 과실책임이다. 피해자가 가해 행위, 손해, 인과관계,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하고 증명한다. 무과실책임이나 과실추정책임은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쓴다. 제9조의 제품책임(产品责任)과 제11조의 자율주행(自动驾驶) 사고가 그 예다. 이때는 제품품질법(产品质量法)과 도로교통안전법(道路交通安全法), 민법전 제7편 제4장이 근거가 된다.

여섯 요소를 하나씩 풀면 이렇다. 첫째, 응용 장면이다. 같은 모델이라도 놀이용 대화 서비스와 진료 보조 서비스는 요구되는 주의의 수준이 다르다. 둘째, 자주화 정도다. 사람이 결과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구조인지, 기계가 곧바로 실행하는 구조인지를 본다. 셋째, 기술과 정보의 투명도다.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얼마나 밝혔는지를 본다. 넷째, 잠재된 위험과 영향 범위다.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오류와 수만 명에게 한꺼번에 퍼지는 오류는 무게가 다르다. 다섯째, 개발자와 제공자가 취한 예방 조치와 기술상의 가능성이다. 여섯째, 사용자의 예견 능력과 통제 능력이다. 앞의 다섯이 만든 쪽을 보는 눈금이라면 마지막 하나는 쓰는 쪽을 보는 눈금이다.

과실의 무게는 여섯 요소를 함께 저울에 올려 정한다. 의료나 금융처럼 위험이 큰 장면에서는 요구되는 주의 수준이 올라간다.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결정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개발자와 제공자가 미리 할 일이 늘어난다. 기술 문서와 위험 고지를 얼마나 공개했는지도 저울에 오른다. 기술로 막을 수 있었는데 두지 않은 조치는 과실 쪽으로 기운다. 반대로 당시 기술로는 막을 수 없었다면 그 사정이 참작된다.

실무 포인트

기업은 여섯 요소를 그대로 내부 점검표로 옮겨 두는 편이 좋다. 모델을 어디에 쓰는지, 사람이 어디까지 개입하는지, 어떤 위험을 어떻게 알렸는지를 문서로 남긴다. 안전 조치를 넣은 날짜와 이유를 기록으로 남기면 뒤에 과실 다툼에서 근거가 된다. 기술상 불가능했다는 주장은 말로 하면 통하지 않는다. 당시의 기술 수준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한다.

제공자는 이용약관에 위험 고지를 넣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 조문이 보는 것은 실제로 취한 조치와 기술상의 가능성이다. 문구 한 줄보다 걸러 내기 장치와 사람의 검토 절차가 판단에 더 무겁게 놓인다. 사용자 쪽 기업은 반대로 자기가 어디까지 통제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결과를 그대로 내보냈는지, 사람이 확인했는지가 갈림길이 된다.

개인은 손해를 입으면 화면과 시각, 접속 기록을 먼저 확보한다. 과실책임 아래서는 증명 부담이 피해자 쪽에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여섯 요소를 판결문에서 항목별로 짚어 이유를 밝히도록 요구받는다. 제17조가 정한 기술조사관(技术调查官)과 전문가 보조인(专家辅助人)이 이 판단을 돕는다.

한국과의 비교

증명의 부담도 다르지 않다. 한국에서도 피해자가 가해 행위와 과실, 손해, 인과관계를 주장하고 증명한다. 알고리즘의 내부를 볼 수 없는 피해자에게 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은 두 나라에 함께 있다.

한국도 민법 제750조가 일반 불법행위를 과실책임으로 정한다. 출발점은 같다. 무과실책임을 제조물 책임 같은 개별 법률에 맡기는 구조도 비슷하다. 다른 점은 판단 기준의 형식이다. 한국에는 인공지능 사건에서 법관이 볼 요소를 열거한 최고법원 문건이 아직 없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과 표시 의무를 다룬다. 민사 침해의 귀책원칙을 따로 정하지는 않는다. 한국 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주의의무의 내용을 그때그때 세운다.

남은 쟁점

오픈소스 모델을 가져다 쓴 경우의 책임 배분도 제3조만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제13조가 오픈소스 개발자의 책임 면제를 따로 정하지만, 그 조는 지식재산권 부분에 놓여 있다. 인격권 침해 사건에서 오픈소스 개발자를 어떻게 볼지는 제3조의 여섯 요소로 돌아가 판단하게 된다.

제3조는 과실 판단의 요소를 들었을 뿐, 요소들 사이의 우열은 정하지 않았다. 자주화 정도가 높으면 개발자의 책임이 늘어나는지, 반대로 사람의 통제에서 멀어져 책임이 줄어드는지는 열려 있다. 증명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도 이 조에서는 말하지 않는다. 지식재산권 부분인 제12조가 개발자에게 훈련 데이터 출처를 대라고 하는 것과 달리, 제3조에는 그런 문구가 없다. 원문은 과실책임 원칙과 고려 요소를 정할 뿐이다.

3. 제4조 (四) 「AI换脸拟声」과 「AI复活逝者」의 인격권 침해 규제

조문 요지

제4조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만들어 쓰는 행위를 다룬다. AI 환검의성(AI换脸拟声)은 얼굴을 바꾸고 목소리를 흉내 내는 기술을 함께 부르는 말이다. AI 복활서자(AI复活逝者)는 세상을 떠난 사람을 인공지능으로 되살려 내는 일을 가리킨다. 조문은 먼저 큰 울타리를 친다. 「不得违反法律、法规，不得违背公序良俗」라고 하여 법령과 공서양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그다음 네 가지 경우를 나누어 정한다. 첫째, 동의 없이 사람의 성명과 초상 등을 처리해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가상 디지털 형상(虚拟数字形象)을 만들어 쓰거나 공개하면 성명권과 초상권 침해가 된다. 둘째, 동의 없이 사람의 목소리를 훈련어료(训练语料)로 써서 음색과 어조, 발음 습관을 흉내 낸 합성 음성을 만들면 목소리 권익(声音权益) 침해가 된다. 셋째, 만들어진 형상이나 목소리를 조작해 부당한 행동을 시키거나 거짓말을 하게 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권 침해가 된다. 넷째, 사망자의 가상 디지털 형상을 함부로 만들어 성명과 초상, 명예를 해치면 근친속(近亲属)이 민법전 제994조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배경과 문제 상황

답기자문(答记者问)은 이 조를 설명하며 실무에서 반응이 제일 큰 문제가 딥페이크라고 밝혔다. 「AI换脸技术可以无差别地"收割"所有人的肖像」라는 표현을 썼다. 얼굴 바꾸기 기술이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의 초상을 거둬 간다는 뜻이다. 이어서 몇 위안이면 목소리를 훔칠 수 있고 진짜와 구별이 어렵다고 적었다. 옷을 벗기는 소프트웨어와 사용법을 파는 지하 산업이 언론에 드러났다는 사실도 함께 밝혔다.

예를 들어 어느 성우가 온라인 강의에 자기 목소리를 올렸다고 하자. 다른 회사가 그 음성을 모아 학습 자료로 쓰고 광고용 합성 음성을 만들어 판다. 듣는 사람은 그 성우가 광고를 읽은 줄 안다. 성우는 동의한 적이 없다. 제4조는 이런 경우 목소리 권익 침해를 인정한다.

요건과 효과

성명권과 초상권 침해는 세 요건으로 정리된다. 동의가 없을 것, 인공지능으로 성명이나 초상 등을 처리할 것,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가상 디지털 형상을 만들어 쓰거나 공개할 것이다. 알아볼 수 있는지가 핵심 잣대다.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바꾼 형상은 이 조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목소리 권익 침해는 훈련어료(训练语料)라는 말을 조문에 직접 넣었다. 목소리를 학습 자료로 쓰는 단계부터 문제로 본다는 뜻이다. 중국 민법전 제1023조는 자연인의 목소리 보호에 초상권 보호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제4조는 그 조문을 인공지능 장면으로 끌어와 적용한다.

동의의 범위도 다툼거리다. 어떤 사람이 광고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자. 그 영상으로 얼굴 모델을 학습시켜 다른 광고를 만드는 일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다. 조문은 未经自然人同意, 곧 자연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라고 쓴다. 처리 행위마다 동의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읽힌다. 除法律另有规定的外라는 단서가 앞에 붙어 있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

명예권 침해는 앞의 둘과 성격이 다르다.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조작해 쓰는 행위를 문제 삼는다. 만들어진 형상이나 음성으로 부당한 행동을 시키거나 사실이 아닌 말을 하게 해서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경우다. 얼굴은 그대로 두고 말만 바꿔 넣어도 여기에 해당한다.

사망자의 경우 청구권자가 바뀐다. 본인이 없으므로 근친속(近亲属)이 민법전 제994조에 따라 청구한다. 법원은 이 청구를 지지한다. 조문은 사망자의 성명, 초상, 명예가 침해된 경우를 든다.

실무 포인트

사망자를 다루는 서비스에는 공서양속의 문턱이 하나 더 있다. 조문 첫머리가 법령과 공서양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정하기 때문이다. 근친속(近亲属)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망자의 이미지를 상품 광고에 쓰는 일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은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쓰는 모든 단계에서 동의의 범위를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 촬영 동의와 합성 동의는 다른 문제다. 학습 자료로 쓰는 동의는 또 다른 문제다. 계약서에 이 세 가지를 나누어 적는 편이 안전하다. 사망자의 형상을 다루는 서비스는 근친속(近亲属)의 동의를 받아 두어야 한다.

서비스 안에 얼굴 바꾸기나 목소리 흉내 기능을 두는 회사는 두 겹의 점검이 필요하다. 하나는 재료가 된 얼굴과 목소리의 출처다. 다른 하나는 만들어진 결과물이 어떻게 쓰이는지다. 만드는 단계가 적법해도 조작해 부당한 말을 시키는 단계에서 명예권 침해가 생긴다. 이용 기록과 배포 경로를 남겨 두면 뒤에 책임의 소재를 가르기 쉽다.

개인은 자기 얼굴이나 목소리가 쓰인 화면과 음성을 내려받아 보관한다. 원본과 합성물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에서 도움이 된다. 침해가 퍼지는 중이라면 제8조의 인격권 침해 금지령(人格权侵害禁令)을 함께 살핀다.

한국과의 비교

한국 민법에는 인격권 일반 조항이 없다. 초상권과 성명권은 판례가 인정해 온 권리다. 목소리에 관해서는 중국 민법전 제1023조 같은 명문 준용 규정이 없다. 법적 근거의 촘촘함에서 차이가 난다.

민사 구제의 모습도 갈린다. 한국에서 초상권과 성명권이 침해되면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로 손해배상을 구한다.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도 판례가 인정한다. 중국은 민법전 제1019조가 정보기술 수단으로 남의 초상을 위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문으로 정한다. 제4조는 이 조문이 서 있는 자리에 인공지능 장면을 얹는다.

형사 쪽은 한국이 앞서 손을 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다룬다. 2024년 10월 시행된 개정법은 반포 목적 요건을 없애고 소지와 시청까지 처벌 대상에 넣었다. 중국 의견 제4조는 민사 책임을 정한 문건이므로 성격이 다르다. 형사 문제는 의견 제20조가 따로 다룬다.

사망자 보호에서도 갈린다. 한국 민법에는 사망자의 인격권을 유족이 직접 주장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 유족 고유의 감정 침해로 접근하는 방식이 쓰인다. 중국은 민법전 제994조라는 근거 조문을 두고 제4조가 그것을 인공지능 장면에 연결한다.

남은 쟁점

제4조는 동의를 받으면 되는지, 어떤 방식의 동의여야 하는지까지 정하지 않았다. 알아볼 수 있음의 판단 기준도 조문에는 없다. 목소리의 경우 음색과 어조, 발음 습관을 든 것이 예시인지 요건인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사망자 조항은 상업적 이용과 유족의 추모 목적 이용을 구분하지 않는다. 원문은 함부로 만들어 쓰는 행위로 성명과 초상, 명예가 침해된 경우라고만 적는다.

4. 제5조 (五) 「网络开盒」과 「人肉搜索」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규제

조문 요지

제5조는 인공지능을 써서 남의 신상을 파헤치는 행위를 다룬다. 망락개합(网络开盒)은 상자를 연다는 말에서 나온 표현이다. 남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까발리는 일을 가리킨다. 인육수색(人肉搜索)은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 신상을 찾아내는 일이다. 두 말

모두 중국에서 널리 쓰이는 생활 용어다.

조문은 두 유형로 나뉜다. 앞부분은 「以刺探隐私为目的」, 곧 사밀 정보를 캐낼 목적으로 인공지능을 써서 전화번호와 온라인 계정, 소셜미디어 같은 공개 정보를 추적하고 분석해 사밀 정보를 얻는 행위를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본다. 얻은 사밀 정보를 흘리거나 공개하는 행위, 얻은 정보로 사생활의 안녕을 침요하는 행위도 같다. 뒷부분은 인공지능으로 남의 사밀 공간과 사밀 활동을 촬영하고 엿보고 도청하는 행위를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본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본인이 명확히 동의한 경우는 뺀다.

배경과 문제 상황

답기자문(答记者问)은 망락개합(网络开盒)과 인육수색(人肉搜索)을 「网络暴力的突出表现形式」이라고 적었다. 사이버 폭력이 제일 뚜렷하게 드러나는 형태라는 뜻이다.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을 해칠 뿐 아니라 생활의 안녕을 크게 흔들고, 사회 전체의 안전감까지 떨어뜨린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어려운 대목이 하나 있다. 흩어져 있는 정보 하나하나는 이미 공개된 것이다. 어느 게시판의 닉네임, 다른 곳의 사진, 또 다른 곳의 전화번호 뒷자리가 그렇다. 사람이 손으로 모으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인공지능은 이 일을 몇 분 만에 끝낸다. 공개 정보를 모으고 이어 붙여 사는 곳과 직장을 알아낸다. 제5조는 이런 결합 행위 자체를 침해로 못 박는다.

예를 들어 어느 학생이 온라인에서 말다툼을 벌였다고 하자. 상대가 인공지능 도구로 그 학생의 계정 활동을 훑어 학교와 집 근처 지하철역을 알아낸다. 그 정보를 게시판에 올린다. 낱낱의 재료는 공개된 것이었지만 결과는 사생활의 침해다.

요건과 효과

앞부분의 침해는 목적, 수단, 결과의 세 마디로 읽는다. 목적은 사밀 정보를 캐내는 것이다. 수단은 인공지능을 쓴 추적과 분석이다. 대상은 전화번호와 온라인 계정, 소셜미디어 같은 공개 정보다. 결과는 세 유형 가운데 하나다. 사밀 정보를 얻거나, 얻은 정보를 흘리거나 공개하거나, 그 정보로 사생활의 안녕을 침요하는 것이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된다.

여기서 나오는 사밀 정보(私密信息)와 사생활 안녕(私人生活安宁)은 중국 민법전이 프라이버시권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이다. 사밀 정보는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의 정보를 뜻한다. 사생활 안녕은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지낼 상태를 뜻한다. 신상을 캐내는 행위와 캐낸 것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를 둘 다 잡으려고 두 개념을 나란히 놓았다.

뒷부분의 침해는 목적을 요건으로 들지 않는다. 인공지능으로 사밀 공간이나 사밀 활동을 촬영하고 엿보고 도청했다면 그것으로 침해가 된다. 예외는 두 가지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와 본인이 명확히 동의한 경우다. 조문은 明确同意라고 하여 명확한 동의를 요구한다. 묵시적 동의나 약관에 파묻힌 동의로는 부족하다는 방향으로 읽힌다.

실무 포인트

기업은 공개 정보 수집 도구를 다룰 때 결합의 결과를 살펴야 한다. 개별 항목이 공개 정보라는 사실만으로는 방패가 되지 않는다. 사람을 특정해 추적하고 분석하는 기능은 제5조의 적용 범위에 든다. 서비스 안에 그런 기능을 넣으려면 목적과 이용 범위를 좁게 설계하고 기록을 남긴다.

개인은 신상이 퍼진 화면과 게시 시각을 갈무리해 둔다. 어떤 정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표를 만들어 두면 결합 행위를 보여 주기 쉽다. 플랫폼에는 삭제를 요구하고, 확산이 빠르면 제8조의 금지령(禁令)을 함께 검토한다.

플랫폼도 살펴야 할 대목이 있다. 신상을 모은 글이 게시판에 올라오면 제7조와 제8조의 조치 의무가 함께 문제 된다. 신상 정보가 퍼진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다. 조치의 속도가 손해의 크기를 가른다.

법원은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개인정보 권익 침해를 갈라 보게 된다. 제5조는 프라이버시권의 문제이고, 제6조는 개인정보 권익의 문제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두 주장이 함께 나올 수 있다.

한국과의 비교

한국에는 망락개합(网络开盒)에 딱 맞는 조문이 없다. 신상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리 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 규정, 형법의 명예훼손과 협박 규정으로 나뉘어 다뤄진다. 여러 법률을 이어 붙여야 한다.

사밀 공간 촬영과 도청에 대해서는 한국도 형사 규정을 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처벌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의 녹음과 청취를 제한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도구로 삼은 경우를 따로 정한 조문은 없다.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처리의 기본 근거로 삼는다. 반면 프라이버시권 침해라는 민사 유형을 판례가 아니라 최고법원 문건으로 정리한 예는 없다. 중국은 민법전 제1032조 이하가 프라이버시권을 명문으로 두고, 의견 제5조가 인공지능 장면의 판단 기준을 덧붙이는 구조다.

남은 쟁점

공익을 위한 취재나 연구 목적의 정보 수집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도 조문에 없다. 앞부분은 사밀 정보를 캐낼 목적을 요건으로 들었으므로 목적이 다르면 벗어난다고 읽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목적을 어떻게 증명할지는 남은 문제다.

제5조는 사밀 정보와 공개 정보의 경계를 정의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까지 모으고 이어 붙여야 사밀 정보를 얻은 것으로 보는지도 조문에 없다. 도구를 만들어 판 사람과 그것을 쓴 사람의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도 이 조에서는 말하지 않는다. 원문은 목적과 행위 유형만 정한다.

5. 제6조 (六) 인공지능 훈련 과정의 개인정보 권익

조문 요지

제6조는 모델을 학습시키려고 개인정보를 쓰는 경우를 다룬다. 조문의 뼈대는 「为人工智能模型训练，在合理范围内处理个人自行公开的或者其他已经合法公开的个人信息，且个人未明确拒绝的，一般不认定为侵害个人信息权益的行为」다. 인공지능 모델 훈련을 위해 개인이 스스로 공개했거나 그 밖에 이미 합법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합리적 범위에서 처리하고 본인이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권익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붙는다. 첫째, 개인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둘째, 합리적 범위를 판단할 때 볼 요소를 든다. 처리 목적과 모

델 기능 사이의 필요성과 적당함, 다루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민감한 정도 및 개인 권익에 미칠 잠재적 영향, 개인이 정보를 공개할 당시의 상황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이용 범위가 그것이다.

배경과 문제 상황

답기자문(答记者问)은 이 조의 배경을 「大规模、高质量的训练数据是人工智能技术发展的基石」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크고 질 좋은 학습 데이터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주춧돌이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권익 보호와 산업 발전을 함께 고려해 균형을 잡았다고 밝힌다.

여기서 처리(处理)라는 말의 뜻을 짚어 둔다.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처리는 수집, 저장, 사용, 가공, 전송, 제공, 공개, 삭제를 아우르는 말이다. 학습 자료로 모으는 일도, 모델 안에 담는 일도 처리에 들어간다. 제6조가 훈련 과정 전체를 판단 대상으로 삼는 이유다.

문제는 인터넷에 널린 정보다. 블로그 글, 공개 게시판 답글, 언론 기사에 실린 이름과 직함은 이미 공개돼 있다. 이것을 모아 학습에 쓰는 일이 침해인지가 다툼이었다. 모두 동의를 받으라고 하면 학습이 불가능하다. 아무 제한을 두지 않으면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사라진다. 제6조는 원칙적 허용에 거부권과 중대 영향의 예외를 붙이는 방식으로 답했다.

예를 들어 어느 사람이 블로그에 요리법과 사진을 올렸다고 하자. 이 글이 모델 학습에 쓰인다. 원칙적으로 침해가 아니다. 그러나 그 블로그에 병원 진료 기록이 함께 적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민감한 정보이고 권익에 미칠 영향이 크다. 이때는 동의가 필요한 쪽으로 기운다.

요건과 효과

침해로 보지 않는 요건은 네 가지다. 목적이 인공지능 모델 훈련일 것, 대상이 개인이 스스로 공개했거나 이미 합법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일 것, 처리가 합리적 범위 안에 있을 것, 본인이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문구가 거부권을 만든다. 정보 주체가 학습에 쓰지 말라고 밝히면 원칙적 허용이 깨진다.

합리적 범위는 세 유형 요소로 판단한다. 첫째는 목적과 모델 기능의 필요성과 적당함이다. 모델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정보인지를 본다. 둘째는 정보의 유형과 민감한 정도, 개인 권익에 미칠 잠재적 영향이다. 셋째는 공개 당시의 상황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이용 범위다. 학술 발표용으로 올린 자료가 광고 문구를 만드는 모델에 쓰였다면 예상 범위를 벗어난 쪽으로 기운다.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예외 없이 동의를 받는다. 조문은 「应当依照法律规定取得个人同意」라고 쓴다. 법률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으라는 뜻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와의 관계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합리적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본인이 명확히 거부한 경우와 개인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래의 공개 범위를 넘어서 처리하려면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는 이 조문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 모델 훈련이라는 장면에 맞춘다. 새 규범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조문을 재판 기준으로 옮겨 놓은 것이다. 다른 점은 합리적 범위의 판단 요소를 세 유형로 풀어 준 대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합리적 범위라는 말만 쓰고 내용을 열지 않는다. 의견은 법관이 볼 눈금을 붙였다.

실무 포인트

학습 자료를 사들이는 경우도 같은 점검이 필요하다. 판 쪽이 합법적으로 공개된 정보라고 밝혀도 그 말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계약서에 출처와 적법성에 대한 진술을 넣고, 근거 자료를 함께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하다.

기업은 학습 자료의 출처를 목록으로 관리해야 한다.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공개된 자료인지, 공개 당시의 맥락이 무엇인지를 남긴다. 거부 의사를 받는 창구를 두는 일도 필요하다. 조문이 명확한 거부를 침해 판단의 갈림길로 삼기 때문이다. 거부가 들어온 뒤의 처리 절차와 처리 시각도 기록으로 남긴다. 민감한 정보가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걸러 내는 절차를 문서로 갖춘다.

법원은 합리적 범위를 판단할 때 공개 당시의 상황을 살피게 된다. 어느 자리에 어떤 목적으로 올린 정보인지가 잣대가 된다. 학교 동문 게시판에 올린 연락처와 언론 인터뷰에 실린 직함은 예상 이용 범위가 다르다. 같은 정보라도 맥락이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개인은 자기 정보가 학습에 쓰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명확한 방식으로 거부 의사를 남긴다. 말로만 한 거부는 뒤에 증명하기 어렵다. 서면이나 서비스 안의 공식 창구를 쓰고 접수 기록을 보관한다.

한국과의 비교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학습 이용을 정면으로 다룬 조문이 없다. 실무는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정당한 이익 규정과 제28조의2의 가명정보 특례를 근거로 삼는다. 가명정보 특례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일 때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중국식 거부권과 한국식 정당한 이익 심사는 방향이 다르다. 중국은 원칙적 허용을 정하고 본인의 거부로 되돌리는 구조다. 한국은 처리자의 이익과 정보 주체의 권리를 견주는 구조다. 어느 쪽이 넓은지는 사안에 따라 갈린다. 한국에서 인공지능 학습 목적의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은 2026년 9월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은 쟁점

민감한 개인정보와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룰지도 이 조에는 없다.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이 따로 정한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문은 민감한 정도를 합리적 범위 판단의 한 요소로 들 뿐이다.

제6조는 거부의 방식과 시기를 정하지 않는다. 이미 학습이 끝난 모델에서 특정인의 정보를 지울 수 있는지도 다루지 않는다. 중대한 영향의 뜻도 조문에 정의가 없다. 합법적으로 공개된 정보의 범위를 누가 증명하는지도 열려 있다. 원문은 요건과 판단 요소만 정한다.

6. 제7조 (七)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의 침해 책임

조문 요지

제7조의 제목은 「审慎认定生成式人工智能服务提供者的侵权责任」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의 침해 책임을 신중하게 인정하라는 뜻이다. 審慎, 곧 신중이라는 말이 제목에 들어 있다.

조문은 두 상황을 나눈다. 첫째 상황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만들어 낸 내용이 남의 명예권과 프라이버시권 같은 인격 권익을 해친 경우다. 권리자가 통지했는데도 제공자가 침해 내용의 생성을 멈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때 하지 않으면, 그로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통지에는 침해를 뒷받침하는 초보적 증거와 권리자의 진짜 신분 정보가 들어가야 한다.

둘째 상황은 이용자가 개입한 경우다. 조문은 「网络用户通过输入侵权提示词等方式恶意诱导」라고 쓴다. 이용자가 침해를 부르는 제시어(提示词)를 넣는 방식으로 악의로 유도해 침해 내용을 만들게 하고 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여기서 권리자가 통지했는데도 제공자가 침해 내용의 생성을 멈추고 관련 생성 지시를 막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때 하지 않으면, 권리자는 민법전 제1195조에 따라 이용자와 제공자에게 함께 민사 책임을 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청구를 지지한다.

배경과 문제 상황

답기자문(答记者问)은 이 조를 피풍항 규칙(避风港规则)의 문제로 설명한다. 피풍항(避风港)은 배가 바람을 피해 들어가는 항구를 뜻한다. 민법전 제1195조가 정한 통지-삭제 규칙(通知删除规则)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다. 이용자가 인터넷 서비스로 남을 해치면 권리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린다. 제공자가 제대로 된 통지를 받고 제때 조치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조치하지 않으면 늘어난 손해에 대해 이용자와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

다툼은 이 규칙을 생성형 인공지능에도 쓸 수 있느냐였다. 답기자문(答记者问)은 두 서비스가 운영 원리에서 닮은 데가 있다고 본다. 제공자가 방대한 정보를 모아 이용자에게 내놓는 점이 같다. 생성 결과는 학습 데이터와 모델 매개변수, 이용자가 넣은 제시어(提示词)에 따라 달라진다. 제공자가 모든 입력을 미리 알 수는 없다. 만들어지는 내용의 양도 엄청나다. 그래서 하나하나 미리 예측하고 검사해 막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답기자문(答记者问)은 다음 문장에서 선을 긋는다. 「当人工智能因自身幻觉或用户恶意诱导生成侵权内容后，经权利人通知，生成式人工智能服务提供者则应当、也有条件采取必要措施」라고 적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의 환각이나 이용자의 악의적 유도로 침해 내용을 만든 뒤에는, 권리자의 통지를 받으면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여건도 갖췄다는 뜻이다. AI 환각(AI幻觉)은 모델

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만들어 내는 현상이다. 이 지점에서 피풍항 규칙(避风港规则)을 참조해 적용할 근거가 생긴다고 본다.

예를 들어 어느 식당 주인이 자기 가게 이름을 챗봇에 물었다고 하자. 챗봇이 있지도 않은 위생 처분 이력을 지어내 답한다. 주인이 제공자에게 화면 갈무리와 자기 신분 자료를 붙여 알린다. 제공자가 그대로 두면 그 뒤에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요건과 효과

첫째 유형의 요건은 네 가지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만든 내용일 것, 그 내용이 명예권과 프라이버시권 같은 인격 권익을 해칠 것, 권리자의 통지가 있을 것, 제공자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 효과는 그로 생긴 손해에 대한 침해 책임이다.

통지의 요건은 조문에 적혀 있다. 침해를 이루는 초보적 증거와 권리자의 진짜 신분 정보다. 이 두 가지가 빠진 통지는 제공자의 조치 의무를 부르지 않는다. 통지 제도를 남용해 경쟁 서비스의 기능을 막는 일을 걸러 내는 장치다.

필요한 조치의 내용도 조문이 예로 든다. 침해 내용의 생성을 멈추는 것이 하나다. 둘째 유형에서는 관련 생성 지시를 막는 것이 더해진다. 屏蔽相关生成指令, 곧 문제가 된 지시어가 다시 통하지 않게 막는 조치다. 글 한 건을 지우는 전통적 삭제와 다른 대목이다. 생성형 서비스에서는 같은 지시어로 같은 침해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둘째 유형에서 이용자의 책임은 악의적 유도를 요건으로 한다. 침해를 부르는 제시어(提示词)를 넣는 방식이 예로 나온다. 손해가 실제로 생겨야 한다. 이용자가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제공자의 조치 의무는 통지를 기점으로 발생한다. 권리자는 민법전 제1195조를 근거로 두 사람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제목에 들어 있는 신중이라는 말도 요건을 읽는 데 쓰인다. 제공자는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조문이 책임을 묻는 대상은 통지 뒤에도 조치하지 않아 늘어난 손해다. 미리 모든 생성물을 검사하라는 의무를 지우지 않는 태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

실무 포인트

서비스 제공자는 통지를 받는 창구를 눈에 띄게 두어야 한다. 통지의 형식과 필요한 첨부 자료를 안내해 두면 판단이 빨라진다. 접수 시각과 처리 시각을 기록으로 남긴다. 제

때라는 요건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조치의 내용은 생성 차단과 지시어차단을 함께 갖추는 편이 좋다. 내용 한 건만 지우고 지시어를 놓아두면 같은 침해가 되풀이된다.

이용자는 자신이 넣는 지시어가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남을 해치는 내용을 만들어 내려는 지시어는 그 자체로 악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된다.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는 사실이 방패가 되지 않는다.

통지를 받은 제공자가 조치를 미루면 손해가 계속 늘어난다. 조문이 책임의 범위를 造成的损害, 곧 그로 생긴 손해라고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대로 통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제공자의 의무는 아직 생기지 않는다. 제공자로서는 통지의 흠을 이유로 그냥 넘기기보다 무엇이 빠졌는지 알려 주고 보완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

엉뚱한 통지로 서비스가 막히면 반대쪽 손해가 생긴다. 민법전 제1195조는 잘못된 통지로 손해를 입힌 권리자의 책임도 정한다. 통지를 보내는 쪽도 근거를 갖추고 보내야 한다는 뜻이다.

권리자는 통지를 보낼 때 두 가지를 빠뜨리지 않는다. 침해를 보여 주는 초보적 증거와 자기 신분 자료다. 화면 갈무리에는 지시어와 답변, 시각이 함께 보이게 담는다.

한국과의 비교

한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는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를 정한다. 저작권법 제102조와 제103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과 복제·전송 중단 절차를 둔다.

판단의 초점도 옮겨 간다. 게시물은 지우면 사라진다. 생성물은 지워도 같은 지시어를 넣으면 다시 만들어진다. 제7조가 조치의 예로 생성의 중지와 지시어 차단을 든 까닭이 여기에 있다. 조치의 성격이 삭제에서 차단으로 바뀐 셈이다.

다른 점은 대상이다. 한국의 두 제도는 이용자가 올린 정보를 전제로 만들어졌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스스로 만들어 낸 결과물에 이 절차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규정은 아직 없다. 중국은 의견 제7조로 민법전 제1195조를 참조해 적용하는 길을 열었다. 지시어 차단이라는 조치 유형을 명시한 점도 한국 법에는 대응 조문이 없는 부분이다.

책임의 성질도 살펴야 한다. 한국의 임시조치는 30일 이내의 차단이라는 기간이 붙는다. 중국 제7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라는 열린 표현을 쓴다.

남은 쟁점

제7조는 제때가 얼마나 빠른 것인지 정하지 않는다. 통지를 받고 며칠 안에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필요한 조치의 범위도 열려 있다. 지시어를 얼마나 넓게 막아야 하는지, 넓게 막아 정상적인 이용까지 차단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조문에 없다.

책임을 나누는 방식도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이용자와 제공자가 연대해서 지는지, 각자의 몫을 나누어 지는지에 대한 문구는 없다. 조문은 민법전 제1195조에 따라 청구하면 법원이 지지한다고만 쓴다. 대상 권리도 인격 권익에 머문다. 생성 내용이 저작권을 해친 경우는 제12조가 따로 다룬다. 답기자문(答记者问)은 이 규정에 대해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각계가 한목소리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7. 제8조 (八) 인격권 침해 금지령(人格权侵害禁令)의 적용

조문 요지

제8조는 인격권 침해 금지령(人格权侵害禁令)을 인공지능 사건에 어떻게 쓸지 정한다. 금지령(禁令)은 침해가 벌어지는 중이거나 곧 벌어질 때 법원이 즉시 그 행위를 멈추라고 명하는 결정이다. 근거 법령은 민법전 제997조다. 최고인민법원은 2022년 8월 1일부터 금지령(禁令) 사건의 심리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신청 자격은 넓다. 원문은 「自然人、法人或者非法人组织」이라고 적는다. 자연인과 법인, 법인이 아닌 조직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은 두 가지다. 첫째, 「有证据证明行为人利用人工智能正在实施或者即将实施侵害其人格权益的违法行为」다. 상대방이 인공지능을 써서 인격권익을 해치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거나 곧 하려 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둘째, 「不及时制止将使其合法权益受到难以弥补的损害」다. 제때 막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겨야 한다.

금지령(禁令)의 내용은 두 유형다. 하나는 「责令行为人停止有关行为」다. 행위자에게 그 행위를 멈추라고 명한다. 다른 하나는 「责令有关网络服务提供者、生成式人工智能服务提供者停止提供有关服务」다.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와 생성형 인

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멈추라고 명한다. 피해자는 영상을 만들어 올린 사람만 겨냥하지 않아도 된다. 그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내는 서비스 쪽도 함께 겨냥할 수 있다.

법원의 심사 기준도 원문에 있다. 「应当结合被侵害的人格权类型、违法行为的方式以及可能造成损害的范围、程度等因素，采取相应的禁令措施」라고 정한다. 침해된 인격권의 종류, 위법행위의 방식, 손해가 미칠 범위와 정도를 함께 본다는 뜻이다. 그리고 「不得超出必要限度」라는 한 줄을 덧붙인다. 필요한 한도를 넘지 말라는 제한이다.

배경과 문제 상황

답기자문(答记者问)은 금지령(禁令)을 따로 정한 이유를 밝힌다. 인공지능으로 인격권익을 해치는 행위에는 「成本低、传播快、影响广、损害难以逆转」이라는 성질이 있다고 적는다. 비용이 적게 들고, 빨리 퍼지고, 널리 영향을 미치고, 손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传统的事后提起诉讼的救济模式」, 곧 일이 끝난 뒤 소송을 내는 방식으로는 늦다고 본다.

답기자문(答记者问)이 든 예는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인공지능 얼굴 바꾸기로 이른바 「黄谣」의 대상이 된 경우다. 성적인 헛소문을 담은 합성 영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영상은 하루면 수만 명에게 퍼진다. 판결이 나올 때쯤이면 원본은 이미 수십 곳에 복제되어 있다. 배상금을 받아도 지워지지 않은 영상은 그대로 남는다.

같은 문제는 학교와 직장에서도 생긴다. 같은 반 학생의 사진을 몇 장 넣어 만든 합성 영상 하나가 단체 대화방을 타고 번진다. 피해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몇 달 뒤의 배상금이 아니라 오늘 밤의 확산 차단이다. 제8조는 이 시간 차이를 메우려는 규정이다.

금지령(禁令)이 인공지능 사건에서 갖는 뜻은 대상의 범위에 있다. 종이와 방송의 시대에는 원본을 만든 사람만 막으면 되었다. 생성형 서비스가 끼어들면 원본을 만드는 기계가 따로 남는다. 게시물을 지워도 같은 지시어를 넣으면 같은 영상이 다시 나온다. 원문이 서비스 제공자를 명령 상대로 함께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요건과 효과

신청 주체는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조직이다. 인격권익은 자연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인도 명예권을 가지므로 신청 주체에 들어간다.

첫째 요건은 증거로 뒷받침되는 침해의 현재성 또는 임박성이다. 원문은 「正在实施或者即将实施」라고 적는다. 이미 끝난 행위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계속되고 있거나 곧 시작될 것이어야 한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같은 지시어를 받으면 같은 내용을 다시 만들어 내는 구조라면, 생성이 반복될 위험 자체가 현재성의 근거가 된다.

둘째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다. 원문은 「难以弥补的损害」라고 적는다. 금액으로 메우기 어려운 손해를 뜻한다. 명예와 사생활에 생긴 손상은 대개 여기에 해당한다.

효과는 두 방향의 명령이다. 행위자에 대한 정지 명령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서비스 정지 명령이다. 답기자문(答记者问)은 법원이 「既可以…也可以…」의 방식으로 둘 다 쓸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나를 골라야 하는 관계가 아니다.

법원은 명령의 강도를 조절한다. 원문의 「不得超出必要限度」가 그 근거다. 문제가 된 영상 한 편의 생성과 배포만 막으면 되는 사건에서 서비스 전체를 세우는 명령은 한도를 넘는다. 특정 지시어의 차단, 특정 계정의 정지, 특정 게시물의 차단처럼 좁은 수단이 먼저다.

금지령(禁令)은 본안 소송과 별개로 움직인다.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금지령(禁令)을 신청할 수 있다. 확산을 먼저 끊고 배상은 뒤에 다투는 순서가 가능해진다. 제7조의 통지 절차와 견주면 차이가 뚜렷하다. 제7조는 권리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알리는 사적 절차다. 제8조는 법원이 명령을 내는 공적 절차다. 서비스 제공자가 통지를 받고도 움직이지 않을 때 다음 수단이 된다.

실무 포인트

피해자는 신청 전에 증거를 고정해야 한다. 화면 녹화, 게시 주소, 게시 시각, 확산 경로를 남긴다. 원본을 지우면 침해 사실을 증명할 수단도 함께 사라진다. 지우기 전에 보존이 먼저다.

피해자는 신청서에 정지 대상을 좁고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필요한 한도」라는 제한은 법원만이 아니라 신청인에게도 작동한다. 요구가 넓을수록 기각 위험이 커진다.

서비스 사업자는 금지령(禁令)을 받았을 때 몇 시간 안에 움직일 절차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한다. 담당 부서, 연락 창구, 지시어 차단 기능, 재생성 차단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명령을 지킬 수 있다. 제7조의 통지 처리 창구와 같은 조직에서 함께 다루면 대응이 빨라진다.

법원은 심사를 빨리 하면서도 반대편의 말을 들을 기회를 남겨야 한다. 금지령(禁令)은 본안 판결이 아니다. 잘못 내려진 명령은 표현의 자유와 영업을 함께 눌러 버린다.

한국과의 비교

한국에도 같은 기능을 하는 수단이 있다.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와 방해예방청구다. 법원은 이를 민사집행법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처리한다. 게시물 삭제와 게시 금지를 명하는 결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차이는 제도의 이름과 자리에 있다. 중국은 민법전 제997조에 인격권 침해 금지령(人格权侵害禁令)이라는 이름의 실체법 제도를 따로 두었다. 한국은 별도의 명칭 없이 가처분이라는 절차법의 틀로 다룬다.

한국은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실무가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의 이번 의견(意见)은 담보를 언급하지 않는다.

한국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형사법으로 무겁게 다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제작과 소지, 시청까지 처벌한다. 중국의 제8조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 구제의 속도를 높이는 조항이다. 두 나라의 대응 지점이 서로 다르다.

남은 쟁점

원문은 심사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며칠 안에 결정해야 하는지가 조문에 없다.

원문은 담보를 정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담보를 내야 하는지, 잘못된 금지령(禁令)으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어떻게 물어 주는지가 나오지 않는다.

원문은 증거의 수준을 정하지 않는다. 「有证据证明」이 소명 수준인지 증명 수준인지가 남는다.

원문은 명령을 어겼을 때의 제재를 적지 않는다.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으로 채워야 한다.

8. 제9조 (九) 인공지능 제품책임(产品责任)의 범위

조문 요지

제9조는 인공지능에 제품책임(产品责任)을 언제 적용할지 정한다. 제품책임(产品责任)은 물건에 결함이 있어 손해가 생기면 생산자와 판매자가 지는 책임이다. 근거 법령은 민법전과 제품품질법(产品质量法)이다.

원문의 첫 문장이 이 조의 핵심이다. 「人民法院应当依据产品质量法关于"产品"的定义，依法准确认定以实物为载体的人工智能产品并适用相应的法律规则」이라고 적는다. 제품품질법(产品质量法)이 정한 「产品」의 정의를 따르고, 실물을 담는 그릇으로 삼는 인공지능 제품을 가려내어 그에 맞는 법 규칙을 적용하라는 뜻이다. 「以实物为载体」가 기준선이다.

책임 주체는 「生产者、销售者」다. 원문은 제9조에서 개발자(开发者)를 제품책임(产品责任)의 주체로 적지 않는다. 손해가 생긴 인공지능 제품에 결함이 있으면 생산자와 판매자가 제품책임(产品责任)을 진다.

결함의 판단 기준도 원문에 있다.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위험이 있는지 볼 때 다섯 가지를 함께 살핀다. 제품의 성질과 용도, 자율학습 능력, 업그레이드와 갱신 상황, 사용자가 시스템을 통제하는 정도, 관련 국가표준과 업계표준에 맞는지다.

그리고 원문은 중점 심사 항목을 하나 지정한다. 「重点审查生产者、销售者是否就人工智能产品的适用场景、固有局限及可预见的风险等进行了真实的说明和明确的警示」다. 적용 상황, 고유한 한계,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분명히 경고했는지를 중점으로 본다는 뜻이다.

배경과 문제 상황

답기자문(答记者问)은 이 조를 혁신 지원 항목으로 소개한다. 목표를 「避免产品责任泛化」라고 적는다. 제품책임(产品责任)이 무한정 번지는 일을 막겠다는 뜻이다. 답기자문(答记者问)은 인공지능 제품을 「以实物为载体的产品」으로 한정하고 예로 「智能机器人、自动驾驶汽车」를 든다. 그리고 「将没有实物载体的人工智能

服务排除在外」라고 밝힌다. 실물 그릇이 없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제품책임(产品责任)에서 빼겠다는 것이다.

구분의 실익은 책임의 무게에 있다. 제품책임(产品责任)은 생산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결함과 손해만 있으면 성립한다. 대화형 서비스 하나하나에 이 무거운 책임을 붙이면 서비스를 내놓기 어려워진다.

생활 속 예로 보면 선이 뚜렷하다. 청소 로봇이 계단에서 굴러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실물이 있는 제품이다. 반면 화면 속 대화 서비스가 잘못된 조언을 해 손해가 생겼다면 실물 그릇이 없다. 앞의 사건은 제9조로, 뒤의 사건은 제3조의 과실책임으로 간다.

이 선 긋기는 책임을 줄이려는 조치가 아니라 책임의 종류를 나누는 조치다. 실물이 없는 서비스라도 제3조의 과실책임과 제7조의 조치 의무를 그대로 받는다. 원문은 서비스를 책임에서 빼는 대신 판단의 잣대를 과실로 옮겨 놓았다.

요건과 효과

첫째 요건은 대상이 실물을 그릇으로 삼는 인공지능 제품일 것이다. 답기자문(答记者问)이 든 예는 지능형 로봇과 자율주행(自动驾驶) 자동차다. 산업용 로봇 팔, 배송 로봇,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간 가전도 실물 그릇을 갖춘다.

둘째 요건은 결함이다. 원문은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위험을 결함의 표지로 삼는다. 판단 요소 다섯 가지 가운데 세 가지는 인공지능 때문에 새로 들어왔다. 자율학습 능력, 업그레이드와 갱신 상황, 사용자의 통제 정도다. 출고 뒤 학습으로 성질이 바뀌는 제품, 무선 갱신으로 기능이 달라지는 제품이 여기에 걸린다.

셋째 요건은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다.

효과는 생산자와 판매자의 제품책임(产品责任)이다.

설명과 경고는 결함 판단을 가르는 축이다. 원문이 중점 심사 대상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성능을 부풀려 적은 안내문, 한계를 감춘 광고, 위험 경고가 빠진 설명서는 그 자체로 결함 인정 쪽으로 기운다.

사용자의 통제 정도라는 요소도 두 방향으로 작동한다. 사용자가 언제든 멈출 수 있는 기계라면 제조사의 부담이 줄어든다. 사람이 끼어들 틈 없이 스스로 판단하는 기계라면

부담이 늘어난다. 통제권을 사람에게서 거두어 갈수록 결함 판단이 엄격해지는 구조다.

실무 포인트

제조사는 설명서와 경고문을 다시 써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 쓰라고 만든 제품인지, 무엇을 못 하는지, 어떤 위험이 예견되는지를 사실대로 적는다. 원문의 표현은 「真实的说明和明确的警示」다. 사실대로, 분명하게가 두 축이다.

제조사는 갱신 이력을 남겨야 한다. 어떤 날짜에 어떤 기능이 바뀌었는지가 결함 판단의 자료가 된다. 자율학습으로 동작이 달라지는 제품이라면 학습 범위와 제한 장치도 기록으로 남긴다.

판매자도 책임 주체다. 제조사가 준 자료를 그대로 옮기기만 해서는 부족하다. 매장 설명과 광고 문구가 설명서와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한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자는 제9조를 벗어난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제3조의 과실책임, 제7조의 통지 후 조치 의무가 그대로 남는다. 책임의 종류가 바뀔 뿐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기업 법무는 제품과 서비스의 경계에 있는 상품을 미리 분류해 두어야 한다. 기기와 구독 서비스를 묶어 파는 상품이 그런 예다.

한국과의 비교

한국은 제조물 책임법을 둔다. 이 법은 제조물을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으로 정의한다. 소프트웨어 자체는 이 정의에 바로 들어가지 않는다. 실물을 기준으로 삼는 점에서 중국 제9조와 방향이 같다.

한국의 제조물 책임은 결함이 있으면 제조업자가 과실 없이도 책임을 진다. 중국의 제품책임(产品责任)도 결함을 축으로 삼는다.

차이는 판단 요소를 조문에 적었는지에 있다. 중국의 의견은 자율학습 능력과 갱신 상황, 사용자 통제 정도를 결함 판단 요소로 문서에 박아 넣었다. 한국법에는 인공지능을 겨냥한 이런 목록이 없다.

한국은 표시상의 결함을 법에 따로 두고 있다. 중국 제9조가 설명과 경고를 중점 심사 항목으로 지정한 것과 겹치는 부분이다.

남은 쟁점

원문은 개발자를 제9조의 책임 주체로 적지 않는다. 로봇의 판단 모듈을 만든 회사가 생산자에 들어가는지가 남는다.

원문은 발전위험 항변을 다루지 않는다. 출고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알 수 없었다는 항변을 인공지능 제품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비어 있다.

원문은 출고 뒤 학습으로 생긴 위험의 처리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결함의 판단 시점이 출고 시점인지 사고 시점인지가 조문에 없다.

원문은 실물과 서비스가 결합한 상품의 분류 기준을 세우지 않는다. 기기는 팔고 판단은 서버에서 하는 구조가 여기에 걸린다.

9. 제10조 (十) 소비자 권익 침해의 규제

조문 요지

제10조는 두 가지 행위를 겨눈다. 빅데이터 바가지(大数据杀熟)와 유명인 사칭 판매(仿冒名人带货)다.

앞의 것은 알고리즘 가격 차별이다. 원문은 「针对同一商品或者服务，经营者利用算法在交易价格等交易条件上实行不合理的差别待遇，侵害他人合法权益造成损害的，人民法院应当依法认定其承担相应的侵权责任」이라고 적는다.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인데 경영자가 알고리즘을 써서 거래가격 같은 거래조건에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고 손해가 생기면 침해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원문은 불합리한 차별대우인지 가리는 기준을 세 유형로 적는다. 첫째, 차별대우가 소비자의 알권리, 자주선택권, 공평거래권에 실질적인 제한이나 손해를 주었는지다. 둘째, 「消费者的消费偏好、支付意愿、支付能力、浏览记录等信息」에 기대어 그 사람만을 겨냥한 거래조건을 만들었는지다. 소비 성향, 지불 의사, 지불 능력, 열람 기록이 여기에 들어간다. 셋째, 성실신용 원칙과 상업 윤리에 어긋나는지다. 이 세 유형를 놓고 차별대우의 이유가 「正当、充分、非歧视」인지를 종합해 판단한다.

뒤의 것은 유명인 사칭 판매다. 원문은 「利用人工智能实施"仿冒名人带货"且构成欺诈」인 경우를 정한다. 이때 소비자가 소비자권익보호법(消费者权益保护法) 제55조에 따라 징벌적 배상을 주장하면 법원이 지지한다.

배경과 문제 상황

답기자문(答记者问)은 두 현상을 나란히 든다. 「AI算法引发的"大数据杀熟"屡被曝光」이라고 적는다. 알고리즘이 부른 빅데이터 바가지(大数据杀熟)가 거듭 드러났다는 뜻이다. 사칭 판매도 관심이 크다고 밝힌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태도를 정리한다. 「我们不能奢求消费者都"火眼金睛"」다. 소비자 모두가 꿰뚫어 보는 눈을 갖추기를 바랄 수는 없다는 뜻이다. 판별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문제 상황은 생활 가까이에 있다. 같은 시각에 같은 숙소를 검색해도 사람마다 값이 다르게 나온다. 자주 사는 사람에게 값이 더 높게 뜨기도 한다. 소비자는 비교할 화면을 갖지 못하므로 차별이 있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사칭 판매는 얼굴과 목소리를 바꿔 만든다. 잘 아는 배우가 화면에서 건강식품을 권한다. 그 배우는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없다. 시청자는 사람을 믿고 물건을 산다.

두 행위는 겉모습이 다르지만 뿌리가 같다. 알고리즘이 소비자보다 소비자를 더 잘 알게 된 상황이다. 앞의 것은 그 지식을 값에 쓰고, 뒤의 것은 그 지식을 믿음에 쓴다. 제10조가 두 행위를 한 조에 묶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요건과 효과

가격 차별 쪽 요건은 넷이다. 첫째,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일 것. 둘째, 경영자가 알고리즘을 써서 거래조건에 차별을 둘 것. 원문은 「交易价格等交易条件」이라고 적으므로 값만이 아니라 할인, 배송 조건, 결제 조건도 들어간다. 셋째, 그 차별이 불합리할 것. 넷째, 타인의 합법 권익을 해쳐 손해가 생길 것.

효과는 침해책임이다. 원문은 징벌적 배상을 가격 차별에 붙이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모든 가격 차이가 금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문은 「不合理的差别待遇」라고 적는다. 신규 가입자 할인, 대량 구매 할인, 기간 한정 행사처럼 이유가 정당

하고 충분하며 차별적이지 않은 가격 차이는 남는다. 개인의 지불 능력과 열람 기록을 읽어 그 사람에게만 값을 올리는 방식이 문제가 된다.

사칭 판매 쪽 요건은 셋이다.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일 것, 인공지능으로 유명인을 사칭해 판매할 것, 그 행위가 기망(欺诈)을 이룰 것이다. 효과는 소비자권익보호법(消费者权益保护法) 제55조의 징벌적 배상이다. 자료로 확인되는 제55조의 내용은 경영자의 기망 행위에 구매 대금의 세 배를 배상하고 최저 500위안을 보장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고, 개인 맞춤형 마케팅에서 거부 수단을 주도록 정한다. 다만 원문 제10조는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 의견은 서두의 근거 법령 목록에 개인정보보호법을 넣었고, 제2조에서 「依法保障个人在自动化决策中的知情权和选择权」을 원칙으로 적었다. 제10조는 그 원칙을 소비 현장에서 풀어낸 조항으로 읽는 편이 원문에 맞다.

실무 포인트

플랫폼은 가격 결정 규칙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어떤 변수가 값을 움직이는지, 그 변수가 개인의 지불 능력이나 열람 기록인지를 스스로 점검한다. 소송에서 정당성을 설명할 사람은 사업자다.

플랫폼은 할인 정책의 근거를 문서로 갖춰야 한다. 신규 가입자 할인처럼 이유가 뚜렷한 정책은 근거가 남아 있어야 방어가 된다.

판매 사업자는 광고에 쓰는 인물 영상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초상과 음성 사용에 관한 계약서가 없으면 제4조의 인격권 침해와 제10조의 기망이 함께 문제된다.

소비자는 화면을 남겨야 한다. 같은 시각, 다른 계정, 다른 기기에서 같은 상품의 값을 비교한 기록이 증거가 된다.

유명인 쪽은 두 유형로 대응할 수 있다. 제4조와 제8조로 초상권과 음성권익을 지키고, 소비자는 제10조로 배상을 구한다.

플랫폼은 입점 판매자의 광고 영상을 걸러 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가 들어간 영상에 사용 권한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이 그 예다. 판매를 중개한 쪽도 기망에 가담했는지를 놓고 다투게 된다.

한국과의 비교

한국은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으로 기만적 표시와 광고를 규제한다. 유명인을 사칭한 판매 영상은 거짓 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한국은 소비자 계약 일반에 3배 배상을 붙이지 않는다. 중국은 소비자권익보호법(消费者权益保护法) 제55조에 기망 시 3배 배상을 두고 있다. 소비자가 스스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크기에서 차이가 난다.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도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두고 있다. 다만 한국에는 알고리즘 가격 차별을 정면으로 다룬 재판 규칙 문서가 없다. 중국은 이번 의견으로 판단 요소를 문서에 적어 두었다.

한국은 딥페이크 광고에 대해 인격권과 광고 규제, 형사 처벌을 나누어 대응한다. 중국 제10조는 소비자 구제라는 한 통로에 징벌적 배상을 얹었다.

남은 쟁점

원문은 입증책임의 배분을 정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알고리즘의 내부 규칙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사업자가 정당성을 설명해야 하는 범위가 조문에 없다.

원문은 손해액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값의 차액이 손해액인지, 다른 계산이 필요한지가 남는다.

원문은 알고리즘 공개 의무를 만들지 않는다. 제17조의 증거 조사 규정으로 풀어야 한다.

원문은 사칭 판매에서 기망의 판단 기준을 따로 적지 않는다. 합성 표시를 붙인 광고가 기망을 벗어나는지가 다음 과제로 남는다.

10. 제11조 (十一) 자율주행(自动驾驶)과 보조주행(辅助驾驶) 사고의 배상책임

조문 요지

제11조는 자율주행(自动驾驶) 자동차(自动驾驶汽车)와 보조주행(辅助驾驶) 기능을 갖춘 자동차(具备辅助驾驶功能汽车)의 교통사고 배상책임을 다섯 유형로 정한다.

첫째는 기본 규칙이다. 원문은 「上道路行驶，发生交通事故造成损害的，依据民法典和道路交通安全法有关规定承担赔偿责任」이라고 적는다. 이런 차가 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내면 민법전과 도로교통안전법(道路交通安全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새로운 책임 유형을 만들지 않고 기존 교통사고 책임 체계를 그대로 쓴다.

둘째는 제품결함 사고다. 「因车辆存在产品缺陷导致交通事故造成损害」인 경우, 당사자가 민법전 제7편 제4장에 따라 생산자나 판매자의 배상책임을 청구하면 법원이 지지한다. 민법전 제7편 제4장이 제품책임(产品责任)을 정한 부분이다.

셋째는 결함과 과실이 겹치는 경우다. 「具备辅助驾驶功能的汽车因车辆缺陷与驾驶人的过错行为结合导致同一损害」일 때, 당사자가 민법전 제1172조 등에 따라 운전자와 차량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 함께 배상책임을 청구하면 법원이 지지한다.

넷째는 허위 선전이다. 생산자와 판매자가 「自动化等级、智能程度、性能、用途」에 대해 허위이거나 오해를 부르는 선전을 해 소비자의 합법 권익을 해치면, 소비자가 민법전과 소비자권익보호법(消费者权益保护法)에 따라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섯째는 데이터다. 「为查明道路交通事故发生原因，人民法院可以要求车辆生产者、销售者或者运营者等数据控制方，在必要范围内提供真实、完整的自动驾驶、辅助驾驶事件记录等查明案件事实所需要的数据」라고 적는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법원이 데이터 통제 측에 필요한 범위에서 진실하고 완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배경과 문제 상황

보조주행(辅助驾驶) 기능을 켠 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늘고 있다. 운전자는 시스템을 믿었다고 말하고, 제조사는 손을 떼지 말라고 안내했다고 말한다.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어 보이기에 책임의 몫을 나누기가 어렵다.

문제를 키우는 것은 자료의 위치다. 사고 순간에 시스템이 무엇을 감지했고 운전자가 언제 손을 뗐는지는 차량과 회사 서버에 기록으로 남는다. 그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쪽은 피해자가 아니라 제조사다. 제11조의 마지막 문장은 이 불균형을 겨눈다.

선전 문구도 사고의 배경이 된다. 「자율주행(自动驾驶)」이라는 말을 앞세워 팔면서 설명서에는 보조 기능이라고 적는 판매 방식이 그렇다. 넷째 유형는 이 지점을 붙잡는

다.

말의 혼란은 판매 현장에서 시작된다. 광고는 손을 놓아도 된다는 인상을 주고, 계약서는 운전자가 늘 지켜보아야 한다고 적는다. 소비자는 두 문장 가운데 앞의 것을 기억한다. 사고가 나면 이 차이가 그대로 다툼이 된다.

요건과 효과

기본 규칙의 효과는 기존 법의 적용이다. 민법전의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과 도로교통안전법(道路交通安全法)이 그대로 작동한다.

제품결함 경로의 요건은 차량에 제품결함이 있을 것과 그 결함이 사고와 손해를 부를 것이다. 효과는 생산자나 판매자의 제품책임(产品责任)이다. 결함 판단에는 제9조의 다섯 가지 요소가 이어진다.

결함과 과실이 겹치는 경우가 이 조에서 제일 다루기 어려운 대목이다. 원문은 세 가지를 조건으로 적는다. 대상이 보조주행(辅助驾驶) 기능을 갖춘 자동차일 것, 차량 결함과 운전자의 과실 행위가 결합할 것, 하나의 같은 손해를 부를 것이다. 이때 피해자는 운전자와 생산자 또는 판매자를 함께 상대로 삼을 수 있다.

여기서 근거로 든 민법전 제1172조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이 조문은 두 사람 이상이 각각 침해행위를 해 같은 손해를 낸 경우를 다룬다. 책임의 크기를 정할 수 있으면 각자 그만큼 지고, 정하기 어려우면 균등하게 나눈다. 연대책임(连带责任)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몫을 나누는 조문이다.

언론과 해설에서는 이 구조를 인기공담(人机共担)이라고 부른다. 사람과 기계가 함께 책임을 진다는 뜻의 표현이다. 이 말은 원문에 없다. 원문은 인기공담(人机共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민법전 제1172조를 든다. 두 표현을 섞어 쓰면 연대책임으로 오해하기 쉬우므로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원문은 자율주행(自动驾驶) 등급을 나누지 않는다. 3단계 이상이라는 기준선도 조문에 없다. 원문이 나눈 것은 자율주행(自动驾驶) 자동차와 보조주행(辅助驾驶) 기능을 갖춘 자동차라는 두 이름뿐이다. 결함과 과실이 겹치는 셋째 유형는 보조주행(辅助驾驶) 기능 차량에 대해 적는다.

허위 선전 경로의 효과는 민법전과 소비자권익보호법(消费者权益保护法)에 따른 민사책임이다.

데이터 경로에서 원문의 표현은 「自动驾驶、辅助驾驶事件记录」이다. 자율주행(自动驾驶)과 보조주행(辅助驾驶)의 사건 기록을 뜻한다. 원문에 EDR이라는 약칭은 나오지 않는다. 사고기록장치를 특정해 부르는 말도 없다. 제출 대상은 「事件记录等查明案件事实所需要的数据」이므로 사건 기록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제출 주체는 생산자, 판매자, 운영자 등 데이터 통제 측이다. 범위 제한은 「必要范围内」다.

실무 포인트

피해자와 대리인은 사고 직후에 데이터 보전을 신청해야 한다. 차량과 서버의 기록은 덮어쓰기로 사라질 수 있다. 제17조는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제때 심사하도록 정한다.

제출을 거부당했을 때의 수단도 제17조에 있다. 원문 제17조는 서증과 전자 데이터를 통제하는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그 증거의 내용이 통제자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정한다. 제11조와 제17조를 함께 써야 데이터가 나온다.

제조사는 기록 항목과 보존 기간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무엇을 얼마나 남기는지가 사후에 다투어진다.

제조사와 판매점은 광고와 설명서의 표현을 맞추어야 한다. 자동화 등급과 성능을 부풀린 문구는 넷째 유형에 바로 걸린다. 대리점 직원의 구두 설명도 선전에 들어간다.

운전자는 보조주행(辅助驾驶) 기능을 켰다고 해서 주시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원문 제20조는 「行为人激活辅助驾驶功能后利用私自安装的配件逃避辅助驾驶系统监测导致道路交通事故」가 범죄를 이루면 형사책임을 묻는다고 정한다. 감지 회피 부품을 쓴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최고인민법원의 지도성 사례(指导性案例)로 보도되었다.

보험 실무는 구상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 운전자 쪽 보험이 배상한 뒤 제조사에게 결함 몫을 구상하는 사건이 늘어난다.

운수 사업자는 계약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 차량을 빌려 쓰는 구조에서 데이터 통제 측이 누구인지가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한다. 원문은 운영자를 데이터 제출 주체에 넣었으므로 이 지정이 사후에 문제된다.

한국과의 비교

한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운행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운다. 피해자는 운행자를 상대로 먼저 배상을 받고, 결함 문제는 그 뒤에 다투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의 제11조는 피해자가 운전자와 제조사를 처음부터 함께 상대로 삼는 길을 확인한다.

한국도 제조물 책임법으로 차량 결함 사고를 다룬다. 이 점은 중국의 제품책임(产品责任) 경로와 같다.

한국은 자율주행(自动驾驶) 자동차의 상용화와 지원을 위한 법률과 자동차관리법으로 안전기준과 기록 장치를 규율한다. 다만 사고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에게 기록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재판 규칙 문서에 적어 둔 형태는 아니다. 중국은 이번 의견에 그 문장을 넣었다.

한국은 자율주행(自动驾驶) 등급을 행정 기준에서 나누어 쓴다. 중국의 이번 의견은 등급을 조문에 넣지 않았다.

남은 쟁점

원문은 자율주행(自动驾驶) 자동차와 보조주행(辅助驾驶) 기능 차량을 가르는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이름만 나뉘어 있고 판단 기준이 없다.

원문은 결함과 과실이 겹칠 때의 분담 비율 기준을 세우지 않는다. 민법전 제1172조로 넘길 뿐이다.

원문은 데이터 제출을 거부한 데이터 통제 측에 대한 제재를 제11조에 적지 않는다. 효과는 제17조에서 찾아야 한다.

원문은 영업비밀과 데이터 제출이 부딪칠 때의 처리를 정하지 않는다. 「必要范围内」라는 한 마디가 그 몫을 맡는다.

원문은 운영자(运营者)의 배상책임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운영자는 데이터 제출 주체로만 나온다.

11. 장 정리

제2장은 제3조에서 제11조까지 아홉 개 조로 인공지능 침해 사건의 민사책임을 짠다. 제3조는 뼈대다. 법률이 무과실책임이나 과실추정책임을 정하지 않았으면 민법전 제1165조 제1항의 과실책임 원칙으로 간다. 기술이 자라는 초기에 무거운 책임을 씌우지 않겠다는 선택이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조항이다. 제4조는 얼굴과 목소리의 무단 합성, 고인의 가상 형상 제작을 인격권 침해로 본다. 제5조는 인공지능을 쓴 신상 캐기와 사생활 침해를 다룬다. 제6조는 모델 학습에서 합법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합리적 범위에서 쓰고 본인이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았으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아니라고 정한다.

제7조와 제8조는 구제의 속도를 다룬다. 제7조는 통지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지운다. 제8조는 인격권 침해 금지령(人格权侵害禁令)으로 확산을 미리 끊는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책임의 종류를 나눈다. 제9조는 제품책임(产品责任)을 실물을 그릇으로 삼는 인공지능 제품에 한정한다. 제10조는 알고리즘 가격 차별과 유명인 사칭 판매를 소비자 보호로 잡고 징벌적 배상을 붙인다. 제11조는 자율주행(自动驾驶)과 보조주행(辅助驾驶) 사고를 기존 교통사고 책임과 제품책임(产品责任)에 이어 붙이고, 법원이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아홉 개 조를 관통하는 축은 두 개다. 하나는 통제할 수 있었던 만큼 책임진다는 기준이다. 다른 하나는 새 책임 유형을 만들지 않고 민법전과 기존 법률로 푼다는 태도다.

03 CHAPTER

제3장. 인공지능 지식재산권 분쟁과 데이터 자산 규범 [제12조 ~ 제16조]

인공지능 생성 내용의 저작권 침해, 오픈소스 책임, 특허 발명자, 기술계약, 데이터 사용 규범

1. 장 개요

의견(意见)의 세 번째 부분은 「依法妥善审理涉人工智能知识产权纠纷案件，保障人工智能高质量发展和高水平安全」이다. 우리말로 옮기면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을 법에 따라 타당하게 심리하여, 인공지능의 높은 수준의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뜻이다. 이 부분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다섯 개 조로 짜여 있다.

다섯 개 조가 다루는 문제는 서로 다르다. 제12조는 인공지능이 만든 내용이 남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개발자와 제공자와 사용자가 각각 어떤 책임을 지는지 정한다. 제13조는 무상으로 공개된 오픈소스(开源)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의 책임을 어디까지 덜어 줄지 정한다. 제14조는 인공지능이 관련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발명자 자리에 누구를 적을 수 있는지 정한다. 제15조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계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위약 책임을 정한다. 제16조는 데이터와 데이터 집합을 어떤 법으로 보호할지 정한다.

기자회견 발표문은 이 다섯 조를 침해책임 인정, 오픈소스 법적 책임, 특허 수권(授权)과 확권(确权), 기술계약 이행, 데이터 사용 규범의 다섯 방면으로 소개한다. 그러면서 권리자 보호와 기술 산업 발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다.

이 부분에는 정하지 않고 남겨 둔 문제가 있다. 답기자문(答记者问)은 이를 분명히 밝힌다. 의견을 만들고 논증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생성 내용의 저작물성(可版权性), 그리고 허락 없이 남의 저작물로 대형모델을 학습시킨 행위의 성격, 이 두 가지에 대해 의견 차이가 컸다고 한다. 원문 표현은 「意见分歧很大，认识还有待进一步深化」이다. 그래서 의견은 이 두 문제에 대해 당분간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적었다. 발표문도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는 여백(留白)으로 남기는 유백(留白) 처리를 했다고 설명한다.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제3부분을 오해하지 않는다. 제12조는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이나 글이 저작물인지 정하지 않는다. 학습 데이터를 모으는 행위 자체가 침해인지도 정하지 않는다. 정한 것은 이미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누가 얼마만큼 책임지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누가 어떻게 증명하는지다. 남은 두 문제는 앞으로 재판 경험이 쌓인 뒤 적절한 방식으로 정하겠다는 것이 최고인민법원의 설명이다.

제3부분의 다섯 조는 성격이 서로 다르다. 제12조와 제16조는 침해와 제재를 다루고, 제13조와 제15조는 책임을 덜어 주는 쪽에 가깝다. 제14조는 권리를 주는 절차의 기준이다. 한 부분 안에 규제와 지원이 함께 들어 있는 셈이다. 발표문이 말한 균형은 이런 배치로 드러난다.

2. 제12조 (十二)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의 규제

조문 요지

제12조의 제목은 「依法规制涉人工智能侵害知识产权的行为」다. 인공지능이 만든 내용이 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를 다룬다. 조문은 법원이 여러 요소를 종합해 개발자와 제공자와 사용자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정하라고 한다. 원문이 든 요소는 「人工智能服务类型、行业特点、训练数据来源、各方参与度、采取的必要措施以及获利情况」이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유형, 업계의 특성, 학습 데이터의 출처, 각자의 참여 정도, 취한 필요 조치, 이익을 얻은 사정이다.

조문은 이어 증명에 관한 세 줄을 둔다. 개발자가 침해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면 법원은 자료 제출을 명한다. 권리자가 알고리즘 기술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 권리자가 관련 증거를 낸다. 사용자가 먼저 있던 작품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그와 실질적으로 비슷한 작품을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면 침해 책임을 진다.

마지막 문장은 경쟁 질서로 넘어간다. 인공지능을 써서 침해와 위조, 허위 선전, 조회수와 주문 부풀리기를 하면 그에 맞는 책임을 진다. 원문 표현은 「侵权假冒、虚假宣传、刷量刷单」이다.

배경과 문제 상황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과 글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다툼이 늘었다. 어떤 이용자가 유명 만화 주인공을 그려 달라고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원작과 거의 같은 그림을 내놓는 일이 생긴다. 이때 그림을 올린 이용자, 서비스를 운영한 회사, 모델을 만든 회사 가운데 누가 책임지는지가 문제였다.

지금까지 자주 나온 항변은 기계가 알아서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답기자문(答记者问)은 이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힌다. 원문은 「不能以被诉侵权内容系人工智能生成为由免除相关主体责任」이다. 침해로 지목된 내용이 인공지능의 생성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주체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 대신 책임 부담을 통제 능력, 주의의무와 맞추라고 한다. 원문 표현은 「责任承担与控制能力、注意义务相匹配」이다.

중국 법원은 이미 비슷한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2023년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사람이 프롬프트와 여러 매개변수를 넣고 여러 번 고쳐 만든 그림에 창작적 기여를 인정했다고 보도되었다. 2024년 광저우 인터넷 법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유명 특촬물 주인공과 같거나 비슷한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 낸 사건에서, 서비스 쪽이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했다고 보도되었다. 의견 제12조는 이런 재판 경험을 규칙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발표문은 이 부분을 만든 배경으로 국가 계획을 든다. 십오오(十五五) 계획 요강은 인공지능 생성물의 권리 귀속과 개발자, 경영자, 사용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는 규칙을 세우자고 적었다. 국무원이 낸 지식재산권 보호와 운용 계획도 인공지능 발전에 맞는 판권 제도를 손보자고 적었다. 제12조는 그 요구에 대한 법원 쪽의 응답이다.

요건과 효과

첫째, 책임을 나누는 기준은 여섯 가지 요소의 종합 판단이다. 서비스 유형, 업계 특성, 학습 데이터 출처, 각자의 참여 정도, 필요 조치, 이익 상황이다. 답기자문(答记者问)은 여기에 학습 데이터를 어느 쪽이 넣어 주었는지도 본다고 덧붙인다. 원문 표현은 「相关训练数据系由何方投喂」다.

둘째, 개발자 쪽의 자료 제출이다. 개발자가 불침해 항변을 하면 법원은 학습 데이터의 출처, 학습 과정 기록, 모델 운행 방식, 과학 이론상 근거 등을 내라고 명한다. 원문은 「应当责令其提供」이라고만 적는다. 조문에는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말이 없다. 举证

责任倒置 같은 표현도 쓰지 않는다. 시중 요약이 말하는 입증책임 전환은 조문의 문구가 아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항변하는 개발자에게 뒷받침 자료를 내게 하는 것이다. 답기자문(答记者问)은 이를 거증 규칙(举证规则)이라 부르며, 권리자가 먼저 초보적 사실을 증명한다고 설명한다. 침해 내용이 그 인공지능에서 나왔다는 사실과 권리 작품과 실질적으로 비슷하다는 사실이다.

셋째, 권리자 쪽의 증거다. 권리자가 제공자의 알고리즘 기술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 관련 증거를 내야 한다.

넷째, 사용자의 책임이다. 요건은 세 가지다. 먼저 있던 작품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 그와 실질적으로 비슷한 작품을 인공지능으로 만들었을 것, 합리적 항변 사유가 없을 것이다. 세 요건이 갖춰지면 법원은 권리자의 침해 책임 청구를 지지한다.

다섯째, 경쟁 질서 위반이다. 인공지능으로 침해와 위조, 허위 선전, 조회수와 주문 부풀리기를 하면 책임을 진다. 답기자문(答记者问)은 인공지능이 만든 글과 영상과 가상 인물로 유입량과 좋은 평가를 꾸며 내는 행위, 얼굴 바꾸기 기술로 과학 설명 영상을 꾸며 내는 행위를 예로 든다. 이런 행위는 남의 권리를 해칠 뿐 아니라 소비자를 잘못 이끌고 시장 질서를 흔든다는 것이 답기자문(答记者问)의 설명이다. 그래서 위조 침해나 허위 선전으로 인정하라고 한다.

실무 포인트

개발 기업은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조문이 요구하는 자료가 출처, 과정 기록, 운행 방식, 이론 근거이기 때문이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 이를 만들 수는 없다. 데이터 구매 계약, 크롤링 대상과 범위, 필터링 규칙, 모델 버전별 학습 기록을 평소에 보관해야 한다.

서비스 기업은 필요 조치를 미리 갖춰야 한다. 유명 캐릭터와 상표를 걸러 내는 필터, 권리자 신고 창구, 생성 차단 기록이 여기에 든다. 조문이 이익 상황을 요소로 들었으므로, 침해 생성물로 얻은 수익 구조도 검토 대상이 된다.

이용자와 광고 대행사는 실질적 유사성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요건 때문에, 유명 작품을 지목해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고 지시한 기록은 불리한 증거가 된다. 프롬프트 기록은 그대로 남는다.

계약 담당자는 책임 분담 조항을 다시 살펴야 한다. 조문이 각자의 참여 정도를 요소로 들었으므로, 모델 공급 계약과 서비스 이용 계약에서 누가 데이터를 넣고 누가 결과를 골랐는지가 계약서에 드러나야 한다. 학습 데이터를 발주자가 제공했는지 개발사가 모았는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진다.

한국과의 비교

한국 저작권법에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이 아직 없다. 도입 논의는 이어졌지만 2026년 9월 현재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학습 행위의 적법성은 공정이용 조항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한국은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물성에 대해서도 인간의 창작적 개입을 요구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안내서를 내어, 사람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순수 인공지능 산출물은 등록을 받아 주지 않는다는 태도를 밝혔다.

책임 분배 방식은 두 나라가 다르다. 중국 의견은 요소 목록을 조문에 적어 법원의 판단 순서를 미리 보여 준다. 한국은 저작권법의 침해 요건과 민법의 공동불법행위 법리로 사건마다 따진다. 개발자에게 학습 자료를 내라고 명하는 규칙도 한국 법에는 조문 형태로 없다.

경쟁법 쪽 처리도 다르다. 중국은 인공지능을 쓴 위조와 허위 선전과 조회수 조작을 제12조 마지막 문장에 함께 담았다. 한국에서는 같은 행위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법으로 나누어 다룬다.

남은 쟁점

답기자문(答记者问)이 밝힌 두 가지 여백(留白)이 그대로 남는다. 인공지능 생성 내용이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허락 없이 남의 저작물로 모델을 학습시킨 행위를 어떻게 볼지다. 이 두 문제는 규정하지 않았다.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것도 있다. 법원이 자료 제출 명령을 내렸는데 개발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12조는 적지 않는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학습 자료를 어떤 절차로 보호하며 낼지도 제12조에는 없다. 이 문제는 제4부분의 증거 규칙에서 다시 다뤄진다.

3. 제13조 (十三) 오픈소스(开源) 소프트웨어 관계자의 법적 책임

조문 요지

제13조의 제목은 「依法合理认定涉人工智能开源软件相关方的法律责任」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과 제공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 개발하거나 제공한 사람의 침해 책임을 어떻게 정할지 다룬다.

조문은 네 가지 요소를 종합하라고 한다. 원문은 「开源许可协议类型、权利限制的具体内容、安全合规举措和信息披露程度」이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협약의 유형, 권리 제한의 구체적 내용, 안전과 규정 준수를 위한 조치, 정보 공개의 정도다. 이를 종합해 개발자와 제공자에게 적절한 책임 면제를 주라고 한다. 원문 표현은 「适当的责任豁免」이다.

뒷문장은 면책이 인정되는 전형을 든다. 무상 오픈소스 방식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필요한 일부 코드 모듈을 제공하고, 그 기능과 안전 위험을 공개적으로 설명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코드 모듈을 써서 침해를 일으킨 경우다. 이때 법원은 오픈소스 개발자와 제공자가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있다.

배경과 문제 상황

인공지능 개발은 남이 공개한 코드 위에서 이뤄진다. 학습 프레임워크, 모델 가중치, 데이터 처리 도구가 무상으로 공개되어 있다. 한 사람이 취미로 올린 코드 조각이 수천 개 회사의 제품 안에 들어간다.

여기서 걱정이 생긴다. 그 코드를 가져다 쓴 회사가 사고를 냈을 때, 코드를 공개한 사람까지 함께 책임을 지게 되면 아무도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다. 무상으로 준 사람에게 유상 공급자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도 균형에 맞지 않는다. 제13조는 이 걱정에 답한다.

발표문은 오픈소스 관련 법적 책임을 이번 의견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로 든다. 현행 법률을 충분히 쓰는 원칙 아래 개발자와 제공자와 사용자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나눈다는 것이다. 총칙에 해당하는 제2조도 같은 방향을 적는다. 통용 모델과 전용 모델, 오픈소스 모델과 폐쇄소스 모델은 기술 원리와 위험 확산과 통제 능력이 다르므로 책임을 다르게 나누라고 한다. 원문은 「区分通用与专用、开源与闭源等不同类型大模型」

이다. 제13조는 이 원칙을 오픈소스 쪽에서 구체화한 조문이다.

요건과 효과

책임 면제를 받으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 첫째, 무상 오픈소스 방식으로 제공했을 것이다. 원문은 「以免费开源的方式」다. 둘째, 제공한 것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필요한 일부 코드 모듈일 것이다.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 부품에 해당한다. 셋째, 그 기능과 안전 위험을 공개적으로 설명했을 것이다. 원문은 「公开说明其功能和安全风险」이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고 남이 그 코드를 써서 침해를 일으켰다면, 법원은 오픈소스 개발자와 제공자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있다. 조문은 「可以认定」이라고 적는다. 반드시 그렇게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의 네 요소를 종합한 판단이 함께 작동한다.

라이선스 유형이 요소에 들어간 점이 중요하다. 어떤 라이선스는 이용자에게 소스 공개 의무를 지우고, 어떤 라이선스는 그런 의무 없이 이용을 허락한다. 권리 제한의 구체적 내용도 함께 본다. 안전과 규정 준수 조치, 정보 공개 정도는 개발자가 성실했는지를 재는 기준이 된다.

책임 면제의 크기도 사건마다 다르다. 조문은 적절한 책임 면제라고만 적는다. 전부 면제와 일부 면제 가운데 무엇을 줄지는 네 요소를 종합한 결과에 달려 있다. 뒷문장이 든 전형에 들어맞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있다.

실무 포인트

코드를 공개하는 쪽은 위험 고지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저장소의 안내 문서에 기능 설명과 함께 알려진 한계, 안전 위험, 권장하지 않는 사용 방식을 적어 두는 일이 면책의 요건과 직접 연결된다. 라이선스 파일을 빼놓지 않는 것도 같다.

코드를 가져다 쓰는 쪽은 반대다. 오픈소스 개발자의 책임이 덜어지면 그만큼 자기 책임이 커진다. 어떤 모듈을 어느 버전으로 썼는지 목록을 만들고, 라이선스 의무를 지켰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개된 위험 고지를 읽지 않았다는 사정은 방어가 되지 않는다.

기업 법무는 사내 오픈소스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 조문이 정보 공개 정도를 요소로 들었으므로, 회사가 공개하는 모델과 코드에 어떤 설명을 붙이는지가 나중에 책임 범위를

가른다.

법원 쪽에서는 라이선스 문서를 읽는 일이 사건의 출발점이 된다. 조문이 협약 유형과 권리 제한의 구체적 내용을 첫 두 요소로 들었기 때문이다. 라이선스가 영문으로 되어 있고 판본이 여럿인 경우가 많아, 번역과 판본 확인이 사실 인정의 앞자리에 놓인다.

한국과의 비교

한국에는 오픈소스 개발자의 책임을 덜어 주는 법률 조문이 없다. 면책은 라이선스에 적힌 보증 배제 조항과 민법의 일반 원칙으로 다뤄진다. 무상으로 준 사람의 책임을 줄이는 민법의 사고방식은 있지만, 소프트웨어를 두고 이를 정면으로 정한 규정은 없다.

중국 의견은 오픈소스라는 개발 방식 자체를 사법 판단의 요소로 끌어올렸다. 라이선스 유형과 위험 고지 정도가 책임 판단에 들어간다고 조문에 적었다. 한국에서는 같은 사정을 다투려면 계약 해석과 과실 판단을 통해 주장해야 한다.

남은 쟁점

무상이라는 요건의 경계가 남는다. 오픈소스로 공개하면서 상용 라이선스를 따로 파는 방식, 기업 후원을 받아 유지하는 방식이 무상에 해당하는지 조문은 정하지 않는다.

일부 코드 모듈이라는 표현의 범위도 남는다. 학습을 마친 모델 가중치를 통째로 공개한 경우가 일부 코드 모듈에 드는지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안전 위험을 어느 정도로 설명해야 공개적 설명으로 인정되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

4. 제14조 (十四) 인공지능 관련 발명창조의 특허 수권(授权)과 확권(确权)

조문 요지

제14조의 제목은 「依法规范涉人工智能发明创造的专利授权确权行为」다. 수권(授权)은 특허를 주는 절차이고, 확권(确权)은 이미 준 특허가 유효한지 확정하는 절차다.

조문은 세 가지를 정한다. 첫째, 특허로 보호받는 객체의 요건이다. 원문은 「采用遵循自然规律的技术手段，解决了技术问题，实现了符合自然规律的技术效果」이다. 자연법칙을 따르는 기술 수단을 쓰고, 기술 문제를 해결하며, 자연법칙에 맞는 기술

효과를 냈다면 특허법이 보호하는 객체로 인정한다. 다만 예외가 있다. 법률과 사회 공중도덕을 어기거나 사회 공공이익을 해치는 경우, 그리고 자연인의 실질적 기여가 없는 경우다.

둘째, 발명자를 정하는 기준이다. 원문은 「自然人使用人工智能完成的发明创造，该自然人对发明创造的实质性特点作出了创造性贡献的，应当认定该自然人为发明人」이다. 자연인이 인공지능을 써서 완성한 발명창조에서, 그 자연인이 발명의 실질적 특징에 창조적 기여를 했다면 그를 발명자로 인정한다.

셋째, 공개의 충분성이다. 명세서의 기술 방안 서술이 그 분야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실현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면 공개 충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배경과 문제 상황

인공지능은 이제 신약 후보 물질과 재료 조성을 찾아내는 데 쓰인다. 연구자는 모델이 내놓은 결과를 골라 실험으로 확인하고 특허를 낸다. 이때 두 가지 물음이 생긴다. 이 발명이 특허를 받을 대상인가, 발명자 자리에 누구를 적는가다.

앞의 물음은 인공지능 관련 발명이 알고리즘이나 수학 방법에 가까워 보인다는 데서 나온다. 뒤의 물음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제 다툼이 되었다. 다부스(DABUS)라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적어 여러 나라에 낸 출원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14조는 두 물음에 조문으로 답한다.

발표문도 인공지능 관련 발명창조의 특허 적격을 이번 의견이 밝힌 항목으로 든다. 중국에는 인공지능만을 겨냥한 단일 법률이 아직 없다. 그래서 의견은 현행 특허법의 틀 안에서 판단 기준을 정리하는 길을 골랐다.

요건과 효과

특허 객체 인정의 요건은 세 가지다. 자연법칙을 따르는 기술 수단, 기술 문제의 해결, 자연법칙에 맞는 기술 효과다. 이 셋이 갖춰지면 법원은 특허법이 보호하는 객체로 인정한다. 인공지능이 관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객체에서 빼지 않는다는 뜻이다.

배제 사유는 두 유형다. 하나는 법률과 사회 공중도덕 위반, 사회 공공이익 침해다. 다른 하나는 자연인의 실질적 기여가 없는 경우다. 원문은 「自然人没有实质贡献的除外」라고만 적는다. 사람의 기여가 없는 발명은 아예 보호 객체에서 빠진다.

발명자 인정의 요건은 두 가지다. 자연인이 인공지능을 도구로 써서 발명을 완성했을 것, 그 자연인이 발명의 실질적 특징에 창조적 기여를 했을 것이다. 조문은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한다고 정한다.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적을 자리는 조문에 없다. 프롬프트를 넣기만 하고 실질적 특징에 창조적 기여를 하지 못한 사람도 발명자가 되지 못한다.

공개 충분성의 기준은 통상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는 정도다. 학습에 쓴 데이터 전부나 모델 가중치 전부를 명세서에 적어야 한다고 조문은 요구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명세서가 학습 과정의 불투명성 때문에 공개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주장을 막는 구실을 한다.

실무 포인트

출원 실무에서는 명세서에 기술 문제와 기술 효과를 뚜렷이 적어야 한다. 조문이 기술 문제 해결과 자연법칙에 맞는 기술 효과를 요건으로 들었기 때문이다. 알고리즘 자체의 설명에 머물면 객체 요건에서 다툼이 생긴다.

연구 관리에서는 사람의 기여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실험 노트, 설계 변경 이력, 후보 선별 기준을 남기면 실질적 특징에 대한 창조적 기여를 증명하기 쉽다. 인공지능이 내놓은 후보 가운데 무엇을 왜 골랐는지가 핵심 자료가 된다.

기업은 발명자 결정 절차를 손봐야 한다. 사람의 기여가 없는 결과물은 특허 대신 영업비밀이나 데이터 권익으로 지키는 길을 검토하게 된다. 이 부분은 제16조와 이어진다.

분쟁 단계에서는 기술 사실을 밝힐 사람이 필요하다. 의견 제17조는 기술조사관(技术调查官)과 전문가 보조인(专家辅助人)의 역할을 충분히 살리라고 한다. 인공지능 관련 특허 사건에서도 같은 장치가 쓰인다.

한국과의 비교

한국 특허법도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본다.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적은 다부스 출원은 한국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점에서 두 나라의 결론은 같다.

차이는 규칙을 밝히는 방식에 있다. 중국은 사법문건의 조문에 자연인 기준과 창조적 기여 기준을 함께 적었다. 한국은 특허법 해석과 심사기준으로 같은 결론에 이른다.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객체 적격을 세 요건으로 정리해 사법문건에 적은 것도 한국에는 없는 방식이다.

공개 충분성의 기준은 두 나라가 비슷하다. 한국 특허법도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세서를 적으라고 한다. 중국 의견 제14조가 든 기준도 통상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는 정도다.

남은 쟁점

실질적 특징에 대한 창조적 기여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 조문은 정하지 않는다.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고르고 결과를 검증한 사람의 기여를 창조적 기여로 볼지는 앞으로의 재판이 정할 몫이다.

인공지능이 사실상 만들어 낸 발명의 권리 귀속도 남는다.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없으면 보호 객체에서 빠진다고만 정했으므로, 그 결과물을 누가 어떤 권리로 지키는지는 조문 밖의 문제다.

5. 제15조 (十五) 인공지능 기술계약 이행의 위약 책임

조문 요지

제15조의 제목은 「依法审慎认定涉人工智能技术合同履行的违约责任」이다. 다섯 조 가운데 제일 짧다. 다루는 계약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양도, 허락, 자문, 서비스 계약이다.

조문은 세 가지를 판단 기준으로 든다. 계약의 약정,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의 특징, 기술 개발 쪽이 합리적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다. 원문은 「充分考量人工智能技术研发特点、技术开发方是否尽到合理努力等情形」이다. 이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해 위약 책임을 인정하라고 한다.

배경과 문제 상황

인공지능 개발 계약은 결과를 약속하기 어렵다. 같은 데이터와 같은 구조로 학습해도 성능이 목표에 못 미치는 일이 흔하다. 발주자는 정확도 수치를 계약서에 적고 싶어 하고, 개발사는 그 수치를 보장하기 어렵다.

분쟁은 여기서 생긴다. 목표 성능에 이르지 못한 것을 곧바로 채무불이행으로 볼지, 기술 개발의 성질상 어쩔 수 없는 실패로 볼지가 문제다. 제15조는 법원에 신중한 인정을 요구한다. 제목에 들어간 심신(审慎)이 그 뜻이다.

요건과 효과

첫째 기준은 계약의 약정이다. 조문은 「根据合同约定」을 앞에 둔다. 당사자가 정한 내용이 먼저다. 성능 지표와 검수 기준을 계약서에 적어 두었다면 그 약정이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둘째 기준은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의 특징이다. 결과의 불확실성, 데이터 품질에 따른 성능 변동, 반복 실험이 필요한 사정이 여기에 든다. 조문은 이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라고 한다.

셋째 기준은 합리적 노력이다. 개발 쪽이 약속한 결과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합리적 노력을 다했는지를 본다. 노력을 다했다면 위약 책임 인정에 신중하라는 것이 조문의 취지다.

조문은 어떤 경우에 면책된다고 적지 않는다. 요소를 고려해 법에 따라 위약 책임을 인정하라고만 한다. 면책 규정이 아니라 판단 태도에 관한 지침이다.

실무 포인트

발주자는 계약서에 검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조문이 계약 약정을 앞에 두었기 때문이다. 목표 성능, 측정 데이터셋, 측정 방법, 재시도 횟수, 미달 시 처리 방법을 적어 두면 다툼이 줄어든다.

개발사는 개발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합리적 노력을 다했다는 사실은 말로 증명되지 않는다. 실험 기록, 데이터 보강 이력, 구조 변경 시도, 발주자와 주고받은 협의 내용이 자료가 된다.

양쪽 모두 데이터 제공 책임을 계약서에 나눠 적어야 한다. 성능 미달의 원인이 데이터 품질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조문은 그 배분을 정하지 않는다.

분쟁이 생기면 다원적 분쟁 해결 경로도 함께 살펴야 한다. 의견 제21조는 인공지능 업계 주관 부처와 전문 조정 조직, 전문가와 함께 연동 협력 체계를 만들어 먼저 조정을 시도하라고 한다. 기술 내용이 복잡한 개발 계약 분쟁은 이런 경로가 맞을 때가 있다.

한국과의 비교

한국에서는 인공지능 개발 계약을 도급과 위임 가운데 어느 쪽으로 볼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도급으로 보면 일의 완성이 의무가 되고, 위임으로 보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처리할 의무가 중심이 된다. 이 구분은 계약 해석의 문제로 다뤄진다.

중국 의견은 계약 유형을 나누는 대신,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특징과 합리적 노력을 고려 요소로 조문에 적었다. 판단의 방향을 사법문건이 미리 밝힌 셈이다. 한국에는 인공지능 개발 계약을 겨냥한 이런 규정이 없다.

남은 쟁점

합리적 노력의 기준이 남는다. 무엇을 갖추면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는지 조문은 정하지 않는다. 업계 표준이 자리를 잡지 않은 분야에서는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

계약 유형별 차이도 남는다. 개발과 양도와 허락과 자문과 서비스는 성질이 다른데, 조문은 이를 한 문장으로 묶었다. 서비스 계약에서 모델 성능이 나중에 떨어진 경우를 어떻게 볼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

기술의 한계로 목표에 이르지 못한 경우와 개발 쪽의 잘못으로 이르지 못한 경우를 어떻게 가를지도 남는다. 조문은 두 경우를 나누는 기준을 적지 않는다.

6. 제16조 (十六)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사용 행위의 규범

조문 요지

제16조의 제목은 「依法规范涉人工智能数据使用行为」다. 데이터를 지키는 쪽과 데이터를 해치는 쪽을 함께 다룬다.

앞부분은 보호다. 개발자가 채집 생성, 파생 창조, 양수 취득, 허락 취득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합법하게 얻고 그에 맞는 데이터 권익을 누리면 법원이 보호한다. 원문은 「采集生成、衍生创造、受让取得、授权许可」다.

이어 세 유형 보호 경로를 적는다. 편집저작물(汇编作品)에 해당하거나 다른 저작물 성립 요건을 갖춘 데이터와 데이터 집합은 저작권법(著作权法)으로 보호한다. 영업비밀(商业秘密)에 해당하는 데이터와 데이터 집합은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으로 보호한다.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와 데이터 집합이라도, 문제된 행위가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제13조를 어겼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뒷부분은 제재다. 사업자가 데이터와 알고리즘 같은 기술 수단으로 독점 협의를 이루거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면 책임을 진다. 허위 간섭 데이터를 만들거나 악의로 데이터에 표시를 붙이거나 대항 샘플 공격 같은 기술 수단으로 인공지능의 운행 안전을 해치면 책임을 진다. 원문은 「虚构干扰数据、恶意标注数据、对抗样本攻击」이다.

배경과 문제 상황

대형모델의 성능은 데이터에서 나온다. 잘 정리된 데이터 집합을 만드는 데 큰 비용이 든다. 그런데 데이터 집합은 저작물이 아닌 경우가 많고, 비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영업비밀도 되지 못한다. 힘들여 만든 자산이 법의 빈틈에 놓인다.

반대 방향의 위험도 있다. 남의 모델을 망가뜨리려고 일부러 잘못된 데이터를 흘려 넣는 일이 생긴다. 이미지에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잡음을 넣어 모델의 판단을 뒤집는 공격도 있다. 제16조는 이 두 방향을 한 조문에 담았다.

경쟁 질서의 문제도 겹친다. 값을 정하는 일을 알고리즘에 맡기면, 사람이 만나 담합하지 않아도 값이 나란히 움직일 수 있다. 여러 사업자가 같은 가격 알고리즘을 쓰는 경우가 그렇다. 제16조 뒷부분은 이런 상황을 독점 협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문제로 다룬다.

요건과 효과

첫째, 데이터 권익의 보호다. 요건은 합법한 취득과 그에 따른 권익의 보유다. 취득 방식으로 네 가지가 열거되어 있다. 이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보호한다.

둘째, 세 유형 보호 경로다. 저작물 요건을 갖춘 데이터 집합은 저작권법으로 간다. 편집저작물이 대표적 예다. 비밀성과 가치성과 비밀 관리 조치를 갖춘 데이터는 영업비밀로 보호된다. 그 둘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라도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제13조 위반이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조문이 든 법령과 조문 번호는 이 세 가지다.

셋째, 경쟁법 위반이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독점 협의를 이루거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면 책임을 진다. 알고리즘으로 값을 맞추는 담합이 여기에 든다.

넷째, 운행 안전 침해다. 열거된 행위는 세 가지다. 허위 간섭 데이터를 지어내는 것, 악의로 데이터에 표시를 붙이는 것, 대항 샘플 공격이다. 이 행위로 인공지능의 운행 안전을 해치면 책임을 진다.

조문에 없는 것도 밝혀 둔다. 제16조에는 크롤링이나 爬取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무단 수집을 정면으로 정한 문장도 없다. 남의 데이터를 함부로 긁어 가는 행위는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제13조 위반 여부를 통해 다뤄지는 구조다. 시중 요약이 말하는 무단 크롤링 기소 기준은 조문의 문구가 아니다.

실무 포인트

데이터를 가진 쪽은 세 유형 경로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데이터 집합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면 편집저작물로 주장할 근거를 정리한다. 비밀로 지킬 데이터는 접근 권한과 비밀유지 계약과 표시 관리를 갖춰 영업비밀 요건을 채운다. 어느 쪽도 아닌 데이터는 취득 경로를 증명할 자료를 남긴다. 데이터의 선택과 배열 기준을 문서로 남기는 일은 편집저작물 주장의 바탕이 된다.

데이터를 쓰는 쪽은 취득 방식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조문이 든 네 가지 방식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계약서 없이 모은 데이터는 나중에 방어하기 어렵다.

운영 부서는 데이터 오염에 대비해야 한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의 검증 절차, 이상치 탐지 기록, 사고 발생 시의 로그 보존이 책임 추궁의 근거가 된다. 조문이 세 가지 공격 유형을 이름 지어 적었으므로, 피해자 쪽도 이를 주장할 근거를 얻는다.

데이터 집합을 사고파는 회사는 계약서에 권리 보증 조항을 넣어야 한다. 넘겨받은 데이터에 남의 저작물이나 개인정보가 섞여 있으면 양수 취득이라는 사정만으로 방어가 되지 않는다. 원자료의 출처 목록과 처리 이력을 함께 넘겨받는 편이 안전하다.

한국과의 비교

한국은 2021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고쳐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넣었다. 사업 목적으로 관리되는 데이터를 부정하게 얻거나 쓰는 행위를 막는 조항이다. 데이터를 경쟁법으로 지킨다는 발상은 두 나라가 비슷하다.

차이는 보호 경로를 정리한 방식에 있다. 중국 의견은 저작권법, 영업비밀,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제13조의 세 유형를 한 조문에 나란히 적었다. 법원이 어느 경로부터 따질지 미리 보여 준다. 한국에는 데이터 보호 경로를 이렇게 묶어 정리한 사법 문건이 없다.

데이터 오염과 대항 샘플 공격을 이름 지어 적은 것도 차이다. 한국에서 같은 행위를 다루려면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의 업무방해와 손괴 규정, 민법의 불법행위로 접근하게 된다.

남은 쟁점

데이터 권익의 성질이 남는다. 조문은 데이터 권익을 보호한다고 적을 뿐, 그것이 어떤 권리인지 정하지 않는다. 물권처럼 배타적인 권리인지, 경쟁법으로 보호되는 이익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합법한 취득의 범위도 남는다. 공개된 웹 페이지에서 모은 데이터가 합법한 취득에 드는지, 어디서부터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제13조 위반이 되는지 조문은 정하지 않는다. 학습에 쓸 목적의 수집이 저작권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제3부분 전체가 남겨 둔 여백(留白)에 걸려 있다.

알고리즘 담합의 인정 기준도 남는다. 사업자들이 같은 값 알고리즘을 쓴 사실만으로 독점 협의를 이룬 것으로 볼지, 서로 뜻을 맞춘 사정이 따로 있어야 하는지 조문은 정하지 않는다.

7. 장 정리

제3부분 다섯 조는 인공지능 산업의 권리와 책임을 재판 기준으로 정리한다. 제12조는 생성물 침해의 책임 분배와 자료 제출 규칙을 정한다. 제13조는 무상 오픈소스 기여자의 책임을 덜어 준다. 제14조는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허 객체 요건을 세우고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한정한다. 제15조는 기술계약 위약 책임을 신중하게 인정하라고 한다. 제16조는 데이터를 세 유형 경로로 보호하고 데이터 오염과 대항 샘플 공격을 제재 대상으로 삼는다. 다섯 조가 함께 놓이면서 개발과 공개와 거래와 보호가 한 묶음으로 다뤄진다.

다섯 조를 관통하는 태도는 두 가지다. 하나는 책임을 통제 능력과 주의의무에 맞추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개발과 공개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면책과 신중한 인정을 함께 두는 것이다.

그러나 제일 큰 두 문제는 그대로 남았다. 인공지능 생성물이 저작물인지, 허락 없는 학습이 침해인지다. 최고인민법원은 의견 차이가 커서 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여백(留白)이 채워질 때까지 실무는 제12조가 정한 책임 분배 규칙과 증거 규칙 위에서 움직이게 된다.

04 CHAPTER

제4장. 소송 절차 정비와 소송 내 AI 악용 통제 [제17조 ~ 제20조]

기술 사실 조사, 증거 심사, 허위소송(虚假诉讼)과 AI 환각(AI幻觉) 제재, 형사 처벌

1. 장 개요

의견(意见)의 네 번째 부분은 제목이 길다. 「完善涉人工智能纠纷案件审理程序规则，依法惩治利用生成式人工智能实施妨害司法秩序等违法犯罪行为」다.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다. 인공지능 관련 분쟁 사건의 심리 절차 규칙을 정비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써서 사법 질서를 방해하는 위법 행위와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네 개 조가 여기에 들어간다.

앞의 두 부분은 법정 밖의 일을 다룬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정한다. 제4부분은 법정 안의 일을 다룬다.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고 증거를 어떻게 볼지를 정한다.

기자회견 발표문은 이 부분을 두 유형로 설명한다. 한 유형는 절차 규칙이다. 인공지능 사건은 기술성과 전문성이 강하다. 그래서 사실 규명 규칙과 증거 심사 규칙을 새로 다듬는다. 다른 유형는 제재다. 인공지능으로 증거를 부당하게 만들거나 허위 자료를 내는 행위를 규제하고, 인공지능을 쓴 범죄를 처벌하는 원칙을 둔다.

네 개 조는 순서대로 이어진다. 제17조는 법원이 기술 사실을 어떻게 밝힐지를 정한다. 제18조는 그렇게 모인 증거를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지를 정한다. 제19조는 그 증거와 서면이 거짓일 때 소송법으로 어떻게 제재할지를 정한다. 제20조는 그 행위가 범죄가 될 때 형사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를 정한다. 사실 규명, 증거 심사, 소송법 제재, 형사 처벌의 네 단계다.

이 부분은 조문 수가 적고 문장도 짧다. 그러나 실무에서 먼저 부딪히는 곳은 여기다. 인공지능 사건의 승패는 기술 사실을 누가 밝히느냐에 달린다. 인공지능을 쓴 소송 준비는 이미 흔하다. 제19조가 정한 핵실(核实) 의무는 대리인의 일상 업무를 바꾼다.

의견은 새 절차법을 만들지 않는다. 근거로 삼는 법은 이미 있는 민사소송법이다. 의견 첫머리도 민법전, 네트워크안전법(网络安全法), 데이터안전법(数据安全法), 저작권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소비자권익보호법(消费者权益保护法), 개인정보보호법, 민사소송법을 근거로 든다. 발표문은 이 태도를 「用足用好现行法律规定」이라고 표현한다. 현행 법 규정을 충분히 쓴다는 뜻이다. 중국에는 아직 단일 인공지능법이 없다. 제4부분도 기존 조문을 인공지능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방식을 따른다.

2. 제17조 (十七) 기술 사실 조사와 전문 인력의 참여

조문 요지

제17조의 제목은 「依法准确查明涉人工智能纠纷案件事实」이다. 인공지능 관련 분쟁 사건의 사실을 법에 따라 정확히 밝힌다는 뜻이다. 조문은 인공지능 사건이 「技术性、专业性强」하다고 전제한다. 기술성과 전문성이 강하다는 뜻이다.

조문은 다섯 가지를 정한다. 첫째, 법원은 소송 지도와 석명을 강화한다. 당사자가 다투는 사실을 중심으로 제때 빠짐없이 입증하도록 이끈다. 둘째, 당사자가 객관적 이유로 스스로 모으지 못하는 증거는 법원에 조사·수집을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수집한다. 셋째, 핵심 기술을 고정하려는 증거보전 신청은 법원이 제때 심사한다. 넷째, 서증이나 전자 데이터를 가진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다섯째, 인공지능의 기술 원리와 작동 구조 같은 전문 문제에 대해서는 인민배심원, 감정인(鉴定人), 전문가 보조인(专家辅助人), 기술조사관(技术调查官)의 역할을 충분히 살린다.

배경과 문제 상황

인공지능 사건에서 자료는 한쪽에만 있다. 모델을 만든 쪽은 훈련 데이터와 학습 기록을 가지고 있다. 피해를 입었다는 쪽은 화면에 뜬 결과물만 가지고 있다. 다툼의 대상이 무엇인지조차 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自动驾驶) 자동차 사고를 생각해 보자. 사고 직전에 차가 무엇을 보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차량 기록에 남는다. 그 기록의 형식과 해석 방법은 제조사가 안다. 피해자는 기록을 읽을 수도 없고 그런 기록이 있는지도 모른다. 재판이 시작되어도 무엇을 달라고 해야 할지 모른다.

법관도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알고리즘이 왜 그런 값을 냈는지는 법률 지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법원 밖의 기술 지식을 법정 안으로 끌어들이는 통로가 필요하다.

의견은 다른 조문에서도 같은 문제를 다룬다. 제11조는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법원이 차량 생산자, 판매자, 운영자 같은 데이터 통제자에게 자율주행(自动驾驶)과 보조주행(辅助驾驶)의 사건 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2조는 인공지능 개발자가 침해가 아니라고 다투면 훈련 데이터의 출처와 훈련 과정 기록, 모델 운행 방식을 내놓게 하라고 정한다. 제17조는 이런 개별 규정을 절차의 일반 규칙으로 묶는다.

요건과 효과

조문이 든 수단은 성격이 서로 다르다.

감정인은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가 감정 의견을 낸다. 감정 결과는 증거가 된다.

전문가 보조인(专家辅助人)은 당사자가 신청해서 법정에 나오는 전문가다. 당사자 쪽에서 전문 문제를 설명하고 상대방 전문가와 다툰다. 당사자 사이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 장치다.

기술조사관(技术调查官)은 법원 소속이다. 법관을 도와 기술 쟁점을 정리한다. 중국에서는 지식재산권 재판에서 먼저 자리를 잡았다. 의견은 인공지능 분쟁 전반에서 이 제도를 쓰라고 정한다.

인민배심원은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조문은 이 넷을 나란히 든다.

소송 지도와 석명도 조문이 든 수단이다. 원문은 「加强诉讼引导和释明」이라고 정한다. 법관이 무엇을 다투는지 정리해 주고,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알려 준다는 뜻이다. 기술을 모르는 당사자는 무엇을 증명해야 할지부터 모른다. 석명은 그 출발점을 잡아 준다.

증거 조사·수집 신청도 있다. 당사자가 객관적 이유로 스스로 모을 수 없는 증거는 법원에 조사와 수집을 신청한다. 필요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나선다. 모델 안쪽의 자료는 상대방만 가지고 있다. 이 통로가 없으면 입증이 불가능해진다.

증거보전은 시간을 다투는 수단이다. 조문은 「当事人为固定关键技术申请证据保全的，人民法院应当及时依法审查」라고 정한다. 핵심 기술을 고정하려고 증거보전을 신청하면 법원이 제때 법에 따라 심사한다는 뜻이다. 제때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지연이 곧 증거의 소멸이기 때문이다.

증거 제출 거부의 효과는 명확하다. 원문은 「控制书证、电子数据等证据的当事人无正当理由拒不提交，对方当事人主张该证据的内容不利于控制人的，人民法院可以认定该主张成立」이라고 정한다. 증거를 가진 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으면, 그 증거가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상대방 주장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다. 강제로 빼앗는 방식이 아니라 내지 않은 쪽이 손해를 보게 하는 방식이다.

목차 초안은 이 조문을 두고 입증책임이 넘어간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원문은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원문은 법원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만 정한다. 인정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

실무 포인트

기업은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한다. 훈련 데이터의 출처, 학습 과정의 기록, 모델의 운행 방식은 소송에서 요구받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못하면 불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기록이 없어서 못 낸다는 사정도 위험하다.

당사자와 대리인은 증거보전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모델은 자주 갱신된다. 문제가 된 시점의 모델은 몇 달 뒤에 사라진다. 조문이 「为固定关键技术申请证据保全」을 따로 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원은 인력을 준비해야 한다. 기술조사관(技术调查官)과 감정 기관의 명부를 인공지능 분야까지 넓혀야 한다.

개인 당사자는 신청서를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고 왜 스스로 구할 수 없는지를 적는다. 막연히 모든 자료를 달라고 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한국과의 비교

한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 기술심리관은 법원조직법에 근거를 둔다. 특허법원 등에서 기술 쟁점을 다룬다. 전문심리위원은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이하에 있다. 법원이 지정해서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다. 감정도 민사소송법에 있다.

차이는 두 곳이다. 중국의 전문가 보조인(专家辅助人)은 당사자가 데려오는 전문가다. 한국의 전문심리위원은 법원이 지정한다. 당사자가 데려온 전문가의 설명은 한국에서 사실조회나 증인신문 같은 다른 방식으로 들어온다.

증거 제출 거부의 효과는 비슷하다. 한국 민사소송법 제349조는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 문서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한국은 법원의 제출명령을 앞세운다. 중국 조문은 명령 없이도 제출을 거부한 사실 자체에 효과를 붙인다.

남은 쟁점

조문은 기술조사관(技术调查官)을 어느 심급과 어느 사건에 배치할지 정하지 않는다. 인공지능 분야 감정 기준도 없다. 소스 코드를 대조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학습형 모델을 다루기 어렵다. 감정인이 모델의 영업비밀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같은 모델도 갱신을 거치면 다르게 움직인다. 어느 시점의 모델을 기준으로 감정할지도 문제가 된다. 전문가 보조인(专家辅助人)을 부르는 요건과 그 의견의 지위도 조문에 없다. 이 문제는 뒤에 나올 사법해석(司法解释)이나 실무 지침을 기다려야 한다.

3. 제18조 (十八) 증거 심사 규칙

조문 요지

제18조의 제목은 「探索完善涉人工智能纠纷案件证据审查规则」이다. 인공지능 분쟁 사건의 증거 심사 규칙을 탐색하고 정비한다는 뜻이다. 조문은 세 가지 전제를 든다. 인공지능 기술의 복잡성, 시스템 운행의 불투명성, 증거 수집의 특수성이다.

조문은 심사의 중점을 나눈다. 첫째, 전자 데이터의 생성, 수집, 저장, 전송 과정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중점 심사한다. 둘째, 빅데이터와 블록체인(区块链) 같은 서로 다른 기술이 만든 증거에는 다른 심사 중점을 둔다. 셋째,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는 원시 데이터의 출처, 세척 규칙, 분석 방법의 과학성을 중점 심사한다. 넷째, 블록체인 보관 증거는 「上链前数据的真实性及技术平台的可靠性」을 중점 심사한다. 상련(上链) 전 데이터의 진실성과 기술 플랫폼의 신뢰성이라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생성물을 침해 증거로 낼 때의 판단 요소를 든다. 프롬프트의 설계와 그것이 생성 결과에 미친 영향, 생성물과 권리 작품의 유사 정도, 반복 시험의 일관성, 모델 훈련과 알고리즘 설계와 생성물 필터링 구조를 종합해서 판단한다.

원문이 기술 이름을 든 것은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둘이다. 타임스탬프는 조문에 나오지 않는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보관 방식이지만, 의견의 근거로 삼을 때는 조문이 든 범위를 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배경과 문제 상황

블록체인 보관은 위조를 막는 기술로 알려져 있다. 자료를 사슬에 올리면 나중에 고칠 수 없다. 타임스탬프도 같은 구실을 한다. 어느 시점에 그 자료가 있었다는 사실을 남긴다.

그러나 이 기술이 지키는 것은 사슬에 올린 뒤의 상태다. 올리기 전에 이미 조작된 자료를 올리면, 조작된 자료가 그대로 굳는다. 상련(上链) 전의 진실성을 따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도 같다. 보고서는 결론만 보면 깔끔하다. 그러나 어떤 데이터를 모았고 어떤 자료를 걸러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데이터를 고르는 단계에서 이미 답이 정해지기도 한다.

인공지능 생성물을 증거로 내는 경우는 더 까다롭다. 어떤 프롬프트를 넣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상대방 모델이 남의 작품을 베낀다는 사실을 보이려고, 베끼도록 유도하는 지시를 넣을 수도 있다. 한 번 나온 결과를 그대로 증거로 쓰기 어렵다.

의견 제16조는 반대편 상황도 다룬다. 허구의 간섭 데이터를 넣고, 데이터에 악의로 표기를 붙이고, 적대 샘플로 모델을 공격해 운행 안전을 해치면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모델은 밖에서 흔들 수 있는 대상이다. 증거를 심사할 때도 이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한다.

요건과 효과

조문은 증거 종류마다 심사의 초점을 다르게 잡는다.

블록체인 보관 증거는 두 단계로 본다. 사슬에 올리기 전 데이터가 진짜인지, 보관을 맡은 기술 플랫폼을 믿을 수 있는지를 본다.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는 세 가지를 본다. 원시 데이터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규칙으로 데이터를 세척했는지, 분석 방법이 과학적인지를 본다.

인공지능 생성물은 네 가지를 본다. 프롬프트 설계와 그 영향, 유사 정도, 반복 시험의 일관성, 모델 쪽 사정이다. 여기서 반복 시험의 일관성이 실무의 열쇠다.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돌려서 같은 결과가 나오면 우연이 아니다. 한 번의 화면 갈무리로는 부족하다.

전자 데이터 일반에 대해서는 생성, 수집, 저장, 전송의 네 단계를 모두 본다. 어느 한 단계라도 끊기면 증거의 힘이 떨어진다.

실무 포인트

권리자는 증거를 만들 때 과정을 남겨야 한다. 어떤 지시를 넣었는지, 몇 번 시험했는지, 각 회차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기록한다. 시험은 여러 번 한다. 유리한 한 번만 골라 내면 제19조가 말하는 선택적 결과 제시가 된다.

기업은 사내 기록의 사슬을 관리해야 한다. 로그를 언제 만들고 어디에 보관하며 누가 옮기는지를 문서로 정해 둔다.

법원은 보관 플랫폼의 신뢰성을 심사할 기준이 필요하다.

상대방을 대리하는 쪽은 심사 항목을 그대로 반대 심문의 목록으로 쓸 수 있다. 원시 데이터를 어디에서 모았는지, 어떤 자료를 왜 버렸는지, 사슬에 올리기 전 파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묻는다. 조문이 든 네 항목과 세 항목이 곧 질문지가 된다.

보관 서비스를 고를 때도 기준이 생긴다. 사슬에 올린 시각만 남기는 서비스로는 부족하다. 자료를 만든 기기, 만든 시각, 옮긴 경로를 함께 남기는 편이 낫다.

한국과의 비교

한국은 전자 증거를 별도 규칙으로 촘촘히 나누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374조는 정보를 담기 위한 물건에 서증과 감정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다. 전자문서로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다. 증거의 신빙성 판단은 자유심증에 맡긴다.이 법률은 서류를 전자적으로 내고 송달하는 절차를 다룬다. 증거의 진실성을 어떤 순서로 심사할지는 정하지 않는다.

중국 의견은 그 판단 과정을 조문으로 앞당겨 적었다. 어느 증거에서 무엇을 먼저 볼지를 미리 지정한다. 한국에서는 같은 내용을 감정과 변론으로 다투고 법관이 판단한다.

블록체인 증거에 관해서도 차이가 있다. 중국은 인터넷 법원 실무에서 블록체인 보관을 오래 다루어 왔고, 이번 조문은 그 경험을 인공지능 사건으로 옮긴다. 한국은 아직 판단 기준을 조문으로 정해 두지 않았다.

남은 쟁점

조문은 심사할 항목을 들 뿐 판단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반복 시험을 몇 번 해야 일관성을 인정하는지 정하지 않는다. 유사 정도를 재는 방법도 정하지 않는다. 기술 플랫폼의 신뢰성을 무엇으로 확인할지도 열려 있다. 조문 제목이 「探索完善」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은 규칙을 만들어 가는 단계라는 뜻이다.

4. 제19조 (十九) 허위소송(虚假诉讼), AI 환각(AI幻觉), AI 위조 증거의 제재

조문 요지

제19조의 제목은 「依法规制利用人工智能不当取证等妨害司法秩序的行为」이다. 인공지능을 써서 증거를 부당하게 얻는 등 사법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규제한다는 뜻이다. 조문은 세 가지를 정한다.

첫째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허위소송(虚假诉讼)이다. 당사자가 인공지능의 자율 학습과 자율 결정이라는 성질을 이용해 거짓 증거를 얻고, 사건의 기본 사실을 꾸며 소송을 내는 경우다. 원문은 그 수법을 네 가지로 든다. 「删除或者篡改生成合成内容标识」은 생성물 표시를 지우거나 고치는 것이다. 「特定指令输入」은 특정한 지시를 넣는 것이다. 「选择性结果呈现」은 유리한 결과만 골라 내는 것이다. 「对抗性干扰」은 모델을 흔드는 간섭이다. 이런 방식으로 국가 이익, 사회 공공 이익, 타인의 합법 권익을 침해하려 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고 정상의 경중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를 부과한다. 범죄가 되면 형사 책임을 묻는다.

둘째는 인공지능을 써서 증거를 위조하는 행위다. 소송 참여인이나 다른 사람이 증거를 위조해 재판을 방해하면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처리한다.

셋째는 인공지능이 만든 소송 서류의 핵실(核实) 의무다. 소송 참여인이 소송 문서나 사례 검색 보고서를 인공지능으로 만든 경우다. 법정에 내기 전에 관련 법률, 사법해석(司法解释), 사례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성실히 확인해야 한다. 낼 때는 인공지능을 보조로 썼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그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배경과 문제 상황

생성형 인공지능은 없는 판례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낸다. 사건 번호도 붙고 법원 이름도 붙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른바 인공지능 환각이다.

답기자문(答记者问)은 실제 사례를 언급한다. 인민법원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사례를 여러 건 발견했고, 당사자와 대리인이 법정에 내기 전에 전면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다. 2026년 1월에 언론이 이런 사건을 집중 보도했고, 인민법원 안례고(人民法院案例库)에도 관련 사례가 입고되었다고 밝힌다.

답기자문(答记者问)은 원칙을 분명히 한다. 인공지능은 보조 도구일 뿐이다. 소송 참여인은 인공지능 환각이나 기술 중립을 이유로 자기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정에 내는 증거와 소송 자료는 스스로 가려내고 확인해야 한다.

답기자문(答记者问)은 다른 나라 사정도 짧게 언급한다. 이 문제에 대해 외국 사법부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어떤 나라는 대리인이 법정 제출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고 강조하는 지침을 따로 냈다고 밝힌다. 인도 대법원이 2026년 판결에서 환각 판례 인용에 엄격한 태도를 밝힌 사례와 미국 법원의 제재 사례가 보도되었다. 이 사건들의 세부는 부록 2에서 다룬다.

허위소송(虚假诉讼)은 인공지능 이전부터 있던 문제다. 빚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며 소송을 내고, 상대가 다투지 않게 만들어 판결을 받아 낸다. 인공지능은 그 꾸밈을 쉽게 만든다. 계약서 사진도, 대화 화면도, 목소리 녹음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제19조가 첫머리에 허위소송(虚假诉讼)을 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요건과 효과

세 가지 행위는 제재의 근거가 다르다.

허위소송(虚假诉讼)은 소송 자체가 거짓이다. 효과는 세 겹이다. 청구를 기각한다. 정상의 경중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를 부과한다. 범죄가 되면 형사 책임을 묻는다. 근거는 2023년 개정 민사소송법 제115조다. 악의로 통모해 소송이나 조정으로 국가·사회 공공 이익이나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려 한 경우를 다룬다. 형법에는 허위소송죄(虚假诉讼罪)가 있다. 꾸며 낸 사실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사법 질서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합법 권익을 심하게 침해하면 처벌한다.

증거 위조는 소송 자체는 진짜여도 증거가 가짜인 경우다.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114조다. 위조 증거 제출 등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에 벌금과 구류를 정한다. 원문이 직접 이 조문 번호를 든다.

핵실(核实) 의무는 앞의 두 가지와 성질이 다르다. 고의가 없어도 적용된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소송 문서와 사례 검색 보고서가 대상이다. 의무는 세 가지다. 낼 자료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할 것, 인공지능 보조 사용 사실을 설명할 것,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다. 원문은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확인하고 밝히라고 정한다.

의무를 지는 사람은 소송 참여인이다. 당사자만이 아니라 대리인도 들어간다. 확인의 대상은 법률, 사법해석(司法解释), 사례의 내용이다. 조문은 진실성과 정확성을 나란히 든다. 실제로 있는 판결인지가 진실성이고, 그 판결이 실제로 그런 내용인지가 정확성이다. 있는 사건 번호에 없는 판시를 붙이는 경우가 흔하다.

실무 포인트

대리인은 인용한 판례를 하나씩 원문과 대조해야 한다. 사건 번호, 법원, 선고일, 판시 내용을 모두 본다. 요약만 보고 넘어가면 안 된다.

사무소는 절차를 문서로 만들어 두어야 한다. 누가 확인하고 누가 기록을 남기는지를 정한다. 인공지능 보조 사용 사실을 서면 어디에 어떻게 적을지도 미리 정해 둔다.

당사자는 증거를 만드는 과정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 번 시험해서 유리한 한 번만 내는 방식은 조문이 든 선택적 결과 제시에 해당할 수 있다. 생성물 표시를 지우는 행위도 같다.

기업 법무 담당자도 같은 부담을 진다. 사내에서 만든 검토 보고서가 그대로 소송 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인공지능이 만든 부분과 사람이 확인한 부분을 나누어 기록해 두

어야 한다.

한국과의 비교

한국에는 인공지능 서면에 관한 별도 조문이 없다. 근거는 일반 규정에서 나온다. 변호사법 제24조 제2항은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도록 정한다. 가짜 판례를 걸러내지 못한 대리인은 이 규정들을 통해 다투어진다.

한국 법원은 실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허위 사건번호를 조회하는 서비스와 대리인 제재 방침이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진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근거로 삼는다고 보도되었다. 다만 이런 조치는 개별 재판부의 판단과 징계 절차에 맡겨져 있다.

차이는 세 곳이다. 중국은 확인 의무를 조문에 적었다. 중국은 인공지능 사용 사실을 법정에 밝히라고 정한다. 중국은 벌금과 구류라는 직접 제재를 민사소송법 조문으로 연결한다. 한국은 제재를 소송상 불이익과 징계로 다룬다.

구류는 한국 민사소송에 없는 제재다. 한국에서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에게는 법원조직법의 감치와 과태료가 있다. 그러나 위조 증거 제출 자체를 민사 절차에서 구류로 다스리지는 않는다. 증거를 위조한 행위는 형법의 증거인멸죄나 사문서위조죄 같은 별도 절차로 넘어간다.

남은 쟁점

조문은 확인의 정도를 정하지 않는다. 어디까지 대조하면 성실히 확인한 것인지 기준이 없다. 설명의 형식도 정하지 않는다. 서면에 적을지 구두로 밝힐지, 어느 정도로 밝힐지가 열려 있다. 설명을 빠뜨렸을 때의 효과도 정하지 않는다. 잘못이 본인에게 있는지 대리인에게 있는지를 나누는 기준도 없다. 벌금과 구류의 수위를 정하는 기준도 조문에는 없다.

5. 제20조 (二十) 인공지능을 이용한 범죄의 처벌

조문 요지

제20조의 제목은 「依法惩治利用人工智能实施的犯罪活动」이다. 인공지능으로 저지른 범죄 활동을 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뜻이다. 조문은 짧다. 두 문장으로 되어 있다.

첫 문장은 행위 유형을 든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사기, 모욕, 비방, 상업 신용과 상품 명성 훼손, 공민 개인정보 침해, 컴퓨터 정보시스템 데이터 불법 취득, 음란물의 제작·판매·전파를 한 경우다. 범죄가 되면 형사 책임을 묻는다.

둘째 문장은 자동차 관련이다. 원문은 「行为人激活辅助驾驶功能后利用私自安装的配件逃避辅助驾驶系统监测导致道路交通事故」라고 정한다. 보조주행(辅助驾驶) 기능을 켠 뒤 몰래 단 부품으로 보조주행(辅助驾驶) 시스템의 감시를 피하다가 도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다. 범죄가 되면 형사 책임을 묻는다.

배경과 문제 상황

인공지능은 범죄의 문턱을 낮춘다. 답기자문(答记者问)은 이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얼굴을 바꾸는 기술은 누구의 초상이든 가져다 쓴다. 목소리를 흉내 내는 기술은 몇 위안이면 쓸 수 있고 결과가 진짜와 구분되지 않는다. 옷을 벗기는 소프트웨어와 사용법을 파는 사슬이 언론에 드러났다고 밝힌다.

보조주행(辅助驾驶) 부품은 다른 이야기다. 보조주행(辅助驾驶) 시스템은 운전자가 손을 놓았는지, 앞을 보고 있는지를 감시한다. 그 감시를 피하려고 만든 부품이 팔린다. 운전대에 걸어 두는 무게추 같은 물건이다. 감시를 속이면 운전자는 주행 중에 다른 일을 한다. 사고가 나면 사람이 다친다.

답기자문(答记者问)도 형사 부분을 따로 짚는다. 딥페이크 같은 기술로 사기, 모욕, 비방, 공민 개인정보 침해, 음란물의 제작·판매·전파를 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고 밝힌다. 그런 행위가 범죄가 되면 단호히 엄벌해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의견이 이에 관해 별도 규정을 두었다고 설명한다.

요건과 효과

조문이 든 죄명 유형은 형법에 이미 있는 것들이다. 새 죄명을 만들지 않는다. 인공지능을 도구로 썼을 때에도 같은 죄명으로 처벌한다는 뜻이다.

의견 제1부분의 기본 원칙이 여기에 이어진다. 원문은 「全面准确贯彻宽严相济刑事政策」를 든다. 관엄상제(宽严相济) 형사 정책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철한다는 뜻이다. 관엄상제(宽严相济)는 엄하게 다스릴 것은 엄하게, 너그럽게 다룰 것은 너그럽게 처리한다는 정책이다.

원칙은 두 유형로 갈린다. 고의로 인공지능을 써서 국가 안전을 해치고, 공민의 권익을 침해하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는 단호히 엄히 처벌한다. 반대로 인공지능 연구개발과 응용 과정의 창의적 행위는 신중히 처리한다. 죄형법정주의와 죄책형 상응 원칙을 지킨다.

이 두 유형는 같은 문장 안에 있다. 엄벌의 기준은 고의다. 인공지능을 도구로 골라 쓴 행위가 여기에 든다. 신중한 처리의 대상은 연구개발과 응용 과정에서 나온 창의적 시도다.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방신죄(帮信罪)는 형법의 방조정보네트워크범죄활동죄(帮助信息网络犯罪活动罪)의 줄임말이다. 남이 정보 네트워크로 범죄를 저지르는 줄 알면서 기술 지원이나 도움을 준 사람을 처벌한다. 목차 초안은 유해 모델을 배포한 사람과 필터를 방치한 플랫폼에 이 죄를 물을 수 있다고 정리한다. 그러나 의견 원문에는 방신죄(帮信罪)가 나오지 않는다. 제20조는 방조 행위를 죄명으로 따로 들지 않는다. 실무에서 방신죄(帮信罪)를 적용할지는 형법과 관련 사법해석(司法解释)의 문제다. 이 해설서는 원문에 없는 죄명을 제20조의 내용으로 적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보조주행(辅助驾驶) 우회 부품을 만들어 판 사람에게 어떤 죄명을 붙일지도 조문에 없다. 원문이 정한 것은 부품으로 감시를 피한 운전자 쪽이다. 감시를 피하다가 사고를 내고 범죄가 되면 형사 책임을 묻는다고만 정한다.

실무 포인트

기업은 자기 서비스가 범죄에 쓰이는 통로가 되는지 살펴야 한다. 얼굴 합성과 음성 합성 기능은 신원 확인과 이용 기록이 필요하다. 생성물 표시를 지우기 쉬운 구조는 위험하다.

자동차 제조사는 감시 회피 부품을 탐지하는 기능과 경고를 준비해야 한다. 판매 단계의 설명도 중요하다. 제11조가 자동화 등급과 성능에 대한 허위·오인 광고를 규제한다.

이용자는 보조주행(辅助驾驶)을 자율주행(自动驾驶)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감시를 피하는 부품을 다는 행위는 사고가 났을 때 형사 책임으로 이어진다.

플랫폼은 유통 단계를 살펴야 한다. 감시 회피 부품이나 옷을 벗기는 소프트웨어가 상품 목록에 오르는지 확인한다. 답기자문(答记者问)이 든 사례는 모두 판매 사슬을 통해 퍼진 것들이다.

한국과의 비교

한국도 인공지능을 도구로 쓴 범죄를 기존 죄명으로 처벌한다. 사기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그 자리를 맡는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따로 정한다. 2024년 개정으로 제작죄의 법정형이 오르고 소지와 시청도 처벌 대상이 되었다.

차이는 방식이다. 중국은 재판 지침 문서에 죄명 유형을 나열해서 법원의 처리 방향을 통일한다. 한국은 개별 법률과 판례로 처리한다. 인공지능을 도구로 썼다는 사정을 양형에서 어떻게 볼지도 한국에서는 정해진 지침이 없다.

보조주행(辅助驾驶) 감시 회피 장치에 관해서는 한국에 대응 조문이 없다.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의 일반 규정으로 다투게 된다.

관엄상제(宽严相济)라는 정책 개념도 한국에는 그대로 대응하는 말이 없다. 한국은 같은 취지를 양형기준과 법관의 재량으로 다룬다. 중국은 형사 정책을 문서에 적어 전국 법원의 처리 방향을 맞춘다.

남은 쟁점

조문은 원칙만 정한다. 인공지능을 도구로 쓴 사정이 형을 무겁게 하는 사유인지 조문에 없다. 모델을 만든 사람과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의 형사 책임 범위도 정하지 않는다. 어디까지가 연구개발의 창의적 행위이고 어디부터가 고의 범죄인지도 앞으로 사건이 쌓여야 정해진다. 원문이 창의적 행위를 신중히 처리하라고 정한 취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 경계선은 지금 조문에 없다.

6. 장 정리

제4부분의 네 개 조는 하나의 흐름을 이룬다. 제17조는 기술 사실을 밝히는 통로를 넓힌다. 전문가 보조인(专家辅助人), 감정, 기술조사관(技术调查官)을 인공지능 사건에 끌어들이고, 증거를 쥔 쪽이 내지 않으면 불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한다. 제18조는 그 증거를 심사하는 초점을 종류별로 나눈다. 블록체인 증거는 상련(上链) 전 진실성을, 분석 보고서는 원시 데이터와 방법을, 인공지능 생성물은 프롬프트와 반복 시험의 일관성을 본다. 제19조는 거짓 증거와 거짓 서면을 제재한다. 허위소송(虚假诉讼)에는 청구 기각과 벌금·구류를, 위조 증거에는 민사소송법 제114조를 적용한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서면에는 확인과 설명 의무를 새로 지운다. 제20조는 범죄가 될 때 기존 죄명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관엄상제(宽严相济) 정책을 적용한다.

이 부분은 조문이 짧고 기준이 성글다. 확인의 정도, 시험 횟수, 제재의 수위는 앞으로 실무가 채워야 한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하다. 인공지능은 소송의 도구로 쓸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람이 진다.

05 CHAPTER

제5장. 사법 행정 메커니즘과 다자 거버넌스 공조 [제21조 ~ 제24조]

소원치리(诉源治理), 제급관할(提级管辖)과 안례고(案例库), 사법건의(司法建议), 국제 사법 교류

1. 장 개요

의견(意见)의 다섯째 부분 제목은 「加大对涉人工智能纠纷案件审判指导力度，不断健全完善工作机制」이다. 인공지능 분쟁 사건의 재판 지도를 더 든든히 하고 업무 메커니즘을 꾸준히 갖춘다는 뜻이다. 이 부분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네 개 조로 이루어진다. 앞의 네 부분이 재판의 내용을 정했다면, 이 부분은 재판을 둘러싼 틀을 정한다.

기자회견 발표문은 이 부분을 둔 이유를 밝힌다. 「《意见》不可能涵盖所有人工智能案件类型」, 의견이 모든 인공지능 사건 유형을 다 담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발표문은 많은 문제를 사법 실천으로 더 탐색하고 쌓아야 한다고 적는다. 인공지능 거버넌스는 여러 주체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체계 공정(系统工程)이라고도 밝힌다. 규칙의 빈칸을 인정하고, 그 빈칸을 조직과 절차로 메우겠다는 설계다.

네 조는 안에서 밖으로 넓어지는 순서를 따른다. 제21조는 법원 문 앞에서 분쟁을 미리 거른다. 제22조는 법원 안에서 재판의 잣대를 맞춘다. 제23조는 법원 밖 행정 부처와 업계로 손을 뻗는다. 제24조는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 사법과 만난다. 실체 규칙 하나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새 기술 분쟁을 예방과 통일과 협력으로 함께 받치겠다는 구상이다.

발표문은 합의가 어려운 문제를 「留白处理」, 곧 빈칸으로 남겼다고 밝힌다. 조건이 익으면 적절한 방식으로 다시 밝히겠다고 덧붙인다. 제5부분은 그 빈칸을 채워 갈 통로에 해당한다. 발표문이 이 부분의 내용으로 든 항목은 네 가지다. 분쟁의 예방과 해소, 조사연구와 논증의 강화, 사례 지도와 재판 감독 지도, 부처 협작과 국제 사법 교류 협력이다.

이 부분에는 당사자에게 곧바로 적용되는 요건이 적다. 그래서 실무자가 건너뛰기 쉽다. 그러나 앞의 조문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일지는 이 부분이 정한다. 어떤 사건이 어느 법원으로 가고, 어떤 판결이 사례로 남고, 어떤 문제가 행정으로 넘어가는지가 여기서 갈린다.

2. 제21조 (二十一) 다원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과 소원치리(诉源治理)

조문 요지

제21조의 제목은 「充分发挥多元解纷机制作用」이다. 여러 유형의 분쟁 해결 방법을 충분히 살려 쓴다는 뜻이다. 조문은 인민법원이 이런 방법을 적극 써서 인공지능 분쟁을 알맞게 풀라고 정한다. 함께 움직일 상대도 이름을 들어 밝힌다. 인공지능 업계 주관 부처, 업종별 전문 조정 조직,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와 학자다. 조문은 이들과 「建立联动协同机制」, 곧 연동 협동 메커니즘을 세우라고 정한다.

조문은 이어 「做实先行调解」라고 적는다. 선행조정(先行调解)을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만들라는 지시다. 선행조정(先行调解)은 사건을 정식 재판 절차에 올리기 전에 먼저 조정으로 풀어 보는 절차다. 조문은 또 하나의 방향을 든다. 재판 기능에 뿌리를 두고 인공지능 분쟁의 예방과 해소를 법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라는 것이다. 그 수단으로 재판 공개(庭审公开)와 이안석법(以案释法)을 든다. 이안석법(以案释法)은 구체적 사건으로 법을 풀어 설명하는 방식이다. 조문은 이런 방식으로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경계를 그으라고 정한다. 마지막 목표는 「源头预防、及时化解」, 곧 근원에서 막고 제때 푸는 것이다.

배경과 문제 상황

인공지능 분쟁은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에서 끝나지 않는다. 얼굴을 바꾼 짧은 영상 하나가 퍼지면 같은 피해가 수백 건씩 생긴다. 어떤 앱이 이용자 사진을 잘못 쓰면 그 앱을 쓴 모든 사람이 같은 처지에 놓인다. 사건 하나하나를 판결로 받아 내면 법원은 곧 감당하지 못한다. 판결이 나올 무렵이면 영상은 이미 다 퍼진 뒤다.

중국 법원이 오래 써 온 정책 용어가 소원치리(诉源治理)다. 소송의 근원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분쟁이 소송으로 굳기 전에 조정 기구와 업계 협회, 플랫폼의 자체 처리 창구에서 먼저 거르는 방식이다. 제21조는 이 정책을 인공지능 분야로 끌어온다. 기술을 아

는 사람이 있어야 조정이 되므로 전문가와 학자를 메커니즘 안에 넣었다.

소원치리(诉源治理)의 뿌리로는 신시대 풍교경험(枫桥经验)이 꼽힌다. 주민 사이의 다툼을 지역에서 먼저 푸는 오랜 방식이다. 인공지능 분쟁은 지역을 넘어 온라인에서 생긴다. 그래서 플랫폼의 자체 처리 창구와 법원의 전자 조정 체계를 잇는 방식이 쓰인다.

조문이 업계 주관 부처를 상대로 든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기술 사양을 제일 잘 아는 쪽은 감독 부처다. 조정 자리에 부처가 함께 앉으면 사실 확인이 빨라진다. 합의 내용이 다음 감독 기준에 반영될 여지도 생긴다.

요건과 효과

첫째, 대상은 인공지능 분쟁 사건 전반이다. 조문은 사건 유형을 따로 좁히지 않는다. 인격권 침해든 지식재산권 다툼이든 가리지 않는다.

둘째, 법원은 다원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적극 써야 한다. 조문의 표현은 「应当积极运用」이다. 권고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적혀 있다.

셋째, 법원은 세 부류의 상대와 연동 협동 메커니즘을 세운다. 인공지능 업계 주관 부처, 업종별 전문 조정 조직, 인공지능 전문가와 학자다.

넷째, 선행조정(先行调解)을 실질로 만든다. 조정을 거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에 집행력을 붙이는 절차가 사법확인(司法确认)이다. 다만 제21조 본문은 사법확인(司法确认)을 적지 않는다. 원문은 선행조정(先行调解)을 실질로 하라고만 정한다.

다섯째, 재판 공개와 이안석법(以案释法)으로 권리와 의무를 밝히고 행위의 경계를 긋는다. 조문은 이를 사법 재판의 「示范引领作用」, 곧 본보기 기능이라고 부른다.

실무 포인트

기업은 분쟁 창구를 미리 갖추는 편이 낫다. 이용자 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절차, 삭제와 차단의 기준, 처리 기한을 문서로 정해 둔다. 업종 협회의 조정 기구에 참여하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풀 통로가 생긴다.

개인은 조정을 손해로 여기지 않아도 된다. 인공지능 침해는 시간이 생명이다. 영상이 퍼지는 동안 판결을 기다리는 것보다 빠른 삭제가 실익이 클 때가 많다. 다만 합의 내용

에 집행력이 붙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법원은 조정 인력의 기술 이해도를 챙겨야 한다. 모델이 어떻게 학습하고 무엇을 만들어 내는지 모르면 조정안이 겉돈다. 조문이 전문가와 학자를 넣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판 공개와 이안석법(以案释法)은 기업에도 정보가 된다. 공개된 심리에서 법원이 어떤 사실을 묻는지 보면 다음 재판의 쟁점이 보인다. 법원이 사건을 풀어 설명한 자료는 사내 교육 자료로 쓸 만하다.

한국과의 비교

한국에도 조정 제도가 있다. 민사조정법에 따라 소송 전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이 점은 중국의 선행조정(先行调解)과 사법확인(司法确认)이 노리는 효과와 닮았다.

다른 점은 정책의 위치다. 한국에는 소원치리(诉源治理) 같은 상위 정책 용어가 없다. 조정은 사건별 선택지에 가깝다. 중국은 법원이 행정 부처와 업계 조직을 묶어 상시 협의체를 만들도록 정한다.

재판 공개는 한국도 헌법 제109조가 정한다. 그러나 한국은 공개를 재판의 원칙으로 다루고, 중국의 이 조문은 공개를 분쟁 예방의 수단으로도 다룬다.

법원과 행정의 거리도 다르다. 한국 법원은 개별 사건의 심판에 집중한다. 분쟁 예방은 주로 소관 부처와 분쟁조정위원회의 몫이다. 중국의 이 조문은 법원이 예방의 설계자로 나서라고 정한다.

남은 쟁점

조문은 연동 협동 메커니즘의 형태를 정하지 않는다. 어느 급의 법원이 어느 부처와 협의체를 꾸리는지, 회의를 얼마나 자주 여는지가 빈칸이다.

선행조정(先行调解)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를 낸 경우의 처리도 조문에 없다. 조정 전치가 아닌 이상 소 제기 자체는 막히지 않는다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실무 운영이 이를 어떻게 다룰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전문가와 학자의 지위도 정해지지 않았다. 조정에 참여한 전문가가 뒤에 같은 사건의 감정인이 될 수 있는지, 이해 충돌을 어떻게 거를지는 뒤의 규칙을 기다려야 한다.

조정으로 푼 사건이 쌓여도 그 내용은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판결과 달리 조정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방을 앞세울수록 공개된 기준은 적어지는 긴장이 남는다.

플랫폼이 운영하는 자체 처리 창구의 지위도 분명하지 않다. 그 처리를 선행조정(先行调解)으로 볼지, 회사의 내부 절차로 볼지가 갈린다. 조문은 여기까지 정하지 않는다.

3. 제22조 (二十二) 재판 감독 지도와 제급관할(提级管辖), 인민법원 안례고(人民法院案例库)

조문 요지

제22조의 제목은 「加强审判监督指导」다. 재판 감독과 지도를 강화한다는 뜻이다. 조문은 세 가지를 정한다. 첫째, 「积极规范适用提级管辖」, 곧 제급관할(提级管辖)을 적극적이면서 규범에 맞게 쓴다. 둘째, 본보기 기능을 키워 재판 감독 지도를 실질로 만든다. 셋째, 인민법원 안례고(人民法院案例库)를 충분히 써서 사례 지도 업무를 강화한다.

조문은 제급관할(提级管辖)의 대상을 넷으로 든다. 중대한 이익이 걸린 사건, 어렵고 복잡한 새 유형 사건, 규칙을 세우는 의미가 있는 사건, 법 적용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다. 이런 사건은 「由上级人民法院提级审理」, 곧 상급 인민법원이 끌어올려 심리한다. 조문은 사례 지도의 목적을 「促推法律适用统一和人工智能治理规则的完善」이라고 밝힌다. 법 적용을 통일하고 인공지능 거버넌스 규칙을 다듬는 데 있다. 발표문은 이 부분의 내용에 조사연구와 논증의 강화를 함께 든다.

배경과 문제 상황

기술 사건은 판사마다 이해의 폭이 다르다. 같은 생성형 서비스를 두고 어떤 법원은 제공자를 무겁게 보고, 다른 법원은 가볍게 본다. 기준이 갈리면 기업은 어느 쪽에 맞춰야 할지 모른다. 이용자도 자기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

중국은 성문법 국가다. 판결은 다음 사건을 법으로 묶지 않는다. 그래서 기준을 맞추는 장치를 따로 둔다. 하나가 사건을 위로 올려 상급 법원이 직접 1심을 맡는 제급관할(提级管辖)이다. 다른 하나가 최고인민법원이 고른 사례를 모아 판사들이 보게 하는 안례고(案例库)다. 안례고(案例库)는 2024년 2월에 정식으로 열렸다.

두 장치는 방향이 다르다. 제급관할(提级管辖)은 사건 하나를 위로 올려 기준을 처음 세운다. 안례고(案例库)는 이미 나온 판결을 모아 아래로 퍼뜨린다. 앞의 것이 규칙을 만들고, 뒤의 것이 규칙을 퍼 나른다.

요건과 효과

첫째, 제급관할(提级管辖)의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39조다. 하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이라도 상급 인민법원이 스스로 심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제22조는 이 제도를 인공지능 분쟁에 쓰라고 정한다.

둘째, 대상 요건은 네 가지다. 중대한 이익, 어렵고 복잡한 새 유형, 규칙 확립의 의미, 법 적용 기준의 통일 필요다. 조문은 이 네 가지를 예시로 들고 「等」을 붙인다. 닫힌 목록이 아니다.

셋째, 효과는 심급의 상향이다. 사건은 기층 법원이 아니라 상급 법원의 1심 사건이 된다. 상소심도 그만큼 위로 올라간다. 조문은 이를 「由上级人民法院提级审理」라고 적는다.

넷째, 안례고(案例库)는 최고인민법원이 골라 넣은 사례를 담는다. 조문은 「充分运用」, 곧 충분히 쓰라고 정한다. 안례고(案例库)에 든 사례와 지도성 사례(指导性案例)는 재판의 잣대를 맞추는 참조 자료로 쓰인다. 조문 자체는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표현을 두지 않는다. 원문은 사례 지도 업무에 힘쓰라고만 정한다.

다섯째, 지도성 사례(指导性案例)는 최고인민법원이 따로 골라 공표하는 사례군이다. 조문은 사례 지도 업무의 강화를 정하면서 안례고(案例库)를 함께 든다. 두 자료는 재판의 잣대를 맞추는 같은 방향의 수단이다.

실무 포인트

기업 법무는 안례고(案例库)를 정기 점검 대상에 넣는 편이 낫다. 자사 서비스와 닮은 사건이 들어오면 그것이 곧 다음 재판의 기준선이 된다.

소송 대리인은 사건이 제급관할(提级管辖) 대상인지 처음부터 따져야 한다. 규칙을 세우는 의미가 있다고 볼 사건이면 심리 법원이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준비 기간과 서면의 무게도 달라진다. 유사한 사건이 안례고(案例库)에 있는지도 먼저 찾아본다.

법원은 조사연구를 앞세우라고 발표문이 밝힌다. 새 유형 사건은 판결 전에 기술 사실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소송 전략도 달라진다. 규칙을 세우는 사건은 판결문이 널리 읽힌다. 한 사건의 서면이 업계 전체의 기준선을 만드는 셈이다. 그만큼 기술 설명 자료의 완성도가 중요해진다.

법원 안에서는 기술 사실을 다루는 인력의 배치가 함께 따라야 한다. 기술조사관(技术调查官)은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기술 사실의 조사를 돕는 재판 보조자다. 인공지능 사건에서도 같은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과의 비교

한국에는 제급관할(提级管辖)에 해당하는 제도가 없다.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사건을 끌어올려 1심으로 재판하는 길은 열려 있지 않다. 한국의 이송은 관할 위반이나 소송의 편의를 이유로 같은 심급 안에서 옮기는 절차다.

기준 통일의 방법도 다르다. 한국은 대법원 판결이 사실상 기준이 된다.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심 재판의 판단이 그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정한다. 판례를 바꿀 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친다.

사례를 모은 데이터베이스도 성격이 다르다. 한국의 판례 검색 서비스는 자료 제공에 가깝다. 중국의 안례고(案例库)는 최고인민법원이 고르고 관리하는 지도 수단이다.

기준이 서는 속도도 갈린다. 한국은 사건이 3심까지 올라가야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중국의 제급관할(提级管辖)은 처음부터 상급 법원이 1심을 맡는다. 새 기술 분야에서 기준을 빨리 세우려는 선택이다.

남은 쟁점

조문은 제급관할(提级管辖)의 발동 주체와 절차를 정하지 않는다. 상급 법원이 스스로 정하는지, 하급 법원이 올려 보내는지,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가 빈칸이다.

안례고(案例库) 사례의 힘도 조문에 없다. 판사가 반드시 찾아보아야 하는지, 다르게 판단할 때 이유를 밝혀야 하는지는 이 의견이 정하지 않았다.

인공지능 분야의 안례고(案例库) 사례가 아직 두텁지 않은 점도 남는다. 사례가 쌓이기 전까지는 기준의 통일이 더디게 진행된다.

4. 제23조 (二十三) 부처 협작과 사법건의(司法建议)

조문 요지

제23조의 제목은 「加强部门协作协同」이다. 부처 사이의 협작과 협동을 강화한다는 뜻이다. 조문은 수단을 먼저 든다. 「通过制发司法建议、建立合作机制等多种方式」, 곧 사법건의(司法建议)를 만들어 보내고 협력 메커니즘을 세우는 여러 방식이다. 목적은 사법 기능을 살려 국가와 사회의 거버넌스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조문은 협작 상대를 이름으로 든다. 망신(网信) 부문, 공안, 검찰, 시장 감독 부문이다. 망신(网信)은 인터넷 정보를 관장하는 부문을 가리킨다. 조문은 이들과 「建立并落实长效综合治理机制」, 곧 오래가는 종합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세우고 실행하라고 정한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플랫폼, 업종 협회가 스스로를 규율하도록 이끌라고 적는다. 지향점은 「行业自律、行政监管、司法保障的全链条保护合力」이다. 업계 자율과 행정 감독과 사법 보장이 사슬처럼 이어져 함께 힘을 내는 상태를 말한다.

배경과 문제 상황

인공지능 침해는 돈으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추천 알고리즘이 값을 다르게 매기면 피해자는 수백만 명이 된다. 한 사람에게 배상을 해 주어도 알고리즘은 그대로 돌아간다.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낸다.

법원이 재판 중에 발견한 구멍을 밖으로 전하는 통로가 사법건의(司法建议)다. 인민법원조직법 제10조가 근거로 꼽힌다. 법원은 제도의 미비나 관리의 허점을 관계 기관이나 기업에 알리고 고치라고 권한다. 판결로 닿지 않는 곳에 손을 대는 방법이다.

조문이 그리는 그림은 세 겹이다. 맨 앞에 업계의 자율이 있다. 그다음이 행정의 감독이다. 마지막이 사법의 보장이다. 앞의 두 겹이 새면 사건이 법원으로 온다. 법원은 그 사건에서 본 구멍을 다시 앞의 두 겹으로 돌려보낸다.

요건과 효과

첫째, 수단은 사법건의(司法建议)와 협력 메커니즘이다. 조문은 「等多种方式」라고 적어 다른 방식도 열어 둔다. 협력 메커니즘은 사건마다 꾸리는 협의가 아니라 상시 체계를 뜻한다.

둘째, 사법건의(司法建议)의 상대는 조문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조문은 부처 협작 문맥에서 망신(网信), 공안, 검찰, 시장 감독 부문을 든다. 기업과 플랫폼, 업종 협회는 규범 자치를 이끄는 대상으로 따로 적는다. 망신(网信) 부문은 온라인 정보의 관리와 알고리즘 관련 제도를 맡는다.

셋째, 효과는 권고에 그친다. 사법건의(司法建议)는 판결이 아니다. 받은 기관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회신하는 실무가 있으나, 제23조는 회신 의무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힘은 강제가 아니라 최고 법원과 상급 법원의 이름에서 나온다.

넷째, 조문은 「长效」, 곧 오래가는 메커니즘을 요구한다. 사건이 생길 때만 모이는 협의가 아니라 상시 체계를 만들라는 뜻이다.

다섯째, 목표는 전 사슬 보호의 합력이다. 업계가 스스로 지키고, 행정이 감독하고, 사법이 마지막을 받친다.

실무 포인트

플랫폼 기업은 사법건의(司法建议)를 예고로 읽어야 한다. 어느 법원이 특정 설계를 문제 삼아 건의를 보냈다면 같은 설계를 쓰는 다른 기업도 곧 대상이 된다. 합성 콘텐츠 표시, 데이터 수집 방식, 신고 처리 절차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업종 협회는 자율 규범을 문서로 남기는 편이 낫다. 조문이 규범 자치를 이끌라고 정한 이상, 자율 규범의 존재와 이행 기록이 뒤에 판단 자료가 된다.

개인 이용자에게도 통로가 생긴다. 플랫폼이 신고를 받지 않으면 감독 부처에 신고할 수 있다. 부처의 조치 기록은 뒤에 소송에서 자료가 된다.

법원은 건의를 보낸 뒤의 흐름을 관리해야 한다. 회신을 받고 개선을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건의는 종이로 남는다.

기업 법무는 행정 조사와 소송을 따로 보지 않는 편이 낫다. 같은 사실이 행정 처분과 민사 배상 두 곳에서 다뤄질 수 있다. 한쪽에서 낸 자료가 다른 쪽의 자료가 된다.

한국과의 비교

한국에는 사법건의(司法建议)에 해당하는 일반 제도가 없다. 법원이 재판 중에 발견한 제도의 문제를 행정 기관에 공식으로 권고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법

원은 헌법 제108조에 따라 규칙을 만들 수 있으나 이는 법원 내부 절차에 관한 권한이다.

감독의 축도 다르다. 한국에서 알고리즘과 개인정보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행정 기관이 조사와 처분으로 다룬다. 법원은 그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뒤에 판단한다.

중국의 이 조문은 법원을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앞세운다. 재판으로 얻은 정보를 행정과 업계로 흘려보내는 설계다.

한국에서 이에 가까운 통로는 판결문의 공개와 정책 연구다. 다만 이는 개별 기관에 시정을 권하는 절차가 아니다. 제도의 개선은 입법과 행정의 몫으로 남는다.

남은 쟁점

사법건의(司法建议)의 효력이 조문에 없다. 받은 기관이 따르지 않을 때 무엇이 뒤따르는지가 빈칸이다.

협작의 범위도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이 행정 부처와 자료를 주고받을 때 사건 기록을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는지,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가리는지는 이 의견이 다루지 않는다.

업계 자율과 사법 판단의 관계도 남는다. 협회의 자율 규범을 지킨 기업이 그것만으로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를 조문은 말하지 않는다.

5. 제24조 (二十四) 국제 사법 교류 협력

조문 요지

제24조의 제목은 「加强国际司法交流合作」이다. 국제 사법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뜻이다. 조문은 먼저 재판을 말한다. 「妥善审理涉人工智能及数据跨境纠纷案件」, 곧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국경 간 분쟁 사건을 알맞게 심리하라고 정한다.

조문은 협력의 전제를 밝힌다. 「相互尊重、平等互利」,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며 서로 이롭게 한다는 원칙이다. 이 바탕 위에서 인공지능 분야의 섭외 재판 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 방법으로는 「加强规则对接与互鉴」를 든다. 규칙을 서로 잇고 서로 배운

다는 뜻이다. 규칙 대접(规则对接)은 서로 다른 나라의 규칙을 맞물리게 만드는 작업을 가리킨다.

조문은 지향점을 두 문장으로 적는다. 하나는 「更加公平合理、包容开放的人工智能治理体系」, 곧 더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포용적이고 열린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促进、保护人工智能生态系统和人类文明的多样性」이다. 인공지능 생태계와 인류 문명의 다양성을 북돋우고 지킨다는 뜻이다. 의견은 이 문장으로 끝난다. 규칙 문건의 마지막을 재판 기술이 아니라 다양성의 보호로 맺은 점이 눈에 띈다.

배경과 문제 상황

인공지능 서비스는 국경을 따지지 않는다. 모델은 한 나라에서 학습하고, 서버는 다른 나라에 두고, 이용자는 또 다른 나라에 있다. 학습에 쓴 데이터가 어느 나라 사람의 것인지도 갈린다. 분쟁이 생기면 어느 나라 법원이 맡는지, 어느 나라 법을 쓰는지부터 다툼이 된다.

데이터가 국경을 넘는 순간 다른 문제가 겹친다. 나라마다 국외 이전의 요건이 다르다. 한쪽에서 적법한 이전이 다른 쪽에서는 위반이 된다. 제24조는 이런 사건을 법원이 피하지 말고 알맞게 심리하라고 정한다.

조문이 든 규칙 대접(规则对接)은 규칙의 통일과 다르다. 통일은 하나의 규칙으로 모으는 일이다. 대접은 서로 다른 규칙이 맞물려 돌아가게 만드는 일이다. 조문은 상호 존중과 평등 호혜를 앞에 두어 뒤쪽을 고른다.

발표문은 의견을 「首部由国家最高审判机构发布的涉人工智能司法裁判规则文件」이라고 적는다. 국가 최고 심판 기구가 낸 첫 인공지능 사법 재판 규칙 문건이라는 뜻이다. 이어 세계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中国司法智慧」, 곧 중국 사법 지혜의 기여라고 밝힌다. 이 표현은 발표문의 자체 평가다.

요건과 효과

첫째, 대상은 인공지능 관련 사건과 데이터 국경 간 분쟁 사건이다. 조문은 두 가지를 나란히 든다.

둘째, 협력의 원칙은 상호 존중과 평등 호혜다. 조문은 이 원칙을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적는다. 어느 한 나라의 규칙을 그대로 받는 방식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셋째, 방법은 섭외 재판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규칙 대접(规则对接)과 상호 참조다. 조문은 일방적 적용이 아니라 맞물림을 말한다.

넷째, 목표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의 개선이다. 조문이 든 성질은 공평, 합리, 포용, 개방 네 가지다.

다섯째, 마지막 문장은 다양성의 보호를 든다. 인공지능 생태계의 다양성과 인류 문명의 다양성을 함께 적는다.

조문은 국제재판관할의 기준을 새로 세우지 않는다. 준거법의 결정 방법도 적지 않는다. 원문은 알맞게 심리하라고만 정한다.

실무 포인트

국경을 넘는 서비스를 하는 기업은 데이터의 흐름을 그림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어떤 데이터가 어디서 모여 어디로 가는지, 어떤 근거로 이전하는지를 문서로 남긴다. 분쟁이 생기면 이 문서가 첫 자료가 된다.

계약서의 관할과 준거법 조항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모델 제공 계약과 데이터 제공 계약은 분쟁의 성질이 다르다. 한 조항으로 둘을 덮으면 뒤에 다툼이 커진다.

법원은 섭외 사건의 심리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 법의 확인, 번역, 증거의 국외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

해외 모델을 들여와 쓰는 기업은 공급자의 학습 자료 내역을 계약으로 확보해 두는 편이 낫다. 침해 주장이 들어오면 그 내역이 첫 방어 자료가 된다. 자료가 국외에만 있으면 확인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한국과의 비교

한국은 국제재판관할을 국제사법 제2조로 다룬다. 사건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한국 법원이 관할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중국의 이 조문은 관할 기준을 다루지 않고 재판과 교류의 방향만 정한다.

데이터의 국외 이전은 한국도 규율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이 이전의 요건을 정한다. 이 규정은 행정 규제의 성격을 가진다. 제24조는 규제가 아니라 법원의 업무 방향을 정한 문건이다.

문서의 성격도 다르다. 한국에는 대법원이 특정 기술 분야의 재판 방향을 정해 공개한 예가 흔하지 않다. 중국의 의견은 최고 법원이 재판 규칙과 업무 메커니즘을 한 문건에 함께 담는다.

국제 협력의 무게도 다르다. 한국 법원의 국제 교류는 주로 사법 행정과 연구의 영역에 머문다. 중국의 이 조문은 국제 교류를 재판 업무의 방향으로 문건에 적어 넣는다.

남은 쟁점

조문은 규칙 대접(规则对接)의 대상과 절차를 정하지 않는다. 어느 나라, 어느 기구와 무엇을 맞출지가 빈칸이다.

외국 판결의 승인과 집행도 다루지 않는다. 인공지능 침해에 관한 외국 판결이 중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는 이 의견 밖의 문제로 남는다.

국경 간 증거 조사의 방법도 적혀 있지 않다. 모델의 학습 자료가 국외 서버에 있을 때 어떤 절차로 확인하는지는 앞으로 쌓일 실무를 기다려야 한다.

데이터 국경 간 분쟁에서 어떤 법을 쓸지도 빈칸이다. 데이터가 놓인 곳의 법과 이용자가 있는 곳의 법이 부딪힐 수 있다. 조문은 알맞은 심리라는 방향만 제시한다.

6. 장 정리

제5부분은 규칙이 아니라 규칙을 만들어 갈 방법을 정한다. 제21조는 분쟁을 법원 밖에서 먼저 거르고, 제22조는 법원 안에서 잣대를 맞추고, 제23조는 행정과 업계로 손을 뻗고, 제24조는 국경 밖과 잇는다. 네 조를 이으면 예방에서 통일로, 협작에서 국제 교류로 이어지는 한 줄이 된다.

이 부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발표문이 밝힌 그대로다. 의견 하나로 모든 인공지능 사건 유형을 담을 수 없다는 인정이다. 합의가 어려운 문제는 빈칸으로 남겼고, 조건이 익으면 다시 밝히겠다고 적었다. 제급관할(提级管辖)과 안례고(案例库)는 그 빈칸을 판결로 채우는 통로이고, 사법건의(司法建议)는 판결이 닿지 않는 곳에 손을 대는 통로다.

읽는 사람에게 남는 실무의 결론은 간단하다. 조문 24개만 읽어서는 부족하다. 앞으로 안례고(案例库)에 어떤 인공지능 사건이 들어가는지, 어느 법원이 어떤 사건을 끌어올려 재판하는지, 어떤 사법건의(司法建议)가 어느 부처로 가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규칙의 실제 모습은 그 흐름 속에서 드러난다.

APPENDIX 부록 1

부록 1. 최고인민법원 사법지침의 '여백(留白)' 전략과 규제 입법 전망

합의가 어려운 쟁점을 비워 둔 여백(留白) 처리의 뜻과 앞으로의 입법 전망

1. 여백(留白)이란 무엇인가

최고인민법원은 의견(意见)을 내면서 정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스스로 밝혔다. 기자회견 발표문이 그 태도를 한 구절로 적었다. 「对于目前难以形成共识的问题，《意见》做了留白处理」. 지금 합의가 어려운 문제는 여백(留白)으로 남겼다는 뜻이다. 뒤에 붙은 구절은 「待进一步积累经验，条件成熟时再通过适当方式作出明确」이다. 경험이 더 쌓이고 조건이 익으면 알맞은 방식으로 밝히겠다는 말이다.

여백(留白)은 그림에서 종이의 빈 곳을 그대로 두는 기법을 가리키던 말이다. 문건에서는 규정을 두지 않은 상태를 하나의 선택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쓴다. 규칙을 만들지 못해 빠뜨린 것이 아니다. 만들지 않기로 정했다는 말이다.

답기자문(答记者问)은 그 사정을 더 구체적으로 적었다. 초안을 만들고 논증하는 과정에서 견해 차이가 컸다고 밝혔다. 원문은 「意见分歧很大，认识还有待进一步深化」다. 인식이 더 깊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意见》对这两个问题暂不作规定」, 두 문제는 당분간 규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발표문은 같은 취지를 제5부 설명에서도 되풀이한다. 「《意见》不可能涵盖所有人工智能案件类型」이라고 적었다. 의견이 모든 인공지능 사건 유형을 담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많은 문제는 사법 실천이 더 탐색해야 한다고 이어 붙였다. 여백(留白)은 문건의 결함이 아니라 문건이 밝힌 설계다.

여백(留白)은 재판을 멈춘다는 뜻이 아니다. 비워 둔 쟁점이 걸린 사건이 들어와도 법원은 판단해야 한다. 법관은 민법전과 저작권법의 일반 규정으로 개별 사건을 가린다. 달라지는 것은 전국에 통하는 통일된 기준이 아직 없다는 사정이다. 같은 쟁점을 두고 지역마다 다른 판단이 나올 여지가 남는다.

2. 무엇을 비워 두었나

답기자문(答记者问)이 이름을 붙여 비워 두었다고 밝힌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인공지능 생성 내용의 저작물성(可版权性)이다. 사람이 아니라 모델이 만들어 낸 결과물을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다. 둘째는 허락 없는 학습의 성질이다. 답기자문(答记者问)은 이를 「未经许可使用他人作品训练人工智能大模型的定性问题」라고 적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남의 작품을 대규모 모델 학습에 쓰는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다.

두 쟁점은 서로 이어져 있다. 앞의 것은 인공지능이 내놓은 결과물에 권리가 생기는지를 묻는다. 뒤의 것은 인공지능에 넣는 재료에 남의 권리가 미치는지를 묻는다. 산업의 입구와 출구가 함께 비어 있는 셈이다.

의견이 저작권 문제를 모두 피한 것은 아니다. 제12조는 생성 내용이 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의 책임 배분을 정한다. 인공지능 서비스 유형과 업종 특성, 훈련 데이터 출처(训练数据来源)를 고려한다. 각 당사자의 참여도와 취한 필요 조치, 이익 상황도 함께 본다. 그 위에서 개발자와 제공자, 사용자의 책임을 가른다. 침해가 성립한 뒤의 책임은 정하되, 학습 행위 자체의 성질은 정하지 않았다.

인격권 쪽에서는 학습 재료를 정면으로 다룬 조문이 있다. 제4조는 목소리를 훈련어료(训练语料)로 쓰는 행위를 규율한다. 동의 없이 자연인의 목소리를 학습에 써서 식별 가능한 합성 음성을 만들면 음성 권익 침해로 본다. 제6조는 모델 학습을 위해 이미 합법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정한다. 합리적 범위에 있고 본인이 명확히 거절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침해로 보지 않는다. 목소리와 개인정보는 정하고 저작물은 비워 둔 대비가 뚜렷하다.

데이터 쪽도 마찬가지다. 제16조는 개발자가 합법적으로 얻은 데이터의 권익을 보호한다. 편집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데이터 집합은 저작권법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으로 보호한다. 데이터를 가진 쪽의 권리는 이렇게 정리했다. 그 데이터에 담긴 남의 작품을 학습에 쓸 수 있는지는 남겨 두었다.

원문이 정하지 않은 것은 더 있다. 답기자문(答记者问)은 인공지능 제품(人工智能产品)의 범위를 밝혔다. 제품품질법(产品质量法)의 제품 정의에 따라 실물을 매개로 하

는 것으로 한정한다. 실물이 없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제외한다. 서비스형 인공지능의 손해는 제3조의 과실책임 원칙과 제7조의 통지 후 조치 의무로 다룬다. 제품책임(产品责任)의 무거운 틀로는 묶지 않는다.

자율주행(自动驾驶) 조문인 제11조도 비슷하다. 원문은 자동주행 자동차와 보조주행(辅助驾驶) 기능 자동차를 나눈다. 그러나 자동화 등급의 숫자를 책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등급별 경계선은 앞으로 개별 사건이 그려야 한다.

반대로 확실히 정한 것도 있다. 제13조는 오픈소스 개발자와 제공자의 책임 면제 여지를 밝혔다. 무료로 코드 모듈을 공개하고 기능과 안전 위험을 공개 설명했다면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여백(留白)은 문건 전체의 태도가 아니라 특정 쟁점에 한정된 선택이다.

합의가 이루어진 쟁점과 견주면 차이가 뚜렷하다. 제7조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풍항 규칙(避风港规则)을 준용한다. 권리자의 통지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진다는 구조다. 답기자문(答记者问)은 이 규정에 관해 「在征求意见过程中，各方一致赞同」이라고 적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각 방면이 한목소리로 찬성했다는 뜻이다. 합의가 된 곳은 규정을 두고, 합의가 없는 곳은 비워 두었다. 문건은 그 기준을 숨기지 않고 밝혔다.

3. 왜 비워 두었나

첫째 이유는 산업의 단계다. 답기자문(答记者问)은 귀책 원칙을 설명하며 이렇게 적었다. 「避免在人工智能技术与产业尚处发展初期就承担过重责任而影响创新的积极性」. 기술과 산업이 아직 발전 초기인데 무거운 책임을 지우면 혁신 의욕이 꺾인다는 판단이다. 생성물과 학습에 관한 판단은 산업 전체의 비용 구조를 한 번에 바꾼다. 그런 판단을 지금 내리지 않는 선택은 이 서술과 결이 같다.

둘째 이유는 정책 목표다. 의견 서두는 문건의 목적을 밝힌다. 신질생산력(新质生产力)의 빠른 발전을 사법으로 뒷받침하는 데 둔다. 기본 원칙은 발전과 안전을 함께 중시하라고 정한다. 원문은 「坚持发展和安全并重」이다. 포용심신(包容审慎)의 태도로 권익 보호와 산업 발전 사이의 균형을 잡으라고도 정한다. 한쪽으로 기운 결론을 서둘러 내리는 일은 이 원칙과 맞지 않는다.

셋째 이유는 입법 상황이다. 발표문은 「目前我国尚未出台专门的人工智能法」이라고 적는다. 중국에는 아직 단일 인공지능법이 없다. 그래서 의견은 현행 법률을 충분히 쓰는 원칙을 택했다. 원문 표현은 「用足用好现行法律规定」이다. 최고인민법원이 법률의 빈 곳을 재판규칙으로 먼저 메우면 뒤에 올 입법과 어긋날 수 있다. 입법이 다룰 문제를 남겨 두는 편이 충돌을 줄인다.

넷째 이유는 판례를 쌓는 방식이다. 답기자문(答记者问)은 실천에서 규율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경험을 모아 재판규칙을 다듬어 합의를 이루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원문은 「努力推动形成共识」다. 의견 제22조는 그 통로를 제도로 만든다. 중대한 이익이 걸린 사건, 어렵고 복잡한 신유형 사건이 대상이다. 규칙을 세우는 의미가 있는 사건도 포함한다. 이런 사건은 상급 법원이 제급관할(提级管辖)로 올려 심리한다. 인민법원 안례고(人民法院案例库)를 써서 사례 지도를 강화한다. 비워 둔 자리를 개별 사건의 판단으로 채우고, 그 판단을 다시 모으는 구조다.

여백(留白)에는 값이 따른다. 기업은 두 쟁점에 관해 미리 답을 얻지 못한다. 학습 데이터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생성물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사건이 붙기 전에는 불확실하다.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대신 규칙이 굳는 시점을 늦춘 것이다. 문건은 그 값을 치르기로 선택했다.

4. 중국 인공지능 규제 체계에서 이 의견이 놓인 자리

중국의 인공지능 규제는 행정 규범이 먼저 쌓였다.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이 생성형 서비스의 기본 축이다. 인터넷 정보서비스 딥합성 관리규정(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은 합성 기술을 다룬다. 인터넷 정보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규정(互联网信息服务算法推荐管理规定)은 추천 알고리즘을 다룬다. 인공지능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방법(人工智能生成合成内容标识办法)은 생성 콘텐츠에 표시를 붙이게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4조에서 자동화 의사결정을 정한다. 제27조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한다.

의견은 이 규범들과 층이 다르다. 서두가 밝힌 근거는 법률이다. 민법전(民法典)과 네트워크안전법(网络安全法), 데이터안전법(数据安全法)이 들어간다. 저작권법과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소비자권익보호법(消费者权益保护法)도 들어간다.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사소송법이 뒤를 잇는다. 행정 규장이나 규범성 문건은 근거 목록

에 없다. 행정 규범이 사업자에게 사전 의무를 지운다면, 의견은 재판의 기준을 정한다. 분쟁이 법원에 왔을 때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다룬다.

두 층이 만나는 지점도 있다. 제19조는 허위소송(虚假诉讼)의 수단을 열거한다. 그 가운데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生成合成内容标识)를 삭제하거나 고치는 행위가 들어 있다. 행정 규범이 붙이게 한 표시가 소송에서 증거의 진실성을 재는 기준이 된다. 표시 의무를 어긴 결과가 과태료를 넘어 소송상 제재로 이어진다.

의견은 하급 법원을 향한 문건이기도 하다. 서두는 각급 인민법원이 인공지능 분쟁 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하도록 지도한다고 밝힌다. 사업자를 직접 규율하는 행정 규범과 수신자가 다르다. 사업자에게는 재판의 결과를 통해 간접으로 영향이 미친다.

2022년 문건과의 차이도 짚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공지능 사법응용을 규범화하고 보강하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 문건은 법원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다룬다. 재판 보조와 법원 업무의 정보화가 대상이다. 2026년 의견은 방향이 반대다. 사회에서 생긴 인공지능 분쟁을 법원이 어떻게 재판할 것인지를 다룬다. 앞의 것이 법원 안을 향한 규범이라면, 뒤의 것은 법원 밖을 향한 재판규칙이다. 발표문은 뒤의 것을 최고재판기관이 낸 첫 인공지능 사법재판규칙 문건이라고 적었다. 원문 표현은 「首部由国家最高审判机构发布的涉人工智能司法裁判规则文件」이다.

5. 다른 나라와의 구조 비교

유럽연합은 입법이 앞선다. 인공지능법(EU AI Act)은 위험 등급을 나누고 사전에 의무를 지운다.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요건을 갖추게 하는 방식이다. 2026년 6월 채택되고 7월 발효된 디지털 옴니버스 규정이 적용 시점을 조정했다. 문서 번호는 Regulation (EU) 2026/1744이다. 제50조의 투명성 의무는 2026년 8월 2일부터 그대로 적용된다. 챗봇 고지와 딥페이크 표시, 합성 콘텐츠 식별 표시가 의무가 되었다. 부속서 III의 고위험 인공지능은 2027년 12월 2일로 적용이 미뤄졌다. 기존 규제 제품에 내장된 부속서 I의 고위험 인공지능은 2028년 8월 2일로 미뤄졌다. 감독은 유럽 인공지능 사무국과 회원국 감독기구가 맡는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통일 인공지능법이 아직 없다. 규율은 주법과 법원의 판단으로 나뉜다. 캘리포니아주는 프론티어 AI 투명성법(SB 53)을 202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콜로라도주는 규제 부담을 낮춘 개정법을 2026년 5월 공포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주마다 기준이 다르고, 사업자는 여러 기준을 함께 맞춘다.

한국은 기본법이 중심이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025년 1월 21일 공포되었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이다. 진흥과 신뢰 기반을 함께 담은 틀이다.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과 안전성 검증은 시행령으로 구체화되었다. 법원이 인공지능 분쟁의 재판규칙을 문건으로 낸 예는 아직 없다. 대신 법원행정처가 2026년 2월 20일부터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를 운영한다.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인공지능이 지어낸 사건번호를 조회할 수 있다.

네 곳의 구조는 규칙을 만드는 주체와 시점에서 갈린다. 유럽연합은 입법기관이 시장 진입 전에 정한다. 미국은 주 의회와 법원이 지역과 사건에 따라 나누어 정한다. 한국은 국회가 기본법으로 틀을 정하고 법원이 실무로 뒤를 받친다. 중국은 행정 규범이 사전 의무를 쌓았다. 그 위에 최고 재판기관이 재판규칙을 먼저 내고 단일 입법을 뒤로 미뤘다.

같은 문제를 다루는 자리도 나라마다 다르다. 합성 콘텐츠 표시를 예로 들 수 있다. 유럽연합은 규정 제50조로 표시를 사업자의 의무로 만들었다. 중국은 표시방법이라는 행정 문건으로 의무를 두고, 그 표시를 고치는 행위를 사법이 제재한다. 규제의 무게가 어느 기관에 실리는지가 갈린다. 각국의 적용 시점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우열을 말하기는 이르다.

6. 입법 전망

중국의 다음 단계는 문건 자체가 가리킨다. 발표문은 십오오(十五五) 규획 강요의 과제를 인용한다. 「探索建立人工智能生成物权利归属和开发者经营者使用者权责认定规则」이다. 인공지능 생성물의 권리 귀속을 정하라는 과제다. 개발자와 경영자, 사용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리는 규칙도 세우라고 한다. 국무원이 낸 지식재산권 보호와 운용 십오오 규획(十五五规划)도 같은 방향이다. 「完善适应人工智能发展的版权制度」, 인공지능 발전에 맞는 저작권 제도를 다듬으라고 정한다. 비워 둔 두 쟁점이 상위 계획에는 이미 과제로 올라 있다.

단일 인공지능법에 대해서는 조심해서 말해야 한다. 발표문이 확인해 주는 사실은 하나다. 아직 전문 인공지능법이 없다는 것이다. 종합 입법이 연구 단계에 있다는 내용은 검색 보고로 전해진다. 공포된 법률안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이 해설서는 그 수준에서 멈춘다.

문건의 형식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번 문건은 법발(法发) 번호를 단 의견이다. 발표문도 답기자문(答记者问)도 이를 사법해석(司法解释)이라 부르지 않는다. 답기자문(答记者问)은 조건이 익으면 알맞은 방식으로 밝히겠다고 했다. 원문은 「通过适当方式作出明确」다. 알맞은 방식이 무엇인지는 문건이 말하지 않는다. 사법해석(司法解释)일 수도 있고, 안례고(案例库)에 들어가는 사례일 수도 있다.

그 사이를 메우는 장치는 제22조와 제23조다. 제급관할(提级管辖)로 올라간 사건이 규칙을 세운다. 안례고(案例库)가 그 판단을 하급 법원으로 퍼뜨린다. 사법건의(司法建议)와 부처 협력은 방향이 다르다. 재판에서 드러난 문제를 행정 규범 쪽으로 넘긴다. 재판과 감독이 서로 재료를 주고받는 구조다.

쟁점이 무르익는 속도는 분야마다 다르다. 인격권 침해는 피해가 눈에 보이고 사건이 빨리 쌓인다. 생성물의 권리 귀속은 산업 구조와 국제 논의에 함께 걸린다. 앞의 것이 먼저 규칙이 되고 뒤의 것이 늦어진 배경이 여기에 있다.

다음에 규정될 쟁점의 후보는 비워 둔 두 가지다. 생성물의 저작물성과 학습 이용의 성질이 먼저다. 실물이 없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책임 구조도 후보에 든다. 답기자문(答记者问)이 제품 개념을 좁게 잡겠다고 밝힌 만큼, 남은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가 이어서 문제가 된다. 자동화 등급에 따른 자율주행(自动驾驶) 책임의 경계선도 아직 열려 있다.

7. 한국 실무에 주는 시사점

첫째, 비어 있는 자리는 계약으로 메워야 한다. 중국에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한국 기업은 확립된 답을 얻지 못한다. 생성물을 사업에 쓰는 기업도 사정이 같다.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이용 범위를 계약서에 적어 둔다. 생성물의 권리 귀속과 분쟁 시 비용 부담도 함께 정해 둔다. 법이 정하지 않은 자리를 당사자 합의가 대신한다.

둘째,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12조는 개발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침해가 아니라고 다툴 때 훈련 데이터 출처를 내야 한다. 훈련 과정 기록과 모델 운행 방식도 대상이다. 기록이 없으면 다툴 재료가 없다. 학습에 쓴 데이터의 취득 경로와 시점을 정리하는 일은 소송 전에 끝내야 한다.

셋째, 소송에서 인공지능을 쓸 때의 확인 의무는 두 나라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 의견 제19조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소송 자료를 다룬다. 소송 문서와 사례 검색 보고서를 내기 전에 확인하게 한다. 인용한 법률과 사법해석(司法解释),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 살펴야 한다. 제출할 때는 인공지능을 썼다는 사실을 밝힌다. 한국에서는 법원이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를 열었다. 변호사의 진실의무를 근거로 한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다. 규정의 형식은 달라도 대리인이 결과에 책임진다는 원칙은 같다.

넷째, 학습 이용 문제는 한국도 열려 있다.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은 입법이 끝나지 않았다.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견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판단을 미룬 쟁점과 한국이 결론을 내지 못한 쟁점이 겹친다. 중국 법원이 앞으로 내놓을 개별 판단은 한국 논의에서 참고 자료가 된다. 그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쪽에서도 확정된 기준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섯째, 여백(留白)이라는 방식 자체를 볼 필요가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정하지 못한 것을 정하지 못했다고 공개했다. 무엇을 왜 남겼는지를 문건과 답기자문(答记者问)에 적었다. 규칙을 만드는 쪽이 자신의 한계를 밝히는 방식이다. 규칙을 기다리는 쪽은 그만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안다. 한국에서 인공지능 관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도 같은 태도가 쓸모 있다.

APPENDIX 부록 2

부록 2. 중·한 인공지능 사법 및 증거 법칙의 입체적 비교

증거능력, AI 환각 대처, 딥페이크 구제를 중국, 한국, 인도, 영어권과 견주어 본다

1. 비교의 틀: 왜 네 나라를 나란히 놓는가

인공지능이 법정에 들어오는 길은 두 유형다. 하나는 다툼의 대상으로 들어온다. 얼굴 합성 영상, 학습 데이터, 자율주행(自动驾驶) 사고가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송의 도구로 들어온다. 준비서면 초안, 판례 검색 보고서, 증거로 낼 화면 기록이 그것이다. 이번 의견(意见)은 두 유형를 한 문건에서 함께 다룬다. 앞의 유형는 제3조부터 제16조까지가, 뒤의 유형는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가 맡는다.

비교 대상을 중국과 한국, 인도로 잡는 이유는 세 나라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성문 규정과 사법 문건으로 미리 기준을 세운다. 한국은 법관의 자유심증과 변호사 윤리로 사후에 조율한다. 인도는 상급심 판결 하나로 강한 원칙을 선언한다. 같은 문제를 두고 규범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갈린다.

여기에 미국과 영국, 호주를 곁들인다. 세 나라는 새 법률보다 법원 자신의 규칙과 지침으로 대응했다.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 영국 사법부 지침, 호주 연방법원 실무지침이 그 예다. 이 방식은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도 법정 질서를 지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한국이 당장 참고하기 좋은 자리도 이 지점이다.

비교의 축은 두 개다. 첫째 축은 증거다. 위법하게 모은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만든 기록을 법정에서 어디까지 받아 주는가. 둘째 축은 제재다. 거짓 판례를 낸 사람에게 무엇을 묻는가. 두 축은 서로 맞물린다. 증거의 문턱이 낮은 나라일수록 제재의 무게가 뒤로 밀린다.

비교에는 한계도 있다. 중국의 의견은 법발(法发) 번호를 받은 지도성 문건이다. 판결 이유에서 법조문처럼 직접 인용하는 근거가 아니다. 한국의 실무 지침도 법률이 아니다. 인도의 판결은 그 나라 사법 체계 안에서 선례로 작동한다. 규범의 무게가 서로 다른 자

료를 나란히 놓는 셈이다. 그래서 이 부록은 결론의 우열을 가리지 않는다. 같은 문제를 각자 어디에서 붙잡는지를 본다.

2. 위법하게 모은 데이터와 AI 채록물의 증거능력

중국 민사소송에는 위법수집증거를 걸러 내는 명문 기준이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법 사법해석(司法解释) 제106조가 그 자리다. 이 조문은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거나 얻은 증거를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지 못하게 한다. 타인의 합법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법(严重侵害他人合法权益), 법률의 금지규정을 어기는 방법(违反法律禁止性规定), 공서양속을 심각하게 어기는 방법(严重违背公序良俗)이다.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걸리면 그 증거는 증거능력을 잃는다.

이 기준은 인공지능 시대에 곧바로 문제가 된다. 동의 없이 긁어모은 개인정보 묶음, 몰래 켜 둔 녹음을 인공지능으로 정리한 채록물, 상대방 시스템을 우회해 뽑아낸 데이터가 모두 후보다.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이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의 데이터를 얻는 행위를 금지하는 만큼, 그렇게 얻은 데이터는 금지규정 위반이라는 두 번째 문턱에 걸릴 여지가 크다.

이번 의견 제18조 (十八)는 이 위에 심사 기준을 한 겹 더 얹는다. 조문은 「对电子数据生成、收集、存储、传输过程的真实性、完整性进行重点审查」라고 적는다. 전자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모이고 저장되고 옮겨지는 과정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집중 심사하라는 뜻이다. 기술의 종류에 따라 심사의 초점도 나눈다.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는 원시 데이터의 출처와 정제 규칙, 분석 방법의 과학성을 본다. 블록체인 존증 증거는 체인에 올리기 전 데이터의 진실성과 기술 플랫폼의 신뢰성을 본다.

증거를 모으는 단계도 의견이 함께 다룬다. 제17조 (十七)는 법원이 소송 지휘와 석명에 더 힘쓰도록 정한다. 당사자가 스스로 모을 수 없는 증거는 법원에 조사 수집을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수집한다. 핵심 기술을 고정하려고 증거보전을 신청하면 법원이 제때 심사한다. 서증과 전자 데이터를 쥔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이 받아들여질 길도 열어 둔다. 한국의 문서제출명령과 문서제출 거부의 효과에 대응하는 자리다.

인공지능 생성물을 침해 증거로 낼 때의 기준도 같은 조에 있다. 법원은 프롬프트 설계와 그것이 결과에 미친 영향, 생성물과 권리 작품의 유사 정도, 반복 시험의 일치 여부를 함께 본다. 모델 훈련과 알고리즘 설계, 생성물 필터링 장치도 판단 재료가 된다. 같은 프롬프트를 여러 번 넣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라는 요구가 핵심이다. 한 번 뽑은 화면 하나로는 부족하다.

한국은 구조가 다르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자유심증주의를 정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민사소송법에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같은 위법수집증거 배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실무는 증거능력을 넓게 인정하고, 수집 과정의 위법은 증명력 평가와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갈라 다룬다. 몰래 녹음한 대화를 민사 법정에 낸 사건에서 증거로 받아 주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는 따로 문제 삼는 방식이 그 예다.

한국에서도 위법 수집이 아무 뜻이 없지는 않다. 수집 과정이 위법하면 그 증거의 신빙성을 낮게 볼 여지가 생긴다. 상대방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할 수 있다. 형사 처벌 규정이 있는 수집 방법이라면 그 절차가 따로 진행된다. 증거능력의 문을 닫지 않는 대신, 뒤따르는 책임으로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다.

두 나라의 차이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다. 중국은 문 앞에서 거른다. 한국은 문 안에서 무게를 잰다. 중국 방식은 예측 가능성이 높지만 진실 발견을 놓칠 위험이 있다. 한국 방식은 진실 발견에 유리하지만 위법 수집을 사실상 용인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인공지능이 증거 조작을 쉽게 만든 지금, 두 방식의 거리는 좁혀지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3. 소송 안의 AI 환각(AI幻觉)을 다루는 세 가지 모델

첫째는 인도의 무관용 모델이다. 인도 대법원은 2026년 7월 Pooja Ramesh Singh 사건에서 인공지능이 지어낸 가짜 판례에 무관용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도산 절차의 하급 심급 결정에 존재하지 않는 판례가 인용된 사실이 상고심에서 드러난 사안이다. 재판부는 허위 판례에 근거한 재판을 유효한 판단으로 보지 않고 원심을 파기했다고 알려져 있다. 검증 없이 인용한 대리인의 행위는 전문직 비위로 다루고, 변호사 단체에 징계 기준을 마련하도록 명했다고 전해진다. 2026년 9월에는 세관 과징금 처분에 같은 법리를 적용해 처분과 고등법원 결정을 취소한 후속 사건이 보도되었다.

이 모델의 힘은 결과가 한 가지뿐이라는 데 있다. 가짜가 하나라도 섞이면 그 위에 쌓은 판단 전체가 무너진다. 대리인 개인의 고의나 과실을 따지기 전에 절차를 되돌린다. 사법 신뢰를 지키는 데는 빠르지만, 상대방 당사자까지 절차를 다시 밟는 부담을 진다.

둘째는 중국의 성실 의무와 주관적 악의 제재 모델이다. 의견 제19조 (十九)는 세 층으로 짜였다. 첫 층은 허위소송(虚假诉讼)이다. 조문은 인공지능의 자율 학습과 자율 결정 특성을 이용해 거짓 증거를 얻는 방법을 열거한다. 생성 합성 콘텐츠 표시를 지우거나 고치는 행위, 특정 지시어 입력, 선택적 결과 제시, 대항적 간섭이 그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사건의 기본 사실을 꾸며 소송을 걸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고 정상의 경중에 따라 벌금과 구류를 부과한다. 범죄가 되면 형사책임을 묻는다. 근거 법률은 민사소송법 제115조와 형법의 허위소송죄(虚假诉讼罪)다.

둘째 층은 증거 위조다. 소송 참여인이나 다른 사람이 인공지능으로 증거를 위조해 심리를 방해하면 민사소송법 제114조로 처리한다. 벌금과 구류가 따르고 범죄가 되면 형사책임으로 이어진다. 셋째 층은 확인과 설명 의무다. 소송 문서와 판례 검색 보고서를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면, 제출 전에 관련 법률과 사법해석(司法解释)과 판례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진지하게 확인해야 한다. 제출할 때는 인공지능을 보조로 썼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중국 모델의 특징은 제재 수단의 성질에 있다. 벌금과 구류는 형벌이 아니라 법원이 소송 질서를 지키려고 쓰는 강제 조치다.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는 중에 결정으로 바로 부과한다. 별도의 형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그 위에 형법의 허위소송죄(虚假诉讼罪)가 얹힌다. 소송 질서 위반이 곧바로 사람의 신체 자유에 닿는 구조다. 한국 민사소송에는 이에 대응하는 수단이 없다.

답기자문(答记者问)은 이 층위의 취지를 분명히 한다. 인공지능은 보조 도구일 뿐이므로, 소송 참여인은 「AI幻觉」이나 기술 중립을 이유로 자기 책임을 벗지 못한다고 적는다. 최고인민법원은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판례 사건이 이미 여러 건 발견되었다고 밝힌다. 2026년 1월 언론이 이런 사건을 집중 보도했고, 인민법원 안례고(人民法院案例库)에도 관련 사례가 입고되었다고 설명한다. 베이징시 통주구 인민법원(通州区人民法院)이 심리한 지분 관련 사건에서 대리인이 확인하지 않은 가짜 판례를 낸 사안이 안례고(案例库)에 실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규정이 먼저 있고 사건이 뒤따른 것이 아니라, 사건이 먼저 있고 규정이 뒤따랐다.

셋째는 한국의 비례적 통제 모델이다. 근거는 민사소송법의 신의성실 원칙과 변호사법상 진실의무다. 가짜 판례를 낸 대리인에게는 소송비용 부담, 변론 제한, 변호사 단체 징계 같은 수단이 단계적으로 붙는다. 법원행정처는 2026년 2월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그 자리에서 걸러 내는 도구다. 제재보다 예방을 앞에 둔 접근이다.

세 모델은 증명의 부담도 다르게 나눈다. 인도 모델은 가짜 판례의 존재만 확인하면 된다. 인용한 사람의 속마음을 캘 필요가 없다. 중국 모델은 조문이 인위적 간섭이나 오도의 방법을 열거한다. 표시 삭제와 특정 지시어 입력 같은 행위를 밝혀야 무거운 제재로 간다. 한국 모델은 대리인이 기울여야 할 주의의 정도를 사건마다 따진다. 사실 인정에 품이 제일 많이 드는 쪽이 한국이다.

세 모델은 제재의 무게가 아니라 제재의 지점이 다르다. 인도는 절차의 효력을 무너뜨린다. 중국은 사람의 신체와 재산을 직접 겨눈다. 한국은 대리인의 직업적 책임으로 돌린다.

4. 영어권 세 나라의 대응

미국은 기존 규칙을 그대로 쓴다.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는 서면에 서명한 변호사가 법적 근거의 존재를 보증하도록 정한다. 인공지능의 오류라는 해명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2026년에는 원고와 피고 양측 대리인이 모두 가짜 판례를 낸 사건에서 법원이 변론 자격 정지와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보도되었다. 가짜 판례 여러 건을 낸 측에 상대방 소송비용 배상을 명한 사례도 전해진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2026년 8월 법원 제출 서면의 인용 판례 검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은 법관을 향한 지침을 냈다. 사법부가 2025년 10월 개정한 사법관용 인공지능 지침이 그것이다. 판사는 자기 이름으로 나가는 판단에 개인적 책임을 진다. 공개형 챗봇에 사건 정보를 넣는 행위는 금지된다. 본인소송 당사자의 서면에 가짜 판례가 섞였는지 살필 주의의무도 법관에게 놓인다.

호주 연방법원은 2026년 4월 생성형 인공지능 실무지침을 냈다. 법원에 내는 문서는 변호사가 직접 검증해야 한다. 필요하면 법원이 인공지능 도구 사용 내역의 공개를 명할 수 있다. 허위 인용으로 낭비된 비용은 변호사 개인에게 물린다. 답기자문(答记者问)

도 이런 흐름을 알고 있다. 어떤 나라는 지침을 따로 내어 대리인이 법정 제출 자료의 정확성을 담보할 책임을 강조한다고 적는다.

세 나라의 공통점은 두 가지다. 첫째, 새 법률을 기다리지 않았다. 이미 있는 규칙과 법원의 권한으로 대응했다. 둘째, 책임의 자리를 대리인 개인에게 두었다. 도구가 틀렸다는 해명은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중국 의견 제19조가 「不得以"AI幻觉"、技术中立为由免除自身的法律责任」이라는 취지를 답기자문(答记者问)에서 밝힌 것과 방향이 같다. 인공지능 환각이나 기술 중립을 이유로 자기 책임을 벗지 못한다는 뜻이다.

5. 항목별 비교표

구분 / 중국 / 한국 / 인도 위법수집증거 규율 방식 / 민사소송법 사법해석(司法解释) 제106조의 세 요건에 걸리면 증거능력 배제 /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아래 증거능력을 넓게 인정하고 증명력과 별도 책임으로 조율 / 비교 자료 없음 인공지능 증거의 심사 기준 / 의견 제18조가 전자 데이터의 생성·수집·저장·전송 과정과 기술별 초점을 규정 / 별도 명문 기준 없음, 개별 사건의 증명력 판단에 맡김 / 비교 자료 없음 가짜 판례 제출의 1차 효과 / 청구 기각과 벌금·구류 / 소송비용 부담과 변론상 불이익 / 해당 재판의 효력 부정과 파기환송 근거 규범의 형식 / 최고인민법원 의견과 민사소송법 제114조·제115조, 형법 허위소송죄(虚假诉讼罪) / 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과 변호사법상 진실의무 / 대법원 판결로 선언된 원칙 확인·설명 의무 / 의견 제19조가 제출 전 확인과 인공지능 사용 사실 설명을 명문화 / 명문 규정 없음, 윤리 규범과 실무 지침으로 대응 / 판결이 대리인의 검증 책임을 확인 예방 장치 / 인민법원 안례고(人民法院案例库) 참조와 사례 입고 / 대법원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 변호사 단체 징계 기준 마련 명령 제재의 초점 / 행위자의 주관적 악의와 소송 질서 / 대리인의 직업적 주의의무 / 사법 판단의 효력

6. 딥페이크와 인격권 구제 비교

중국은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않는 구제 수단을 앞세운다. 인격권 침해 금지령(人格权侵害禁令)이다. 의견 제8조 (八)는 이 제도를 인공지능 사건에 쓰는 요건을 적는다. 침해가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될 것, 제때 막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이

요건이다. 법원은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지를 명할 수도 있다. 답기자문(答记者问)은 AI 환검(AI换脸)으로 만든 성적 허위 소문을 예로 든다. 근거는 민법전 제997조와 2022년의 관련 사법해석(司法解释)이다.

한국은 두 유형로 나뉜다. 민사에서는 가처분이 그 자리를 맡는다.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게시 금지와 삭제를 구한다. 형사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허위 영상물을 다룬다. 2024년 개정으로 소지와 구입, 저장, 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들어갔다. 제작죄의 법정형도 올랐고, 반포 목적 요건이 빠져 제작 자체를 처벌한다. 유통 단계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가 작동한다.

차이는 명령의 수신자에 있다. 중국의 금지령(禁令)은 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겨눈다. 모델을 돌리는 쪽에 서비스 중지를 명할 근거를 조문에 박아 두었다. 한국의 가처분은 게시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고, 플랫폼에 대한 조치는 정보통신망법의 행정적 절차를 거친다. 피해자가 빠르게 확산을 끊어야 하는 사건에서 이 차이는 몇 시간 단위로 나타난다.

요건의 문턱도 견주어 볼 만하다. 한국의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한다.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의 금지령(禁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앞세운다. 조문은 「不及时制止将使其合法权益受到难以弥补的损害」라고 적는다. 제때 막지 않으면 합법 권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는 말이다. 딥페이크처럼 퍼지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침해에 맞춘 기준이다.

표시 제도의 차이도 실무에 영향을 준다. 중국은 생성 합성 콘텐츠에 표시를 붙이도록 정하고, 의견 제19조는 그 표시를 지우거나 고치는 행위를 허위 증거 취득의 수단으로 명시한다. 표시가 있으니 표시를 지우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 한국에는 아직 합성 콘텐츠 표시를 일반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이 자리 잡지 않았다. 표시가 없으면 표시 훼손을 문제 삼을 수도 없다.

또 하나의 차이는 사망자 보호다. 중국은 민법전 제994조를 근거로 사망자의 성명과 초상, 명예가 침해되면 근친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다. 의견 제4조는 이를 「AI复活逝者」, 곧 인공지능으로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행위에 그대로 적용한다. 한국에는 사

망자의 인격권을 정면으로 규정한 조문이 없다. 유족의 경건감정 침해나 명예훼손 구성으로 우회한다.

7. 시사점

세 나라 비교의 실익은 사건이 아직 적은 지금에 있다. 제재 사례가 쌓인 뒤에 기준을 만들면 이미 늦다. 중국은 사건 몇 건과 언론 보도를 계기로 규정을 냈다. 한국도 같은 시기에 확인 서비스를 열었다. 남은 일은 확인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정하는 것이다.

법원이 볼 지점은 확인 의무의 명문화다. 의견 제19조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서면과 판례 검색 보고서에 대해 제출 전 확인과 제출 시 설명을 요구한다. 한국에도 대법원 예규나 재판예규 수준에서 같은 취지를 담을 여지가 있다.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는 좋은 출발이지만 확인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확인하지 않은 대리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미리 밝혀 두어야 예방 효과가 생긴다.

변호사가 볼 지점은 기록 관리다.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보면 제재는 가짜 판례 자체보다 검증을 건너뛴 사실에서 나온다. 인공지능이 뽑아 준 판례는 공식 판례집이나 법원 검색 서비스에서 원문을 열어 확인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중국에서 소송을 수행한다면 인공지능 사용 사실을 법정에 밝히는 절차까지 준비해야 한다. 밝히지 않은 사실 자체가 제재 사유가 될 수 있다.

기업이 볼 지점은 증거의 사전 설계다. 의견 제18조는 전자 데이터의 생성부터 전송까지 전 과정을 심사 대상으로 삼는다. 로그의 생성 시각과 저장 위치, 접근 권한 기록이 없으면 뒤늦게 만들 수 없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계약과 동의의 근거를 남기는 일도 같은 이유에서 중요하다. 부정한 수단으로 얻은 데이터는 중국 법정에서 증거능력 자체를 잃을 수 있다.

입법 쪽에서 볼 지점도 있다. 한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202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산업 진흥과 위험 관리에 초점을 둔다. 소송 절차 안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다룰지는 담고 있지 않다. 중국도 단일 인공지능법 없이 사법 문건으로 이 빈자리를 메웠다. 소송 절차의 규율은 산업 규제 법률이 아니라 소송법과 법원 규칙의 몫이라는 사실을 두 나라가 함께 보여 준다.

마지막은 균형의 문제다. 세 나라 가운데 어느 모델도 그대로 옮겨 오기는 어렵다. 인도식 무효화는 상대방까지 절차를 되돌리게 한다. 중국식 구류는 한국 민사소송의 제재 체계에 없는 수단이다. 한국이 지금 고를 수 있는 길은 확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의 효과를 소송비용과 징계로 촘촘히 잇는 쪽이다. 규범을 새로 만들기 전에, 이미 있는 신의성실과 진실의무가 인공지능 앞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먼저 적어 두어야 한다.

APPENDIX 부록 3

부록 3. 《关于依法审理涉人工智能纠纷案件的意见》 중한 대역 및 최고인민법원 답기자문(答记者问) 완역, 중국어 원문 전문

24개 조 한국어 완역, 답기자문(答记者问) 완역, 중국어 원문 전문

일러두기

부록 3은 네 부분으로 짜였다. 첫째는 의견 24개 조의 한국어 완역이다. 둘째는 2026년 9월 7일 최고인민법원 관련 부서 책임자 답기자문(答记者问)의 한국어 완역이다. 셋째는 최고인민법원 공식 사이트(court.gov.cn, 2026년 9월 7일 게시)에서 받은 중국어 원문 전문이다. 넷째는 같은 날 게시된 답기자문(答记者问)의 중국어 원문이다. 번역은 원문 보존을 앞세웠다. 중국 고유 법률용어는 우리말 뒤 괄호 안에 원문 한자를 붙였다. 해석에 다툼이 있을 때는 중국어 원문이 기준이다.

1. 의견 24개 조 한국어 완역

파발〔2026〕10호(法发〔2026〕10号) 최고인민법원의 인공지능 관련 분쟁 사건의 법에 따른 심리에 관한 의견(最高人民法院关于依法审理涉人工智能纠纷案件的意见)

당의 제20차 전국대표대회와 제20기 각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엄격하고 공정한 사법으로 신질생산력(新质生产力)의 신속한 발전을 서비스·보장하며, 각급 인민법원이 인공지능 관련 분쟁 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안보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보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화인민

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고, 인민법원 재판 업무의 실제와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제1부분 一、 전반적 요구(总体要求)

제1조 (一) 지도사상(指导思想)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시진핑 법치사상을 깊이 관철하며, 사이버 강국에 관한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인공지능이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중요한 추진 동력임을 깊이 인식하며, 발전과 안보를 병행하고 혁신 촉진과 법에 따른 거버넌스를 결합하는 것을 견지하여, 인공지능 관련 분쟁 사건을 법에 따라 공정하게 심리하고, 인공지능 기술 응용의 안전성, 신뢰성, 통제 가능성, 공정성 향상을 촉진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유력한 사법 서비스와 보장을 제공한다.

제2조 (二) 기본원칙(基本原则) 사람 중심(以人为本)을 견지한다. 사법재판의 선도적 역할을 발휘하여 인공지능이 인민의 복리를 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디지털 시대 민생 권익의 사법 보장을 확실하게 강화한다. 알고리즘 윤리, 알고리즘 규칙 등 인공지능 분야의 사법재판 규칙과 메커니즘 구축을 적극적이고 온건하게 모색·완비하며, 기존 법률 규정을 충분히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규칙 충돌, 사회적 위험, 윤리적 도전에 적정하게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체계 완비를 촉진하며, 알고리즘 차별의 예방과 제거에 중점을 두고, 자동화 결정에서 개인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법에 따라 보장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남용하여 인민 군중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규제하여 인공지능이 인민을 위하고 선을 향하도록(为民、向善) 촉진한다. 혁신 발전을 지원한다. 과학기술 혁신의 법칙과 인공지능 업계의 발전 실천을 존중하고, 법률 및 정책의 정신에 부합하고 기술 발전 법칙에 부합하는 사법재판으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을 지원한다. 신형 권익의 사법 보호 경로를 모색하고, 인공지능의 혁신 성과, 혁신 주체, 혁신 행위, 혁신 환경에 대한 보호 강도를 끊임없이 확대한다. 포용적이고 신중한(包容审慎) 태도로 권익 보호와 기술·산업 발전의 균형을 맞추고, 탐색을 장려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양호한 환경을 조성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독점 또는 부정당경쟁을 법에 따라 규제하고, 관련 주체가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이용할 권리의 평등, 기회의 평등, 규칙의 평등을 법에 따라 보

장하며, 중소기업 등 경영 주체 권익에 대한 평등한 보호를 강화한다. 인공지능 관련 분쟁 사건을 법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리함으로써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실체경제의 깊은 융합을 적극적으로 유도·추진하여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과 성장을 돕고, 인공지능이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실어주는 거대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안보 저지선(安全底线)을 견고히 구축한다. 인공지능이 다양한 응용 시나리오에서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에 초래할 수 있는 구체적 손해와 위험의 성질 및 크기에 따라 법률책임을 법에 따라 정확하게 인정한다. 범용과 전용, 오픈소스(开源)와 클로즈드소스(闭源) 등 서로 다른 유형의 대모델(大模型)이 기술 원리, 위험 파급(风险外溢) 및 통제 능력에서 가지는 차이를 구별하여 개발자, 제공자, 사용자 등 주체의 법률책임을 합리적으로 구분한다. 관대함과 엄격함을 결합하는 형사정책(宽严相济刑事政策)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철하여, 인공지능을 고의로 이용하여 실시하는 국가안보 위해, 공민 권익 침해, 사회질서 교란 등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에 따라 엄벌한다. 인공지능 연구개발과 응용 과정의 혁신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하며, 죄형법정주의와 죄책 및 형벌 비례의 원칙(罪责刑相适应原则)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2부분 二、 인공지능 관련 침해 사건을 법에 따라 적정하게 심리하여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한다(依法妥善审理涉人工智能侵权案件，切实维护民事主体合法权益)

제3조 (三) 인공지능 관련 침해책임의 귀책원칙을 정확하게 파악한다(准确把握涉人工智能侵权责任的归责原则). 민법전(民法典),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 제품품질법(产品质量法), 도로교통안전법(道路交通安全法) 등 관련 법률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민사 권익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책임을 법에 따라 인정한다. 법률에 무과실책임 또는 과실추정책임을 적용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전(民法典) 제1165조 제1항이 규정한 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행위자가 침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인정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과실 유무 및 과실 정도를 판단할 때에는 인공지능 응용의 구체적 시나리오, 자율화 정도, 기술 및 정보의 투명도, 잠재적 위험 및 영향 범위, 인공지능 개발자·제공자 등 관련 주체가 인공지능 침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 및 기술적 가능성, 인공지능 사용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한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예견 능력과 통제 능력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四) 'AI 얼굴 교체 및 음성 모사(AI换脸拟声)', 'AI 고인 부활(AI复活逝者)'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격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규제한다(依法规制"AI换脸拟声""AI复活逝者"等利用生成式人工智能侵害人格权益的行为).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특정 자연인 또는 사망자의 성명, 초상 등을 처리할 때에는 법률,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공서양속(公序良俗)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연인의 동의 없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자연인의 성명, 초상 등을 처리함으로써 해당 자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상 디지털 형상을 생성하여 사용·공개한 경우, 해당 자연인이 행위자가 자신의 성명권, 초상권 등 인격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지지한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연인의 동의 없이 자연인의 음성을 훈련 말뭉치(训练语料)로 사용하여 해당 자연인의 음색, 어조, 발음 스타일 등을 모방하여 해당 자연인을 식별할 수 있는 합성 음성을 생성한 경우, 해당 자연인이 행위자가 자신의 음성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지지한다. 특정 자연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성·합성된 가상 디지털 형상 또는 음성을 조작하여 부당한 행위를 실시하거나 허위 발언을 발표함으로써 해당 자연인 또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명예권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망자의 가상 디지털 형상을 무단으로 제작·사용함으로써 사망자의 성명, 초상, 명예 등이 침해를 입어 사망자의 근친족이 민법전(民法典) 제99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위자에게 민사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지지한다.

제5조 (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사이버 신상털기(网络开盒)', '인육수색(人肉搜索)' 등을 실시하여 자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隐私权)를 침해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규제한다(依法规制利用人工智能实施"网络开盒""人肉搜索"等侵害自然人隐私权的行为). 사생활(隐私)을 탐지할 목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특정 자연인의 전화번호, 인터넷 계정 및 소셜미디어 등 공개된 정보를 추적·분석하여 비밀 정보(私密信息)를 취득하거나, 취득한 비밀 정보를 유출·공개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생활의 평온(私人生活安宁)을 침해·교란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隐私权)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특정 자연인의 사적 공간(私密空间), 사적 활동(私密活动) 등에 대해 촬영, 엿보기, 도청 등의 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隐私权)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해당 자연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六) 인공지능 훈련 과정에서 개인정보 권익을 침해한 민사책임을 법에 따라 인정한다(依法认定人工智能训练过程中侵害个人信息权益的民事责任). 인공지능 모델 훈련을 위하여 개인이 스스로 공개하였거나 이미 적법하게 공개된 개인정보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개인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권익을 침해한 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인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합리적인 범위를 인정할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모델 기능의 필요성 및 적절성, 관련된 개인정보의 유형, 민감도 및 개인 권익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개인이 정보를 공개할 당시의 시나리오 및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용 범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七)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책임을 신중하게 인정한다(审慎认定生成式人工智能服务提供者的侵权责任). 생성형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생성한 내용이 타인의 명예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隐私权) 등 인격 권익을 침해한 경우, 권리자의 통지를 받고도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내용의 생성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초래된 손해에 대하여 법에 따라 침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통지에는 침해를 구성한다는 예비적 증거(初步证据) 및 권리자의 진정한 신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인터넷 사용자가 침해성 프롬프트(提示词)를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침해 내용을 생성하도록 악의적으로 유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해당 인터넷 사용자는 법에 따라 침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권리자의 통지를 받고도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내용 생성 중지, 관련 생성 지침(生成指令)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아니하여, 권리자가 민법전(民法典) 제119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인터넷 사용자 및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에게 민사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지지한다.

제8조 (八) 인격권 침해 금지령(人格权侵害禁令) 제도를 법에 따라 적용한다(依法适用人格权侵害禁令制度).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이 행위자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인격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를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곧 실시하려 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증거를 갖추고, 제때 제지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회

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이유로 인민법원에 행위자에게 관련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관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명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인격권 침해 금지령(人格权侵害禁令)을 발할 수 있다. 인격권 침해 금지령(人格权侵害禁令)을 발할 때 인민법원은 침해된 인격권의 유형, 위법 행위의 방식 및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위와 정도 등의 요소를 결합하여 상응하는 금지령(禁令)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9조 (九) 인공지능 제조물 책임(产品责任)을 정확하게 인정한다(准确认定人工智能产品责任). 인민법원은 제품품질법(产品质量法)의 '제품(产品)'에 관한 정의에 근거하여 실물을 매개체로 하는 인공지능 제품을 법에 따라 정확하게 인정하고 상응하는 법률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여 손해를 초래한 경우, 생산자 및 판매자는 법에 따라 제조물 책임(产品责任)을 부담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제품에 신체나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불합리한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인정할 때에는 인공지능 제품의 성질과 용도, 자율학습 능력, 업그레이드 및 업데이트 상황,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 정도, 관련 국가 표준·업계 표준의 부합 여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생산자 및 판매자가 인공지능 제품의 적용 시나리오, 고유한 한계 및 예견 가능한 위험 등에 대하여 진실한 설명과 명확한 경고를 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10조 (十) '빅데이터 바가지(大数据杀熟)', '유명인 모칭 라이브커머스 판매(仿冒名人带货)' 등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규제한다(依法规制"大数据杀熟""仿冒名人带货"等侵害消费者合法权益的行为).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경영자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거래 가격 등 거래 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실시함으로써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초래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그가 상응하는 침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인정할 때에는 차별 대우가 소비자의 알 권리, 자율 선택권, 공정 거래권 등에 실질적인 제한이나 손해를 초래하였는지, 소비자의 소비 성향, 지불 의향, 지불 능력, 브라우징 기록 등의 정보에 기반하여 해당 개인을 겨냥한 거래 조건을 형성하였는지, 성실신용의 원칙 및 비즈니스 윤리에 위배되는지 등에 근거하여 차별 대우를 실시한 이유가 정당하고 충분하며 비차별적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유명인 모칭

라이브커머스 판매(仿冒名人带货)'를 실시하고 이것이 사기를 구성하여 소비자가 소비자권익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제5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장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지지한다.

제11조 (十一) 자율주행(自动驾驶) 자동차, 보조주행(辅助驾驶) 기능을 구비한 자동차의 교통사고 배상책임을 법에 따라 인정한다(依法认定涉自动驾驶汽车、具备辅助驾驶功能汽车交通事故的赔偿责任). 자율주행(自动驾驶) 자동차, 보조주행(辅助驾驶) 기능을 구비한 자동차가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초래한 경우, 민법전(民法典) 및 도로교통안전법(道路交通安全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차량에 제품 결함이 존재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손해를 초래하여 당사자가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 민법전(民法典) 제7편 제4장의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보조주행(辅助驾驶) 기능을 구비한 자동차에서 차량의 결함과 운전자의 과실 행위가 결합하여 동일한 손해를 초래하여, 당사자가 민법전(民法典) 제1172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운전자와 차량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 동시에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지지한다. 차량 생산자, 판매자가 자율주행(自动驾驶) 자동차, 보조주행(辅助驾驶) 기능을 구비한 자동차의 자동화 등급, 지능화 수준, 성능, 용도 등에 대하여 허위이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선전을 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소비자가 민법전(民法典), 소비자권익보호법(消费者权益保护法) 등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차량 생산자, 판매자에게 민사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지지한다. 도로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인민법원은 차량 생산자, 판매자 또는 운영자 등 데이터 통제자에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진실하고 완전한 자율주행(自动驾驶)·보조주행(辅助驾驶) 사건 기록 등 사건 사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부분 三、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을 법에 따라 적정하게 심리하여 인공지능의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한다(依法妥善审理涉人工智能知识产权纠纷案件，保障人工智能高质量发展和高水平安全)

제12조 (十二)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법에 따라 규제한다(依法规制涉人工智能侵害知识产权的行为). 인공지능 생성 내용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인민법원은 인공지능 서비스 유형, 업계 특성, 훈련 데이터 출처, 각 당사자의 참여

도, 취해진 필요 조치 및 수익 상황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공지능 개발자, 제공자, 사용자의 책임을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개발자가 비침해 항변을 제기하는 경우, 훈련 데이터 출처, 훈련 과정 기록, 모델 실행 방식 및 과학적 이론 근거 등을 제공하여 입증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권리자가 인공지능 제공자가 알고리즘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관련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사용자가 선행 저작물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선행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생성하였고 합리적인 항변 사유가 없는 경우, 선행 저작물 권리자가 그에게 침해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및 모조, 허위 선전, 허위 트래픽·주문 조작(刷量刷单) 등의 행위를 실시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 해하거나 부정당경쟁을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제13조 (十三) 인공지능 관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당사자의 법률책임을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정한다(依法合理认定涉人工智能开源软件相关方的法律责任).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사건을 심리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 제공자 및 후속 개발자, 제공자의 침해책임을 인정할 때에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계약(开源许可协议) 유형, 권리 제한의 구체적 내용, 안전 준법 조치 및 정보 공개 정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 제공자에게 법에 따라 적절한 책임 면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 제공자가 무료 오픈소스 방식으로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필요한 일부 코드 모듈을 제공하고 그 기능과 보안 위험을 공개적으로 설명하였는데 타인이 해당 코드 모듈을 사용하여 침해를 초래한 경우, 인민법원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 제공자가 침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 (十四) 인공지능 관련 발명창조의 특허 부여 및 권리 확정(专利授权确权) 행위를 법에 따라 규범화한다(依法规范涉人工智能发明创造的专利授权确权行为). 인공지능 관련 발명창조가 자연법칙을 따르는 기술적 수단을 채택하여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법칙에 부합하는 기술적 효과를 실현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특허법(专利法)이 보호하는 객체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사회공덕에 위반되거나 사회 공공이익을 해치는 경우 또는 자연인의 실질적 기여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연인이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로서 해당 자연인이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창조적 기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자연인을 발명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인공

지능 관련 특허 명세서의 기술 방안에 대한 기재가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충분한 공개라는 특허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15조 (十五) 인공지능 관련 기술계약 이행의 채무불이행 책임(违约责任)을 법에 따라 신중하게 인정한다(依法审慎认定涉人工智能技术合同履行的违约责任). 인민법원이 인공지능 관련 기술 개발, 양도, 실시허락, 컨설팅, 서비스 계약 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계약 약정에 근거하여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의 특성, 기술 개발 당사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16조 (十六)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사용 행위를 법에 따라 규범화한다(依法规范涉人工智能数据使用行为). 인공지능 개발자가 수집 및 생성, 파생 창조, 양수 취득, 권한 부여 및 실시허락(授权许可) 등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적법하게 취득하고 상응하는 데이터 권익을 향유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편집저작물(汇编作品)을 구성하거나 기타 저작물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데이터 및 데이터 집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著作权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영업비밀(商业秘密)을 구성하는 데이터 및 데이터 집합에 대해서는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영업비밀을 구성하지 않는 데이터 및 데이터 집합에 대하여 제소된 침해 행위가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경영자가 데이터, 알고리즘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독점합의(垄断协议)를 체결하거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행위를 실시한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교란 데이터 허위 작성, 악의적 데이터 라벨링, 적대적 예제 공격(对抗样本攻击) 등의 기술적 수단을 취하여 인공지능 운용 안전을 해친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제4부분 四、 인공지능 관련 분쟁 사건의 심리 절차 규칙을 완비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등의 위법·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한다(完善涉人工智能纠纷案件审理程序规则，依法惩治利用生成式人工智能实施妨害司法秩序等违法犯罪行为)

제17조 (十七) 인공지능 관련 분쟁 사건의 사실을 법에 따라 정확하게 규명한다(依法准确查明涉人工智能纠纷案件事实). 인공지능 관련 분쟁 사건의 기술성, 전문성이

강한 등의 특성에 기반하여 인민법원은 소송 안내 및 석명(诉讼引导和释明)을 법에 따라 강화하고, 당사자가 쟁점 사실을 둘러싸고 제때 전면적으로 입증을 완료하도록 유도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객관적인 사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는 인민법원에 조 사·수집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수집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핵심 기술을 고정하기 위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제때 법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서증, 전자데이터 등 증거를 소지·지배(控制)하는 당 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해당 증거의 내용이 소지· 지배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주장이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 원리, 운용 메커니즘 등 전문적 문제와 관련된 경우 인민법원 은 법에 따라 인민배심원(人民陪审员), 감정인(鉴定人), 전문가보조인(专家辅助人) 및 기술조사관(技术调查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사건 사실 규명을 보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十八) 인공지능 관련 분쟁 사건의 증거 심사 규칙을 모색·완비한다(探索完善涉人工智能纠纷案件证据审查规则). 인민법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복잡성, 시스템 운용의 불투명성 및 증거 수집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기술 발전에 적응하는 증거 심사 규칙을 끊임없이 완비하여야 한다. 전자데이터의 생성, 수집, 저장, 전송 과정의 진실성, 완전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서로 다른 정보기술이 생성한 증거에 대하여 차별화된 증거 심사 중점을 명확히 한다.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류 증거에 대해서는 원시 데이터의 출처, 정제 규칙(清洗规则) 및 분석 방법의 과학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블록체인 증거보존(区块链存证)류 증거에 대해서는 온체인(上链) 이전 데이터의 진실성 및 기술 플랫폼의 신뢰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인공지능 생성 내용을 침해 증거로 삼는 경우, 인민법원은 프롬프트(提示词)의 설계 및 그것이 생성 결과에 미치는 영향, 생성 내용과 권리를 주장하는 저작물 간의 유사 정도, 반복 테스트의 일치성, 모델 훈련, 알고리즘 설계, 생성 내용 필터링 메커니즘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제19조 (十九)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당한 증거 수집 등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규제한다(依法规制利用人工智能不当取证等妨害司法秩序的行为). 당사자가 인공지능의 자율학습, 자율결정 특성을 이용하여 생성·합성 내용 식별표지(标识)의 삭제 또는 변조, 특정 지침 입력, 선택적 결과 제시, 적대적 교란 등 인위적인 개입 또는 오도의 방식으로 허위 증거를 취득하고, 민사 사건의 기본 사실을 날조하여 허위 소

송을 제기함으로써 국가 이익, 사회 공공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자 기도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그 소송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정상의 경중에 따라 벌금, 구류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소송참가인 또는 기타 인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증거를 위조함으로써 인민법원의 사건 심리를 방해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民事诉讼法) 제1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소송참가인이 제출한 소송 서류, 판례 검색 보고서 등의 자료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생성된 경우라면, 법정에 제출하기 전에 관련 법률, 사법해석(司法解释), 판례 등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진지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법정에 제출할 때 인공지능 보조 활용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하여 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제20조 (二十)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범죄 활동을 법에 따라 처벌한다(依法惩治利用人工智能实施的犯罪活动).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사기, 모욕, 비방, 상업적 신용·상품 평판 훼손, 공민 개인정보 침해, 컴퓨터 정보시스템 데이터 불법 취득, 음란물 제작·판매·전파 등의 행위를 실시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행위자가 보조주행(辅助驾驶) 기능을 활성화한 후 사적으로 설치한 부품을 이용하여 보조주행(辅助驾驶) 시스템의 모니터링을 회피함으로써 도로교통사고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부분 五、 인공지능 관련 분쟁 사건의 재판 지도 강도를 확대하고 업무 메커니즘을 끊임없이 건전화·완비한다(加大对涉人工智能纠纷案件审判指导力度，不断健全完善工作机制)

제21조 (二十一) 다원적 분쟁 해결(多元解纷)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充分发挥多元解纷机制作用). 인민법원은 다원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공지능 관련 분쟁을 적정하게 해소하여야 하며, 인공지능 업계 주관부문, 업종별·전문적 조정 조직, 인공지능 전문가·학자 등과의 연동·협동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하여 공동으로 분쟁 해소 업무를 전개하고 선행 조정(先行调解)을 내실 있게 실행한다. 사법재판 직능에 입각하여 인공지능 관련 분쟁의 예방과 해소의 법치화 수준 향상을 추진하고, 재판 공개, 안건을 통한 법 해석(以案释法) 등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통하여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행위의 경계를 획정하며, 사법재판의 시범·선도 역할을 발휘하여 인공지능 관련 분쟁의 근원적 예방과 적시 해소를 촉진한다.

제22조 (二十二) 재판 감독 및 지도를 강화한다(加强审判监督指导). 제급관할(提级管辖)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규범화하고, 시범·선도 역할을 강화하며, 재판 감독과 지도를 내실 있게 실행한다. 중대한 이익과 관련되거나 의문스럽고 난해하며 복잡한 신유형 사건, 규칙 확립의 의미를 가지는 사건, 법률 적용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의 인공지능 관련 분쟁 사건은 상급 인민법원이 상급으로 이송하여 심리(提级审理)한다. 인민법원 사례고(人民法院案例库)를 충분히 활용하고 판례 지도 업무를 강화하여 법률 적용의 통일과 인공지능 거버넌스 규칙의 완비를 촉진한다.

제23조 (二十三) 부문 간 협력과 협동을 강화한다(加强部门协作协同). 사법건의(司法建议) 발령, 협력 메커니즘 구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사법 직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국가와 사회 거버넌스에 복무한다. 인터넷정보(网信), 공안, 검찰 및 시장감독관리 등의 부문과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 종합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구축·이행한다. 관련 기업, 플랫폼, 업계 협회 등이 규범적으로 자율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인공지능 업계 자율규제, 행정 감독관리, 사법 보장이 어우러진 전(全) 사슬 보호의 합력을 형성하도록 추진한다.

제24조 (二十四) 국제 사법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加强国际司法交流合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국경간(跨境) 분쟁 사건을 적정하게 심리하고, 상호 존중과 평등호혜 원칙을 견지하는 기초 위에서 인공지능 분야의 섭외(涉外) 재판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며, 규칙의 연계와 상호 벤치마킹(互鉴)을 강화하고, 더욱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인공지능 생태계와 인류 문명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보호한다.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2026년 9월 7일

2. 최고인민법원 관련 부서 책임자 답기자문(答记者问) 한국어 완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관련 부서 책임자, <인공지능 관련 분쟁 사건의 법에 따른 심리에 관한 의견(关于依法审理涉人工智能纠纷案件的意见)> 관련 기자 질문에 답하다

2026년 9월 7일, 최고인민법원은 <인공지능 관련 분쟁 사건의 법에 따른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最高人民法院关于依法审理涉人工智能纠纷案件的意见)>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고인민법원 타오카이위안(陶凯元) 부원장, 저우자하이(周加海) 연구실 주임, 리젠(李剑) 민사3재판부(民三庭) 재판장, 쓰옌리(司艳丽) 연구실 부주임이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기자의 질문에 답변했다. 기자회견은 지중뱌오(姬忠彪) 최고인민법원 대변인이 진행했다.

질문: 우리는 <인공지능 관련 분쟁 사건의 법에 따른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이하 <의견(意见)>이라 한다)이 현재의 현안과 난제에 입각하여 인민 대중의 관심사와 인공지능 산업계가 주목하는 문제에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 구성에서 <의견>은 권익 보호와 혁신 발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답변: 시진핑 총서기는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거버넌스 고위급 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발전과 안전을 한결같이 병행하고 인공지능의 발전 추세와 규율을 파악하며 관련 법률·법규, 정책·제도, 응용 규범, 윤리 기준을 끊임없이 보완하여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통제 가능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인공지능이라는 천리마가 빠르면서도 안정적으로 달리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발전과 안전의 병행 견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인공지능을 남용하고 악용하는 위법 난맥상을 법에 따라 규제하고 디지털 시대 민생 권익의 사법적 보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을 명확하게 지지하여 인공지능의 건강한 발전을 보호하고 뒷받침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민생 권익 보장 방면에서 <의견>은 주로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첫째, 인격권익(人格权益)에 대한 사법적 보호 강도를 높였다. 현재 AI 얼굴 바꾸기(AI换脸), AI 음성 모방(AI仿声), "인터넷 신상 털기(网络开盒)" 등 위법 행위가 수시로 발생하여 사회 각계의 관심이 깊다. 이에 <의견>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초상권(肖像权), 명예권(名誉权), 사생활권(隐私权), 음성권익(声音权益) 등을 침해하는 행위의 책임 추궁에 대해 명확한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사법 재판의 규범 및 선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인공지능이 선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했다. 둘째, 개인정보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했다. 대규모 고품질 훈련 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초석이다. 개인정보 권익 보호와 인공지능 산업 발전 촉진을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의견>은 민법전(民法典),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 등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인공지능 모델 훈련을 위해 이미 적법하게 공개된 개인정보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개인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

은 경우 일반적으로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다만 개인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셋째, "빅데이터 맞춤형 가격 차별(大数据杀熟)", "유명인 사칭 판매(仿冒名人带货)" 등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규제했다. 최근 AI 알고리즘으로 인한 "빅데이터 맞춤형 가격 차별"이 잇달아 폭로되고 "유명인 사칭 판매" 역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소비자가 모두 진위를 가려내는 날카로운 안목을 갖추기를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법률이 제때 검을 뽑아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에 <의견>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경영자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거래 가격 등 거래 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실시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침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인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유명인 사칭 판매"를 하고 사기를 구성하여 소비자가 징벌적 손해배상(惩罚性赔偿)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지지한다.

혁신 발전 지원 방면에서 <의견>은 주로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첫째, 인공지능 관련 침해 책임의 귀책원칙(归责原则)을 정확히 파악하여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이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있을 때 과도한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혁신의 적극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했다. <의견>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민사 권익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 법률에 무과실책임(无过错责任) 또는 과실추정책임(过错推定责任)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실책임원칙(过错责任原则)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둘째, 법에 따라 "인공지능 제품"을 엄격하게 인정하여 제조물 책임(产品责任)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했다. <의견>은 제품품질법(产品质量法)의 "제품"에 관한 정의에 엄격히 근거하여 인공지능 제품을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自动驾驶)차 등과 같이 실물을 매개체로 하는 제품으로 한정하고, 실물 매개체가 없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제외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셋째, 관용과 엄벌의 조화(宽严相济)라는 형사 정책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철하여 인공지능 관련 형사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했다. <의견>은 한편으로 인공지능을 고의로 이용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공민 권익을 침해하며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에 따라 엄벌할 것을 강조했다. 다른 한편으로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응용 과정에서의 혁신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하고 죄형법정(罪刑法定), 죄책과 형벌의 비례(罪责刑相适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타오 부원장이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의견>은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권(知识产权) 분쟁 사건의 법에 따른

적절한 심리에 대해 특별 규정을 두었으며 관련 규정 역시 법치의 궤도 위에서 혁신 발전을 지지한다는 이념을 충분히 구현했다.

질문: 현재 인공지능 생성 내용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견>에는 인공지능 생성 내용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 처리에 관하여 어떠한 새로운 규정이 있는가?

답변: <의견>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을 겨냥하여 특별히 마련된 규정이며, 그중 제12조는 질문하신 인공지능 생성 내용 관련 문제에 대해 지도 의견을 제시했다. '15차 5개년 계획(十五五)' 요강은 인공지능 생성물의 권리 귀속 및 개발자, 경영자,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 인정 규칙 수립을 모색할 것을 명확히 제시했다. 국무원이 최근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15차 5개년 계획'>은 인공지능 발전에 부응하는 저작권(著作权) 제도를 보완할 것을 한층 더 강조했다. <의견>은 중앙의 관련 배치를 이행하여 사회적 관심에 제때 화답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 가지 방면이 있다.

첫째, 인공지능 생성 내용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관련 주체의 책임을 인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명확히 했다. 인공지능 생성 내용의 침해 행위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자, 제공자, 이용자 등 다방면의 주체와 관련된다. 인공지능 생성 내용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제소된 경우 피소된 침해 내용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이유로 관련 주체의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으며, 책임 부담은 통제 능력 및 주의 의무와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통제 능력과 주의 의무를 확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관련 인공지능의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특성, 당사자가 내용 생성 과정에서 발휘한 역할, 관련 훈련 데이터를 어느 쪽에서 제공(投喂)했는지, 취한 필수 조치, 수익 상황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에게 침해의 주관적 과실이 있는지 및 과실의 정도를 법에 따라 인정하여 침해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둘째, 인공지능 생성 내용의 저작권 침해 분쟁에 관한 입증 규칙을 명확히 했다. 권리자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자 또는 제공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침해 내용이 해당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고 자신의 권리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구성한다는 등의 일응의 사실(初步事实)을 입증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복잡성과 불투명성을 지니고 있어 타인이 관련 증거를 취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공지능 개발자가 비침해 항변을 제기하는 경우 모델의 훈련 데이터 출처, 훈련 과정, 운용 방식 등의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과학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여 뒷받침해야 한다. 인공지능 이용자가 선행 저작물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선 행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생성했고 공정이용(合理使用) 등 면책 사유 가 없는 경우에는 침해를 구성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셋째, 인공지능 생성 내용을 이용하여 행하는 부정경쟁행위(不正当竞争行为)를 법에 따라 규제했다. 최근 2년 동안 인공지능을 이용해 부정경쟁을 행하는 분쟁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경영자가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와 글, 영상, 가상 인물 형상 등을 이용하여 트래픽과 호평을 허위로 조작하고 심지어 AI 얼굴 바꾸기를 이용해 과학 보급 영상을 허위로 제작하여 허위선전(虚假宣传)을 하는 행위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심각하게 오도하고 시장 경쟁 질서를 교란하므로 법에 따라 모방침해(仿冒侵权), 허위선전 등을 구성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설명할 점은 <의견> 기초 및 논증 과정에서 인공지능 생성 내용의 저작물성(可版权性) 및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인공지능 거대언어모델을 훈련하는 행위의 성격 규정 문제에 대해 의견 대립이 매우 컸고 인식이 한층 더 심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의견>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잠정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눈부시며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인공지능 등 신흥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실무 속에서 규율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파악하며 재판 경험을 지속적으로 총괄하고 재판 규칙을 보완하여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질문: 인공지능의 세대교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딥페이크(深度伪造), 지능형 수집, 사용자 프로파일링(用户画像) 등 기술의 침해 문턱이 크게 낮아져 인격권익 보호가 엄중한 도전에 직면했다. 방금 <의견>이 "AI 얼굴 바꾸기 및 음성 모방(AI换脸拟声)", "인터넷 신상 털기(网络开盒)" 등 인격권익을 침해하는 현안에 대해 규정했다고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줄 수 있는가?

답변: 인격권(人格权)은 모든 사람의 인격 존엄과 직결되며 민사 주체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이다. 우리는 포용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인격권익 보호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포용이 방조를 뜻하지 않으며 신중함 역시 방임을 뜻하지 않는다.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고 재판 실무를 지도하기 위해 <의견>은 인공지능 기술을 남용하고 악용하여 인격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유형을 구분하

여 맞춤형 규정을 마련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AI 얼굴 바꾸기 및 음성 모방" 등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초상권, 명예권, 음성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규제했다. 실무에서 가장 강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AI 딥페이크이다. 예를 들어 AI 얼굴 바꾸기 기술은 모든 사람의 초상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일반인도 딥페이크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다른 예로 AI 음성 모방 기술을 사용하면 단돈 몇 위안으로 목소리를 훔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진짜와 구별하기 힘들 정도이다. 최근 언론 매체는 'AI 원클릭 옷 벗기기' 소프트웨어와 튜토리얼을 판매하는 범죄 산업 사슬을 파헤치기도 했으며 인민 대중은 이에 대해 극심한 반감을 느끼고 있다. <의견> 제4조는 명확히 규정했다. 동의 없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자연인의 성명, 초상 등을 처리하고 해당 자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상 디지털 형상을 생성하여 사용하거나 공개한 경우 성명권, 초상권 등 인격권익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동의 없이 자연인의 음성을 훈련 말뭉치(语料)로 사용하여 그 음색, 어조, 발음 스타일을 모방해 식별 가능한 합성 음성을 생성한 경우 음성권익 침해를 구성한다. 가상 형상과 합성 음성을 조작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허위 발언을 발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명예권 침해를 구성하며 행위자의 침해 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한다. 아울러 사회적 관심사인 "AI 망자 부활(AI复活逝者)" 현상에 대해서도 <의견>은 특별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자의 인격적 이익을 법에 따라 보호했다.

둘째,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터넷 신상 털기", "인간 검색(人肉搜索)" 등을 실시해 타인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규제했다. "인터넷 신상 털기"와 "인간 검색"은 사이버 폭력의 두드러진 표현 형태로,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피해자의 생활 평온을 심각하게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안전감에 영향을 미치고 인터넷 생태계를 오염시킨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자연인의 전화번호, 인터넷 계정, 소셜 미디어 등 공개 정보를 추적·분석해 비밀 정보를 취득하거나 취득한 비밀 정보를 유출·공개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 제5조는 특별 규정을 두었다.

셋째, 인격권 침해 금지명령(人格权侵害禁令) 제도의 적용 규칙을 명확히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격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비용이 적게 들고 전파가 빠르며 영향이 광범위하고 손해의 회복이 어렵다는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사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전통적인 구제 방식으로는 피해자의 합법적 권익을 제때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우

므로 인격권 침해 금지명령의 법에 따른 적용이 각별히 중요하다. 이에 <의견> 제8조는 이를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자신이 AI 얼굴 바꾸기로 성적 허위사실 유포 피 해를 입었고 제때 제지하지 않으면 합법적 권익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에 인격권 침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심 사를 거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에게 관련 침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손해의 추가 확대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하도록 명할 수 있 다.

별도로 설명할 점은 현재 딥페이크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사기, 모욕, 비방, 공민 개인정보 침해, 음란물 제작·판매·전파 등을 저지르는 현상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단호하게 법에 따라 엄벌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의견>은 특별 규정을 두었다.

질문: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관련 민사 분쟁 또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침해 인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세이프하버 원칙(避风港规则)"을 도입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소개해 줄 수 있는가?

답변: 민법전(民法典) 제1195조는 흔히 "세이프하버 원칙(避风港规则)"이라 부르는 "통지·삭제 규칙(通知删除规则)"을 규정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침해 행위를 저질렀을 때(예를 들어 인터넷에 글을 올려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권리자가 이를 발견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할 권리가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적격한 통지를 받은 후 제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의 확대 부분에 대해 인터넷 이용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통지를 받은 후 제때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통상 침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가 "세이프하버 원칙"의 유추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 우리는 연구를 거쳐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비록 전통적인 인터넷 서비스와 차이가 있으나 두 가지는 작동 메커니즘에서 유사한 점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 역시 방대한 정보를 구성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제공하며, 거대 모델의 생성 결과는 사전 훈련 데이터, 모

델 매개변수 및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提示词)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의 입력 내용을 사전에 미리 알기 어렵고, 아울러 생성되는 내용의 양이 방대하여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에게 생성 내용의 침해 여부를 일일이 예측, 심사, 차단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자체 환각(幻觉)이나 이용자의 악의적 유도로 인해 침해 내용을 생성한 후 권리자의 통지를 받은 경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마땅히 취해야 하고 취할 여건도 갖추고 있다. 이로 볼 때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세이프하버 원칙"을 유추 적용할 정당성과 합리성의 기초가 존재한다.

이에 <의견>은 "AI 환각(AI幻觉)"에 의한 인격권 침해와 이용자의 악의적 AI 유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책임 인정에 대해 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생성한 내용이 인격권익을 침해했을 때 권리자의 통지를 받고도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내용 생성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에 따라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인터넷 이용자가 침해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침해 내용을 생성하도록 악의적으로 유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인터넷 이용자는 법에 따라 침해 책임을 지며, 권리자의 통지를 받고도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내용 생성 중지, 관련 생성 명령어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아 권리자가 해당 인터넷 이용자와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에게 민사책임을 부담하도록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지지한다. 위의 규정은 기술 발전 규율에 부합하고 민법전 입법 정신에 부합하며 혁신 지원과 법에 따른 거버넌스의 유기적 통일을 구현한 것으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각계의 일치된 찬성을 받았다.

질문: 인공지능의 영향은 전 영역에 걸쳐 있으며 재판 활동 역시 새로운 위험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소송 참가인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증거 및 기타 소송 서류를 인민법원에 제출하면서도 제출 전에 확인을 거치지 않기도 한다. 이처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사법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의견>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답변: 소송 참가인은 소송 활동에서 신의성실 원칙(诚信原则)을 준수해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보급됨에 따라 소송 참가인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보조 도구일 뿐이며 소송 참가인은 "AI 환각(AI幻觉)", 기술 중립을 이유로 자신의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 소

송 참가인은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 및 기타 소송 서류를 가려내어 확인하고 그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회 일반이 인공지능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허위 서류가 소송 절차에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며 사법 질서를 확실히 수호하기 위해 <의견>은 세 가지 방면에서 규정을 마련했다.

첫째, 인공지능을 이용한 허위소송(虚假诉讼)을 법에 따라 처벌한다. 당사자가 인공지능의 자율 학습, 자율 의사결정 특성을 이용하여 생성·합성 내용 식별 표식의 삭제나 변조, 특정 명령어 입력, 선택적 결과 제시, 적대적 교란 등 인위적 개입 또는 오도 방식으로 사건 사실을 날조하여 허위소송(虚假诉讼)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그 소송 청구를 기각해야 하며 정황의 경중에 따라 벌금, 구류에 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둘째, 인공지능을 이용한 증거 위조 행위를 법에 따라 규제한다. <의견>은 소송 참가인 또는 기타 인물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증거를 위조하고 인민법원의 사건 심리를 방해한 경우 민사소송법(民事诉讼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즉 정황의 경중에 따라 벌금, 구류에 처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셋째, 소송 참가인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소송 서면, 판례 검색 보고서 등에 대해 확인 및 설명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현재 인민법원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허위 판례를 이용한 사건을 다수 발견했으며 당사자와 대리인은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전면적인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 올해 1월 언론 매체는 이러한 사건을 집중 보도했고 인민법원 판례 데이터베이스(人民法院案例库)에도 수록된 사례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의견>은 소송 참가인이 제출하는 소송 서면, 판례 검색 보고서 등의 서류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생성된 경우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관련 법률, 사법해석(司法解释), 판례 등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진지하게 확인해야 하고 법원에 제출할 때 인공지능 보조 사용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하며 관련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외(域外) 사법기관 역시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지침을 별도로 발표하여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정확성을 확보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강조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3. 중국어 원문 전문 (最高人民法院关于依法审理涉人工智能纠纷案件的意见, 法发〔2026〕10号)

출처: 最高人民法院 공식 사이트, 2026년 9월 7일 게시.

法发〔2026〕10号

最高人民法院关于依法审理涉人工智能纠纷案件的意见

为全面贯彻党的二十大和二十届历次全会精神，以严格公正司法服务保障新质生产力加快发展，指导各级人民法院依法审理涉人工智能纠纷案件，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等相关法律，结合人民法院审判工作实际，提出如下意见。

一、总体要求

（一）指导思想

坚持以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为指导，深入贯彻习近平法治思想，认真贯彻习近平总书记关于网络强国的重要思想，深刻认识人工智能是新一轮科技革命和产业变革的重要驱动力量，坚持发展和安全并重、促进创新和依法治理相结合，依法公正审理涉人工智能纠纷案件，促进提升人工智能技术应用的安全性、可靠性、可控性、公平性，为以中国式现代化全面推进强国建设、民族复兴伟业提供有力司法服务和保障。

（二）基本原则

坚持以人为本。发挥司法裁判引领作用，积极引导人工智能增进人民福祉，切实加强数字时代民生权益司法保障。积极稳妥探索、完善涉算法伦理、算法规则等人工智能领域的司法裁判规则和机制建设，用足用好现有法律规定，妥善应对人工智能技术发展带来的规则冲突、社会风险和伦理挑战，促进完善人工智能企业社会责任体系，注重防范和消除算法歧视，依法保障个人在自动化决

策中的知情权和选择权，预防和规制滥用人工智能技术侵害人民群众合法权益的行为，促推人工智能为民、向善。

支持创新发展。尊重科技创新规律和人工智能行业发展实践，以符合法律政策精神、符合技术发展规律的司法裁判支持科技创新和产业创新。探索新型权益司法保护路径，不断加大对人工智能创新成果、创新主体、创新行为、创新环境的保护力度。以包容审慎的态度平衡权益保护与技术产业发展，营造鼓励探索、宽容失败的良好环境。依法规制利用人工智能技术实施的垄断或者不正当竞争，依法保障相关主体开发和利用人工智能技术的权利平等、机会平等、规则平等，加强对中小企业等经营主体权益的平等保护。通过依法公正高效审理涉人工智能纠纷案件，积极引导、推动互联网、大数据、人工智能和实体经济深度融合，助力培育壮大人工智能产业，最大限度释放人工智能赋能经济社会高质量发展的巨大潜力。

筑牢安全底线。根据人工智能在不同应用场景下对民事主体合法权益可能造成的具体损害以及风险的性质和大小，依法准确认定法律责任。区分通用与专用、开源与闭源等不同类型大模型在技术原理、风险外溢与控制能力上的差异，对开发者、提供者、使用者等主体的法律责任作出合理划分。全面准确贯彻宽严相济刑事政策，对于故意利用人工智能实施的危害国家安全、侵犯公民权益、扰乱社会秩序等犯罪行为，坚决依法严惩；对于在人工智能研发、应用中的创新性行为，依法审慎处理，恪守罪刑法定、罪责刑相适应原则。

二、依法妥善审理涉人工智能侵权案件，切实维护民事主体合法权益

（三）准确把握涉人工智能侵权责任的归责原则。准确适用民法典、个人信息保护法、产品质量法、道路交通安全法等相关法律规定，依法认定利用人工智能侵害民事权益产生的法律责任。法律没有明确规定适用无过错责任或者过错推定责任的，应当依照民法典第一千一百六十五条第一款规定的过错责任原则认定行为人是否承担侵权责任。在判断行为人有无过错以及过错程度时，应当综合考量人工智能应用的具体场景、自主化程度、技术与信息透明度、潜在风险及影响范围，人工智能开发者、提供者等相关主体为预防和减少人工智能侵权所采取的措施及技术上的可能性，人工智能使用者对利用人工智能技术实施的侵权行为可能造成损害的预见能力与控制能力等因素。

（四）依法规制"AI换脸拟声""AI复活逝者"等利用生成式人工智能侵害人格权益的行为。利用生成式人工智能处理特定自然人或者死者的姓名、肖像等，不得违反法律、法规，不得违背公序良俗。除法律另有规定的外，未经自然人同意，利用人工智能处理自然人的姓名、肖像等，生成可识别该自然人的虚拟数字形象并使用、公开，该自然人主张行为人侵害其姓名权、肖像权等人格权益的，人民法院依法予以支持。除法律另有规定的外，未经自然人同意，使用自然人的声音作为训练语料，模仿该自然人的音色、语调和发音风格等生成能够识别该自然人的合成人声，该自然人主张行为人侵害其声音权益的，人民法院依法予以支持。操控生成合成的能够识别特定自然人的虚拟数字形象、声音实施不当行为或者发表不实言论，降低该自然人或者他人社会评价的，人民法院应当依法认定构成对名誉权的侵害。利用人工智能技术擅自制作、使用死者的虚拟数字形象致使死者的姓名、肖像、名誉等受到侵害，死者近亲属依据民法典第九百九十四条的规定请求行为人承担民事责任的，人民法院依法予以支持。

（五）依法规制利用人工智能实施"网络开盒""人肉搜索"等侵害自然人隐私权的行为。以刺探隐私为目的，利用人工智能对特定自然人的电话号码、网络账号及社交媒体等公开信息进行追踪、分析，获取私密信息，或者将所获取的私密信息泄露、公开，或者利用所获取信息侵扰私人生活安宁的，应当认定构成对隐私权的侵害。利用人工智能对特定自然人的私密空间、私密活动等实施拍摄、窥视、窃听等行为的，应当认定构成对隐私权的侵害，但是法律另有规定或者该自然人明确同意的除外。

（六）依法认定人工智能训练过程中侵害个人信息权益的民事责任。为人工智能模型训练，在合理范围内处理个人自行公开的或者其他已经合法公开的个人信息，且个人未明确拒绝的，一般不认定为侵害个人信息权益的行为。对个人权益有重大影响的，应当依照法律规定取得个人同意。在认定合理范围时，应当综合考量处理个人信息的目的与模型功能的必要性和适当性，所涉个人信息的类型、敏感程度及对个人权益的潜在影响，个人公开信息时的场景及可合理预期的使用范围等因素。

（七）审慎认定生成式人工智能服务提供者的侵权责任。生成式人工智能自动生成的内容侵害他人名誉权、隐私权等人格权益，经权利人通知，生成式人工

智能服务提供者未及时采取停止生成侵权内容等必要措施的，应当对造成的损害依法承担侵权责任。通知应当包括构成侵权的初步证据及权利人的真实身份信息。网络用户通过输入侵权提示词等方式恶意诱导生成式人工智能生成侵权内容并造成他人损害的，该网络用户应当依法承担侵权责任；经权利人通知，生成式人工智能服务提供者未及时采取停止生成侵权内容、屏蔽相关生成指令等必要措施，权利人依据民法典第一千一百九十五条的规定请求该网络用户、生成式人工智能服务提供者承担民事责任的，人民法院依法予以支持。

（八）依法适用人格权侵害禁令制度。自然人、法人或者非法人组织有证据证明行为人利用人工智能正在实施或者即将实施侵害其人格权益的违法行为，不及时制止将使其合法权益受到难以弥补的损害，向人民法院申请采取责令行为人停止有关行为或者责令有关网络服务提供者、生成式人工智能服务提供者停止提供有关服务的措施的，人民法院可以依法作出人格权侵害禁令。在作出人格权侵害禁令时，人民法院应当结合被侵害的人格权类型、违法行为的方式以及可能造成损害的范围、程度等因素，采取相应的禁令措施，不得超出必要限度。

（九）准确认定人工智能产品责任。人民法院应当依据产品质量法关于"产品"的定义，依法准确认定以实物为载体的人工智能产品并适用相应的法律规则。人工智能产品存在缺陷造成损害的，生产者、销售者应当依法承担产品责任。在认定人工智能产品是否存在危及人身、财产安全的不合理危险时，应当综合考量人工智能产品的性质与用途、自主学习能力、升级更新情况、用户对系统的控制程度，以及是否符合相关国家标准、行业标准等因素，并重点审查生产者、销售者是否就人工智能产品的适用场景、固有局限及可预见的风险等进行了真实的说明和明确的警示。

（十）依法规制"大数据杀熟""仿冒名人带货"等侵害消费者合法权益的行为。针对同一商品或者服务，经营者利用算法在交易价格等交易条件上实行不合理的差别待遇，侵害他人合法权益造成损害的，人民法院应当依法认定其承担相应的侵权责任。在认定是否构成不合理的差别待遇时，应当根据差别待遇是否对消费者的知情权、自主选择权、公平交易权等造成实质性限制或者损害，是否基于消费者的消费偏好、支付意愿、支付能力、浏览记录等信息形成针对其

个人的交易条件，是否违背诚信原则及商业伦理等，综合考量实行差别待遇的理由是否正当、充分、非歧视。经营者提供商品或者服务时，利用人工智能实施"仿冒名人带货"且构成欺诈，消费者依据消费者权益保护法第五十五条的规定主张惩罚性赔偿的，人民法院依法予以支持。

（十一）依法认定涉自动驾驶汽车、具备辅助驾驶功能汽车交通事故的赔偿责任。自动驾驶汽车、具备辅助驾驶功能汽车上道路行驶，发生交通事故造成损害的，依据民法典和道路交通安全法有关规定承担赔偿责任。因车辆存在产品缺陷导致交通事故造成损害，当事人请求生产者或者销售者依照民法典第七编第四章的规定承担赔偿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具备辅助驾驶功能的汽车因车辆缺陷与驾驶人的过错行为结合导致同一损害，当事人依据民法典第一千一百七十二条等规定同时请求驾驶人和车辆生产者或者销售者承担赔偿责任的，人民法院依法予以支持。车辆生产者、销售者对自动驾驶汽车、具备辅助驾驶功能汽车的自动化等级、智能程度、性能、用途等进行虚假或者引人误解的宣传，损害消费者合法权益，消费者依据民法典、消费者权益保护法等法律规定请求车辆生产者、销售者承担民事责任的，人民法院依法予以支持。为查明道路交通事故发生原因，人民法院可以要求车辆生产者、销售者或者运营者等数据控制方，在必要范围内提供真实、完整的自动驾驶、辅助驾驶事件记录等查明案件事实所需要的数据。

三、依法妥善审理涉人工智能知识产权纠纷案件，保障人工智能高质量发展和高水平安全

（十二）依法规制涉人工智能侵害知识产权的行为。人工智能生成内容侵害他人著作权的，人民法院应当综合考量人工智能服务类型、行业特点、训练数据来源、各方参与度、采取的必要措施以及获利情况等因素，依法合理认定人工智能开发者、提供者、使用者的责任。人工智能开发者提出不侵权抗辩的，应当责令其提供训练数据来源、训练过程记录、模型运行模式以及科学理论依据等予以佐证。权利人主张人工智能提供者利用算法技术侵害其著作权的，应当提供相关证据。人工智能使用者知道或者应当知道在先作品存在，利用人工智能生成与在先作品实质相似的作品且无合理抗辩理由，在先作品权利人请求其承担侵权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利用人工智能实施侵权假冒、虚假宣传、刷量刷单等行为，侵害他人权利或者构成不正当竞争的，依法承担相应责任。

（十三）依法合理认定涉人工智能开源软件相关方的法律责任。审理涉开源软件案件，认定开源软件开发者、提供者以及后续开发者、提供者的侵权责任，应当综合考量开源许可协议类型、权利限制的具体内容、安全合规举措和信息披露程度等因素，依法给予开源软件开发者、提供者适当的责任豁免。开源软件开发者、提供者以免费开源的方式提供涉人工智能软件研发所需要的部分代码模块，并公开说明其功能和安全风险，他人使用该代码模块导致侵权的，人民法院可以认定开源软件开发者、提供者不承担侵权责任。

（十四）依法规范涉人工智能发明创造的专利授权确权行为。涉人工智能发明创造采用遵循自然规律的技术手段，解决了技术问题，实现了符合自然规律的技术效果的，人民法院应当依法认定其为专利法所保护的客体，但是违反法律、社会公德、损害社会公共利益或者自然人没有实质贡献的除外。自然人使用人工智能完成的发明创造，该自然人对发明创造的实质性特点作出了创造性贡献的，应当认定该自然人为发明人。涉人工智能专利说明书对技术方案的表述，达到本领域普通技术人员能够实现该发明的程度的，应当认定符合公开充分的授权条件。

（十五）依法审慎认定涉人工智能技术合同履行的违约责任。人民法院审理涉人工智能技术开发、转让、许可、咨询、服务合同纠纷案件，应当根据合同约定，充分考量人工智能技术研发特点、技术开发方是否尽到合理努力等情形依法认定违约责任。

（十六）依法规范涉人工智能数据使用行为。人工智能开发者通过采集生成、衍生创造、受让取得、授权许可等方式合法获取数据并享有相应数据权益的，人民法院应当予以保护。对于构成汇编作品或者符合其他作品构成要件的数据、数据集合，应当依照著作权法予以保护。对于构成商业秘密的数据、数据集合，应当依照反不正当竞争法予以保护。对于不构成商业秘密的数据、数据集合，被诉侵权行为违反反不正当竞争法第十三条规定的，应当依法承担责任。经营者利用数据、算法等技术手段达成垄断协议或者实施滥用市场支配地位等行为的，依法承担相应责任。采取虚构干扰数据、恶意标注数据、对抗样本攻击等技术手段，损害人工智能运行安全的，依法承担相应责任。

四、完善涉人工智能纠纷案件审理程序规则，依法惩治利用生成式人工智能实施妨害司法秩序等违法犯罪行为

（十七）依法准确查明涉人工智能纠纷案件事实。基于涉人工智能纠纷案件技术性、专业性强等特点，人民法院应当依法加强诉讼引导和释明，引导当事人围绕争议事实及时全面地完成举证。当事人因客观原因不能自行收集的证据，可申请人民法院调查收集；必要时，人民法院可以依职权调查收集证据。当事人为固定关键技术申请证据保全的，人民法院应当及时依法审查。控制书证、电子数据等证据的当事人无正当理由拒不提交，对方当事人主张该证据的内容不利于控制人的，人民法院可以认定该主张成立。对于涉及人工智能技术原理、运行机制等专业问题的，人民法院应当依法充分发挥人民陪审员、鉴定人、专家辅助人以及技术调查官的作用，辅助查明案件事实。

（十八）探索完善涉人工智能纠纷案件证据审查规则。人民法院应当充分考量人工智能技术的复杂性、系统运行的不透明性以及证据收集的特殊性，不断完善适应新技术发展的证据审查规则。对电子数据生成、收集、存储、传输过程的真实性、完整性进行重点审查。对大数据、区块链等不同信息技术产生的证据明确差异化证据审查重点。对大数据分析报告类证据，应当重点审查其原始数据的来源、清洗规则及分析方法的科学性等；对区块链存证类证据，应当重点审查其上链前数据的真实性及技术平台的可靠性等。当事人将人工智能生成内容作为侵权证据的，人民法院应当综合考量提示词的设计及其对生成结果的影响、生成内容与主张权利作品的相似程度、重复测试的一致性，以及模型训练、算法设计、生成内容过滤机制等因素予以认定。

（十九）依法规制利用人工智能不当取证等妨害司法秩序的行为。当事人利用人工智能自主学习、自主决策的特性，通过删除或者篡改生成合成内容标识、特定指令输入、选择性结果呈现、对抗性干扰等人为干预或者误导的方式取得虚假证据，捏造民事案件基本事实，进行虚假诉讼，企图侵害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或者他人合法权益的，人民法院应当依法驳回其诉讼请求，并根据情节轻重予以罚款、拘留；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诉讼参与人或者其他人利用人工智能伪造证据，妨碍人民法院审理案件的，依据民事诉讼法第一百一十四条规定处理。诉讼参与人提交诉讼文书、案例检索报告等材料如系使用人工智能生成，在提交法庭前应当认真核实相关法律、司法解释、案例等内

容的真实性、准确性，在提交法庭时对使用人工智能辅助情况作出说明，并对有关内容的真实性、准确性依法承担责任。

（二十）依法惩治利用人工智能实施的犯罪活动。利用人工智能实施诈骗、侮辱、诽谤、损害商业信誉、商品声誉、侵犯公民个人信息、非法获取计算机信息系统数据、制作、贩卖、传播淫秽物品等行为，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行为人激活辅助驾驶功能后利用私自安装的配件逃避辅助驾驶系统监测导致道路交通事故，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五、加大对涉人工智能纠纷案件审判指导力度，不断健全完善工作机制

（二十一）充分发挥多元解纷机制作用。人民法院应当积极运用多元解纷机制妥善化解涉人工智能纠纷，推动与人工智能行业主管部门、行业性专业性调解组织、人工智能专家学者等建立联动协同机制，共同开展纠纷化解工作，做实先行调解。立足司法审判职能，推动提升涉人工智能纠纷预防化解的法治化水平，积极通过庭审公开、以案释法等方式明确权利义务、划定行为边界，发挥司法裁判示范引领作用，促进涉人工智能纠纷源头预防、及时化解。

（二十二）加强审判监督指导。积极规范适用提级管辖，强化示范引领作用，做实审判监督指导。对涉及重大利益、疑难复杂新类型、具有规则确立意义、需要统一法律适用标准等涉人工智能纠纷案件，由上级人民法院提级审理。充分运用人民法院案例库，加强案例指导工作，促推法律适用统一和人工智能治理规则的完善。

（二十三）加强部门协作协同。通过制发司法建议、建立合作机制等多种方式，充分发挥司法职能，服务国家和社会治理。加强与网信、公安、检察以及市场监管等部门衔接协作，建立并落实长效综合治理机制。引导相关企业、平台、行业协会等规范自治，推动形成人工智能行业自律、行政监管、司法保障的全链条保护合力。

（二十四）加强国际司法交流合作。妥善审理涉人工智能及数据跨境纠纷案件，在坚持相互尊重、平等互利原则基础上，推进人工智能领域涉外审判交流合作，加强规则对接与互鉴，推动构建更加公平合理、包容开放的人工智能治理体系，促进、保护人工智能生态系统和人类文明的多样性。

最高人民法院

2026年9月7日

4. 답기자문 중국어 원문 (最高法相关部门负责人就《关于依法审理涉人工智能纠纷案件的意见》答记者问)

출처: 最高人民法院 공식 사이트, 2026년 9월 7일 게시.

最高法相关部门负责人就《关于依法审理涉人工智能纠纷案件的意见》答记者问

2026年9月7日，最高人民法院举行《最高人民法院关于依法审理涉人工智能纠纷案件的意见》新闻发布会。最高人民法院副院长陶凯元、研究室主任周加海、民三庭庭长李剑、研究室副主任司艳丽出席发布会，并回答记者提问。发布会由最高人民法院新闻发言人姬忠彪主持。

问：我们注意到，《最高人民法院关于依法审理涉人工智能纠纷案件的意见》（以下简称《意见》）立足当前热点难点问题，有针对性地对人民群众关切、人工智能产业关心的问题予以回应。请问，在具体内容安排上，《意见》是如何妥善处理权益保护和创新发展之间的关系的？

答：习近平总书记在2026世界人工智能大会暨人工智能全球治理高级别会议开幕式上发表主旨讲话时指出，始终坚持发展和安全并重，把握人工智能发展趋势和规律，不断完善相关法律法规、政策制度、应用规范、伦理准则，确保人工智能安全、可靠、可控，让人工智能这匹千里马既跑得快又跑得稳。《意见》紧紧围绕"坚持发展和安全并重"展开，既注重依法规制滥用恶用人工智能的违法乱象、加强数字时代民生权益司法保障，又旗帜鲜明支持科技创新和产业创新、为人工智能健康发展保驾护航。具体而言：

在民生权益保障方面，《意见》主要作了如下规定：第一，加大人格权益司法保护力度。当前，AI换脸、AI仿声、"网络开盒"等违法行为时有发生，社会各界高度关切。为此，《意见》对利用人工智能侵害肖像权、名誉权、隐私权、声音权益等行为的责任追究作出了明确规范，以充分发挥司法裁判规范、引领功能，促进人工智能向上向善。第二，依法保护个人信息权益。大规模、高质量

的训练数据是人工智能技术发展的基石。为平衡、兼顾保护个人信息权益与促进人工智能产业发展，《意见》根据民法典、个人信息保护法等法律规定，明确为人工智能模型训练，在合理范围内处理已合法公开的个人信息，且个人未明确拒绝的，一般不认定为侵权。但是，对个人权益有重大影响的，应当依照法律规定取得个人同意。第三，依法规制"大数据杀熟""仿冒名人带货"等侵害消费者合法权益的行为。近期，AI算法引发的"大数据杀熟"屡被曝光，"仿冒名人带货"也倍受关注。我们不能奢求消费者都"火眼金睛"，法律必须及时亮剑，维护消费者合法权益。为此，《意见》明确，针对同一商品或者服务，经营者利用算法在交易价格等交易条件上实行不合理的差别待遇，侵害他人合法权益造成损害的，人民法院应当依法认定其承担相应的侵权责任；利用人工智能"仿冒名人带货"且构成欺诈，消费者主张惩罚性赔偿的，人民法院依法予以支持。

在支持创新发展方面，《意见》主要作了如下规定：第一，准确把握涉人工智能侵权责任的归责原则，避免在人工智能技术与产业尚处发展初期就承担过重责任而影响创新的积极性。《意见》明确，利用人工智能侵害民事权益产生的法律责任，除法律明确规定适用无过错责任或者过错推定责任的，应当适用过错责任原则。第二，严格依法认定"人工智能产品"，避免产品责任泛化。《意见》明确，应当严格依据产品质量法关于"产品"的定义，将人工智能产品限定为以实物为载体的产品，比如智能机器人、自动驾驶汽车等，将没有实物载体的人工智能服务排除在外。第三，全面准确贯彻宽严相济刑事政策，依法处理涉人工智能的刑事案件。《意见》一方面强调，对于故意利用人工智能实施的危害国家安全、侵犯公民权益、扰乱社会秩序等犯罪行为，坚决依法严惩；另一方面要求，对于在人工智能研发、应用中的创新性行为，要依法审慎处理，恪守罪刑法定、罪责刑相适应原则。此外，如陶副院长在前面介绍的，《意见》对依法妥善审理涉人工智能知识产权纠纷案件作出了专门规定，有关规定也充分体现了在法治轨道上支持创新发展的理念。

问：当前人工智能生成内容引发的新类型知识产权纠纷频发，引发广泛关注。请问，《意见》关于涉人工智能生成内容的知识产权纠纷案件处理方面有哪些新的规定？

答：《意见》第12条至第16条是专门针对涉人工智能知识产权纠纷案件作出的规定，其中第12条就您提到的涉人工智能生成内容问题给出了指导意见。"十五五"规划纲要明确提出，探索建立人工智能生成物权利归属以及开发者、经营者、使用者权责认定规则。国务院最近发布的《知识产权保护和运用"十五五"规划》进一步强调，完善适应人工智能发展的版权制度。《意见》落实中央有关部署，及时回应社会关切。具体情况有三个方面：

一是明确了人工智能生成内容侵害著作权案件中认定相关主体责任的考虑因素。人工智能生成内容侵权行为涉及人工智能技术开发者、提供者和使用者等多方主体。人工智能生成内容被诉侵害他人著作权的，不能以被诉侵权内容系人工智能生成为由免除相关主体责任，而应当坚持责任承担与控制能力、注意义务相匹配。关于控制能力、注意义务的确定，一般要综合考虑涉案人工智能的技术和商业模式特点、当事人在内容生成过程中发挥的作用、相关训练数据系由何方"投喂"、采取的必要措施、获利情况等因素。在此基础上，依法认定当事人是否具有侵权的主观过错及过错程度，合理划分侵权责任。

二是明确了人工智能生成内容侵害著作权纠纷的举证规则。权利人主张人工智能服务开发者或者提供者侵害其著作权的，应当就侵权内容系由该人工智能生成、与其权利作品构成实质相似等初步事实举证。由于人工智能技术具有复杂性和不透明性，有关证据非他人可以获取。因此，人工智能开发者提出不侵权抗辩的，应当就模型的训练数据来源、训练过程、运行模式等事实举证，必要时还应提供有关科学理论依据予以佐证。人工智能使用者知道或者应当知道在先作品，利用人工智能生成与在先作品实质相似的作品，且没有合理使用等免责事由的，应当认定构成侵权。

三是依法规制利用人工智能生成内容实施的不正当竞争行为。近两年，利用人工智能实施不正当竞争的纠纷日渐增多。经营者利用人工智能生成的图文、视频、虚拟人物形象等，虚构流量和好评，甚至通过利用AI换脸虚构科普视频进行虚假宣传，这些行为不仅损害了他人合法权益，还严重误导消费者，扰乱市场竞争秩序，应当依法认定为构成仿冒侵权、虚假宣传等。

需要说明的是，在《意见》起草论证过程中，对人工智能生成内容的可版权性，以及未经许可使用他人作品训练人工智能大模型的定性问题，意见分歧很大

，认识还有待进一步深化。因此，《意见》对这两个问题暂不作规定。当前，人工智能技术发展一日千里，新情况新问题不断涌现。下一步，我们将继续密切关注人工智能等新兴领域的知识产权保护问题，在实践中不断认识和把握规律，不断总结审判经验，完善裁判规则，努力推动形成共识。

问：随着人工智能加速迭代，深度伪造、智能采集、用户画像等技术的侵权门槛大幅降低，人格权益保护面临严峻挑战。刚才提到，《意见》对"AI换脸拟声""网络开盒"等侵害人格权益的热点问题作了规定，能否再具体介绍一下？

答：人格权关系到每个人的人格尊严，是民事主体最基本、最重要的权利。我们强调，要以包容审慎的态度平衡人格权益保护与人工智能产业发展，但是，包容并不等于纵容、审慎也不等于放任。为回应社会关切、指导审判实践，《意见》对滥用恶用人工智能技术侵害人格权益的行为，区分不同类型作出针对性规定。主要包括：

一是依法规制"AI换脸拟声"等利用人工智能侵害肖像权、名誉权、声音权益的行为。实践中，反映最强烈的是AI深度伪造。比如，AI换脸技术可以无差别地"收割"所有人的肖像，普通人也可能成为深度伪造的"目标"；再如，使用AI拟声技术，花几元钱就能"偷声"，效果足以乱真。近日，新闻媒体还起底了贩卖"AI一键脱衣"软件和教程的黑产链条，人民群众对此深恶痛绝。《意见》第四条明确规定：未经同意利用人工智能处理自然人的姓名、肖像等，生成可识别该自然人的虚拟数字形象并使用、公开的，构成对姓名权、肖像权等人格权益的侵害；未经同意使用自然人声音作为训练语料，模仿其音色、语调和发音风格生成可识别的合成人声的，构成对声音权益的侵害；操控虚拟形象、合成声音实施不当行为或者发表不实言论、降低他人社会评价的，构成对名誉权的侵害，依法追究行为人的侵权责任。此外，针对社会关注的"AI复活逝者"现象，《意见》也专门作出规定，依法保护死者的人格利益。

二是依法规制利用人工智能实施"网络开盒""人肉搜索"等侵害他人隐私权的行为。"网络开盒""人肉搜索"是网络暴力的突出表现形式，这不仅严重侵害受害人的隐私权，严重侵扰受害人的生活安宁，也会影响社会公众的安全感，污染网络生态。当前，出现了利用人工智能技术对特定自然人的电话号码、网络账号以及社交媒体等公开信息进行追踪、分析，获取私密信息或者将所获取的私

密信息泄露、公开等现象，对此，《意见》第5条专门作出了规定。

三是明确人格权侵害禁令制度的适用规则。利用人工智能侵害人格权益的行为，具有成本低、传播快、影响广、损害难以逆转等特点，传统的事后提起诉讼的救济模式，不利于及时、有效保护受害人的合法权益，人格权侵害禁令的依法适用就尤为重要。为此，《意见》第8条予以明确。比如，受害者有证据证明其被AI换脸造"黄谣"，如不及时制止将使其合法权益受到难以弥补的损害的，可以向人民法院申请人格权侵害禁令。经审查，符合条件的，人民法院既可以依法责令网络用户停止有关侵权行为，也可以依法责令网络服务提供者、人工智能服务提供者及时采取必要措施，以阻止损害的进一步扩大。

需要特别说明的是，当前，利用深度伪造等技术进行诈骗、侮辱、诽谤、侵犯公民个人信息、制作、贩卖、传播淫秽物品等现象时有发生。如果相关行为构成犯罪的，要坚决依法严惩，追究刑事责任，对此，《意见》作出了专门规定。

问：目前，生成式人工智能软件被广泛使用，相关民事纠纷也引发了社会关注。我注意到，对于生成式人工智能的侵权认定，《意见》引入了"避风港规则"。对于这个问题，能否作一个深入介绍？

答：民法典第1195条规定了"通知删除规则"，也就是人们常说的"避风港规则"。简单来说，就是一个网络用户利用网络服务实施侵权行为（比如，在网上发帖辱骂他人），权利人发现后，有权通知网络服务提供者采取屏蔽、删除等措施，网络服务提供者接到合格通知后，应当及时采取必要措施，否则，就要对损害的扩大部分与网络用户承担连带责任。反之，如果网络服务提供者接到通知后，及时采取了必要措施，通常不需承担侵权责任。

实践中，对生成式人工智能服务提供者能否主张参照适用"避风港规则"，存在争议。我们经研究认为，生成式人工智能服务虽然与传统的网络服务存在差别，但两者在运行机理上也存在类似之处。比如，生成式人工智能服务提供者同样是将海量的信息组织起来提供给网络用户，大模型的生成结果取决于前期训练数据、模型参数以及使用者输入的提示词等因素，人工智能服务提供者难以事先预知所有网络用户输入的内容，加之生成内容的数量十分庞大，无法要求人工智能服务提供者对于生成的内容是否侵权进行逐一预测、审查和拦截。但

是，当人工智能因自身幻觉或用户恶意诱导生成侵权内容后，经权利人通知，生成式人工智能服务提供者则应当、也有条件采取必要措施，由此可见，对于生成式人工智能服务提供者，具有参照适用"避风港规则"的正当性、合理性基础。

为此，《意见》针对"AI幻觉"侵害人格权和用户恶意诱导AI侵害人格权的责任认定作了规定，明确：生成式人工智能自动生成的内容侵害人格权益，经权利人通知，人工智能服务提供者未及时采取停止生成侵权内容等必要措施的，应当对造成的损害依法承担侵权责任；网络用户通过输入侵权提示词等方式恶意诱导生成式人工智能生成侵权内容并造成他人损害的，该网络用户依法承担侵权责任，经权利人通知，人工智能服务提供者未及时采取停止生成侵权内容、屏蔽相关生成指令等必要措施，权利人请求该网络用户、人工智能服务提供者承担民事责任的，人民法院依法予以支持。上述规定符合技术发展规律、符合民法典立法精神，体现了支持创新与依法治理的有机统一，在征求意见过程中，各方一致赞同。

问：人工智能的影响是全领域的，审判活动也会面临新的风险挑战。比如，有的诉讼参与人向人民法院提交人工智能生成的证据及其他诉讼材料，提交前却未作核实。对于这些利用人工智能妨害司法秩序的行为，《意见》是如何回应的？

答：诉讼参与人在诉讼活动中应当遵循诚信原则。随着生成式人工智能技术的普及，诉讼参与人借助人工智能辅助诉讼的情况越来越常见。但是，人工智能只是辅助工具，诉讼参与人不得以"AI幻觉"、技术中立为由免除自身的法律责任。诉讼参与人对其提交法院的证据及其他诉讼材料应当甄别核实，确保其真实、准确。为引导社会公众合理使用人工智能，预防虚假材料进入诉讼程序，切实维护司法秩序，《意见》从三个方面作出了规定。

一是依法惩治利用人工智能虚假诉讼。当事人利用人工智能自主学习、自主决策的特性，通过删除或者篡改生成合成内容标识、特定指令输入、选择性结果呈现、对抗性干扰等人为干预或者误导的方式，捏造案件事实进行虚假诉讼的，人民法院应当依法驳回其诉讼请求，并根据情节轻重予以罚款、拘留，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二是依法规制利用人工智能伪造证据的行为。《意见》明确规定，诉讼参与人或者其他人利用人工智能伪造证据，妨碍人民法院审理案件的，依据民事诉讼法第一百一十四条规定处理，即可以根据情节轻重予以罚款、拘留，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三是明确规定诉讼参与人对人工智能生成的诉讼文书、案例检索报告等负有核实说明义务。目前，人民法院已发现多起利用人工智能生成的虚假案例，且当事人、代理人在提交法庭前并未作全面核实。今年1月，新闻媒体已对此类事件集中报道，人民法院案例库也有入库案例。在此基础上，《意见》明确规定，诉讼参与人提交诉讼文书、案例检索报告等材料如系使用人工智能生成，应当在提交法庭前认真核实相关法律、司法解释、案例等内容的真实性、准确性，在提交法庭时对使用人工智能辅助情况如实作出说明，并对有关内容的真实性、准确性依法承担责任。对此问题，域外司法同样高度关注，我们注意到，有的国家专门发布指南，强调代理人对提交法庭的材料负有确保准确的责任。

중국 최고인민법원 인공지능 사법지침 해설서

인공지능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의견 24개 조항 전문 해설

ISBN |

저 자 | 김경진
펴낸이 | 김경진
펴낸곳 | 김경진 변호사 출판사
출판사등록 | 2025. 3. 10. (제2025-000015호)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91, 백일빌딩 304호
전 화 | 02-6338-1905
이메일 | kimkj008@gmail.com

© 김경진 2026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참고) 이 책의 일부 내용과 편집 과정에는 인공지능 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잘 읽으셨으면 그리고 새로운 가치있는 지식을 얻으셨다고 판단되시면
농협 302-1096-0948-81 (예금주 김경진) 에 자발적 후원 부탁드립니다.